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과제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2010. 10.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0. 22.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기 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상 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II.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8
제 2 장 세종학당의 의의	19
I. 세종학당의 개념	19
II. 운영방식에 따른 세종학당의 종류	23
III. 누리-세종학당의 개념	24
IV. 세종학당재단의 법적 성격	25
V. 특수법인으로서 세종학당재단의 설치 필요성	26
제 3 장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31
I. 재외동포재단	33
1. 설립 근거	33
2. 조직 현황	34
3. 재 원	36
4. 소관 사업 내용	37
II. 한국국제교류재단	38
1. 설립 근거	38
2. 조직 현황	39

3. 재 원	41
4. 주요 사업 내용	41
III. 한국국제협력단	42
1. 설립 근거	42
2. 조직 현황	42
3. 재 원	45
4. 주요 사업 내용	46
IV. 한국문화원	46
1. 설치근거	46
2. 조직현황	46
3. 주요 사업 내용	47
V. 국립국제교육원	47
1. 설치 근거	47
2. 조직 현황	48
3. 소관 사무	48
VI. 한국학교 · 한국교육원 · 한글학교	49
1. 개 관	49
2. 한국학교	50
3. 한국교육원	52
4. 한글학교	54
VI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5
1. 설치 근거 및 현황	55
2.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56
3. 주요 사업 내용	57

4. 비용의 보조	60
VIII.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60
1. 지원 근거	60
2. 지원 요건	61
3. 주요 사업 내용	61
4. 비용의 지원	62
IX. 국립국어원 · 한국어세계화재단	62
1. 국립국어원	62
2. 한국어세계화재단	67
IX. 문제점	68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81
I. 일본 국제교류기금	86
1. 설립 근거 및 목적	86
2. 조직 현황	87
3. 재 원	91
4. 소관 사업	91
II. 중국 공자학원	119
1. 설립 배경 및 근거	119
2. 설치 현황	121
3. 설치 및 운영 방식	121
4. 주요 사업 내용	122

Ⅲ. 독일 괴테-인스티투트	123
1. 설립 근거	123
2. 연 혁	125
3. 주요 목표 및 임무	126
4. 조직 현황	127
5. 연방외무부의 괴테-인스티투트에 대한 업무위탁	137
Ⅳ.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144
1. 설립 배경	144
2. 연 혁	146
3.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의 설립	148
4. 운영 현황	148
5. 재 원	149
6. 임 무	149
7. 알리앙스 프랑세즈 관련 기관	150
Ⅴ. 시사점	151
제 5 장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 추진을 위한 입법방안	159
Ⅰ. 입법의 필요성	159
Ⅱ. 입법 방안	161
1.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 방안	163
2. 가칭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	174
참 고 문 헌	207

《 부 록 》

- 【부 록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5
- 【부 록 2】 세종학당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23
- 【부 록 3】 국내 관련 입법례 233
- 재외동포재단법 23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240
 - 한국국제협력단법 247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5
 - 다문화가족지원법 26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65
- 【부 록 4】 국외 관련 입법례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업무방법서, 괴테-인스티투트 정관,
괴테-인스티투트 ·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총괄협약) ... 267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류 열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도입,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등으로 국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남북한과 재외동포 등을 합쳐 모두 약 77,000,000명으로, 모국어 사용자 수에 따른 한국어 순위는 13위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기관은 2,000 여 개, 이들 기관의 수강생은 250,000 여 명에 달하며,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3,400권 가량이다.¹⁾

지난 세기 영미를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한국어 학습동기가 한국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중국·일본을 필두로,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남미·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학습 열풍은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예 따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학습자층의 다양화를 가져 왔다.²⁾

첫째, 한류와 함께 각국에서 한국어 관련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 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0. 9.

2) 임형재, 지난 10년,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제32집, 2010, 270-271쪽 참조.

셋째, 해외교포의 주류층이 1세대 또는 2세대에서 3~4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늘어났다.

넷째, 중국지역 유학생으로 대표되는 유학생의 급증과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늘어났다.³⁾ 2010년 3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560,708명(불법 체류자 55,321명 포함), 유학생(D-2)은 68,158명, 한국어 연수생(D-4 계열) 16,8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늘어났다.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그들 자신의 모국어(제1언어)를 이미 가지고 있고, 한국어는 배우자의 국가에서 생존을 해야 하며, 교육이나 공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⁵⁾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10년 3월 현재 134,841명(여성이 117,414명, 87.1%에 해당함)에 달한다.⁶⁾ 2010년 3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중국 국적 동포 포함)이 49.7%로 가장 많고, 베트남(23.1%), 일본(7.4%), 필리핀(4.9%) 등의 순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58,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6년 25,000명→2007년

3)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집단은 크게 일반 목적의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인과 유학이나 취업, 군사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및 군인 등 특수 집단 소속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의 숫자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근로자 집단과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정순, 재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대책, 교육정책 포럼 제177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8. 8, 9쪽.

4)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 자주찾는 통계, <http://www.immigration.go.kr> 참조.

5) 최정순, 앞의 논문, 8-9쪽.

6)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9, 257쪽.

44,000명→2008년 58,000명).⁷⁾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사회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해소 및 자녀교육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의 효율적 보급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재외동포 3~4세대에서 현지 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를 배우는 집단(예를 들면, 국제결혼 이민자, 재외동포)과 외국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를 배우는 집단(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표준적인 한국어 교육 제공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등 자국어 보급기관을 전 세계로 진출시켜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언어권역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도 중국어 및 중국문화 보급 지원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Confucius Institute’를 설립하여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중국문화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33개국 6,150,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어 보급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 각각 다른

7) 보건복지가족부, 앞의 백서, 257쪽-259쪽.

근거법률에 따라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각각 다른 기관 및 지원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어 보급을 위한 통합적 전략 및 추진기반이 미흡하여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곤란, 다수 부처를 통한 보급·지원에 따른 혼란 및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3개 부처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를 만들어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업무 조정 및 협조회의를 열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곤란, 다수 부처를 통한 보급·지원에 따른 혼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및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자국어 보급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대외관계의 조화와 발전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어 보급사업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조성을 위한 작업이 미비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서구 각국은 해외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또는 외교적 차원에서 자국어·자국문화를 일방적으로 보급·전파해 왔으나, 이와 같은 일방적 보급·전파에는 갈등 및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최근 자국어 보급은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교류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한국어·한국문화전파와 국가브랜드 제고라는 관점에서 해외 자국어 보급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고,⁸⁾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예산의 중복 집행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 일방적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전파가 아닌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교류 협력 방식을 통하여 한국어 보급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세종학당) 사업’ 및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 및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립국어원,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 등 기존에 한국어 보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 법률(「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어기본법」 등)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세종학당)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한계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국내외 한국어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입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세종학당의 표준화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한국어통합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품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 전세계적 보급 확산 및 표준화된 조직·운영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정명운,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 -,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11쪽.

더 나아가 한국과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세종학당 브랜드화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이와 연계된 문화 보급 차원의 언어 보급 전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세종학당) 및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의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등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의 법적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운영 실태 및 법제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한국어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추진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의 설립, 형태, 조직, 지원현황, 운영 사례 등 운영실태 및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운영 실태, 근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방향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시안 마련·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세종학당의 의의

I. 세종학당의 개념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사회교육원 형태의 교육기관이자 한국어 문화 학교인⁹⁾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을 국외 각지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아시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국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의 외국인 취업이 증가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다.¹⁰⁾

세종학당은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촉진하고, 소수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하며, 국가간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¹¹⁾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대학 포함)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교육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방형 체제로 운용되는¹²⁾ ‘세종학당’은 한글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한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고, 제1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100개교, 제2단계 2012년부터 2016년

9) 국립국어원, 2007 세종학당백서, 2007. 10, 32쪽.

10) 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

11)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2007, 12쪽.

12) 최용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문법 교육 제6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6, 236쪽 참조.

까지 동남아와 서남아시아 지역 100개교 등 총 200개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문화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¹³⁾

이와 같은 ‘세종학당’ 확대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해지고, 한국어 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 브랜드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⁴⁾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학당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한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인바, 경제적으로는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의 수출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그동안 세종학당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약간씩 달리 사용되어 왔다.

i)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를 말한다.¹⁵⁾ 이에 따르면 피교육자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되고, 주교육 내용은 한국어이나, 부수적으로 한국문화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 “세종학당”이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¹⁶⁾ 이에 따르면 피교

13)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

14)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6, 163쪽.

15) 국립국어원, 2007 세종학당백서, 32쪽.

16) 2010. 5. 3.자 「세종학당」사업 추진 계획 보고상의 국어기본법 개정 법률안 제3조 제6호.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상에서는 세종학당을 “세종학당”이라 함은 외국어 또는

육자는 국내·국의 거주를 불문하고, 내국인¹⁷⁾·외국인을 불문한다. 교육내용은 한국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세종학당”이란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 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시설’을 말한다.¹⁸⁾ 이에 따르면 피교육자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되고, 교육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v) “세종학당”이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피교육자는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한다. 교육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포함한다. 또한 이에 따르면 교육기관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게 된다. 가장 광의로 이해하고 있다.

v) “세종학당”이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에게 표준화된 현대 한국어 교재·강의를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대표 이름을 말한다.¹⁹⁾ 이에 따르면 피교육자는 국내·국의 거주를 불문하고,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한다. 교육내용은 한국어에 한정된다. 이 경우에도 교육기관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게 된다.

제2언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17)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 결혼 등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여전히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12쪽.

19)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안), 2010. 2. 9. 국어민족과, 세종학당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세종학당의 개념 정의

구 분	개념 정의	피교육자	교육내용	비 고
세종학당백서 (국립국어연구원, 2007)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	국외 거주 외국인·재외동포	한국어	부수적으로 한국문화 포함
세종학당 운영 길잡이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시설’	국외 거주 외국인·재외동포	한국어·한국문화	
2010. 5. 3.자 「세종학당」 사업 추진 계획상의 「국어기본법」 개정 법률안 제3조 제6호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 ²⁰⁾	국내·국외 거주 내국인·외국인	한국어	
2010. 8. 2. 입법 예고 「국어기본법」 개정 법률안 제 3조 제6호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국내·국외 거주 내국인·외국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포함

20)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상에서는 세종학당을 “‘세종학당’이라 함은 외국어 또는 제 2언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II. 운영방식에 따른 세종학당의 종류

구 분	개념 정의	피교육자	교육내용	비 고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안), 2010. 2. 9. 국어민족과, 세종학당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에게 표준화된 현대 한국어 교재·강의를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대표 이름	국내·국의 거주 내국인·외국인	한국어	교육기관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포함

앞서 살펴본 세종학당 개념에 따르면 세종학당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기존의 교육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교육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세종학당을 “한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피교육자는 외국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하고, 교육내용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포함하게 된다.

II. 운영방식에 따른 세종학당의 종류

세종학당의 운영방식으로 ‘정부지원방식’과 ‘인증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지원방식은 정부가 세종학당 운영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지원 세종학당은 2009년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4개국)에서 14개소가 운영 중이고, 2010년에는 14개소가 신설 확대되어 총 28개가 운영될 예정이다.²¹⁾

21)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163쪽.

인증방식은 정부 또는 세종학당재단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어 교육 활동의 성과와 품질을 인증하여 세종학당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주체·요건·방법·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요건으로는 예컨대, 교육공간의 확보, 교육과정, 교원, 운영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기존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정부 지원 한국어 강좌와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대학 및 어학 강좌 등에 대하여 세종학당으로 인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²²⁾

Ⅲ. 누리-세종학당의 개념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cdang.org)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을 위해 국어 교육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국어교육을 하는 누리집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10월 9일부터 누리-세종학당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세종학당 운영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과 한국어 교육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³⁾

누리-세종학당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보급하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22)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163쪽.

23)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164쪽.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²⁴⁾

IV. 세종학당재단의 법적 성격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며, 따라서 법인의 설립은 그 성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제32조에서 일정한 비영리목적은 가진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법인 성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사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상법)에 따라 그 성립근거가 주어질 것을 예정하고 상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 영리법인은 상회사의 설립요건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조 참조).

「민법」·「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일반법인이라고 한다면, 「민법」·「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한다. 특수법인은 국가가 그 행정작용에 속하는 정책적·공공적인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단독법인을 의미하며,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세종학당재단’은 전형적인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특수법인은 원래는 국가 자신이 행하여야 할 공공적·공익적 사업을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법인의 위상과 존립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24)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164쪽.

따라서 그 조직과 운영상의 중요한 부분은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 등에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임원은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국가 자신이 행하여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자금,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또한 기금모집, 경비징수 등에 있어서 법령상의 특전을 부여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요건 면에서 특수법인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보다 공익성·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설립 근거법률에서 설립목적·운영재원·목적사업·이사 및 정관의 필요적 기재요건 등에 있어서 민법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포함) 승인, 결산 승인·보고, 기본재산의 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한, 임원의 선임승인 내지 임면, 보고의무 및 시정조치결과 보고의무 등 주무관청의 감독권의 범위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보다 특수법인이 훨씬 많다.

해산면에 있어서 특수법인은 설립근거법률의 폐지 내지 관련규정의 삭제 형식을 취하므로 법인의 존립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

V. 특수법인으로서 세종학당재단의 설치 필요성

국가는 어떤 공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것인지, 각종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특수법인에게 당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길 것인지, 사인으로 하여금 그 수행을 맡길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재량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적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이러한 입법적 형성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schlanker Staat)의 추구는 세계적 추세이고, 행정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국가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현대 행정의 범위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국가행정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 맡겨진 분야에서도 종래와 같이 행정조직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의 밖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부가 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창설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기획입안기능’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실시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독립법인의 자유로운 운영에 맡김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직부분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가 운영비 기타 소요재원조치를 함으로써 업무의 확실한 실시를 담보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수법인제도는 민영화²⁵⁾에 수반하는 사업의 효율화(자유의 확보)와 국가의 직영에 의한 업무실시의 확실성(규율 내지 제한)과의

25)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공사무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증대하는 경향(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451쪽) 또는 전통적으로 공행정에 의해서 제공되던 재화 및 서비스를 사적인 주체 또는 사기업으로의 이양하는 것 또는 공법적 임무의 수행에 그들을 개입시키는 것(R. Stober, Allg.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6. Aufl. Stuttgart 2008, § 3 III 2)을 말한다.

사이에 그 장점만을 제도적으로 채용하는 현대형 조직법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작은 정부’ 추세와 국가행정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이러한 임무는 국가의 임무이고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적인 활동이지만, 국가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상설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국내외 한국어 보급 문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그 동안 각 부처에서 다수의 기관 및 각기 다른 지원방법을 사용하여 추진되어 온 한국어 보급 사업을 통합적 전략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

산의 중복집행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교류 협력방식을 통한 한국어 보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장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어 교육업무수행부처, 소속부서 및 교육기관은 다음의 <표-2>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표-2> 한국어 교육업무수행부처, 소속 부서 및 교육기관

부 처	소속 부서	교육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재외동포 교육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교육원(Korean Center)
외교 통상부	재외동포과	재외동포재단
	문화외교정책과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학 교류, 한국어 교육사업 지원)
	개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 교육자 파견)
여성가족 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노동 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이들 기관별 한국어 교육 추진사업 현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기관별 한국어교육 추진사업 현황

기관명		추진 사업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 ○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운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운영지원 ○ 교육사이트 운영 ○ 한글학교 운영자 연수
	한국국제교류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강사 현지 파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 한국어강사양성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 한국전통문화교육 및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설치 및 지원 ○ 누리 세종학당 운영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 자격시험관리 및 자격증 부여 ○ (외국인용) 교재 개발 ○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관련 조사·연구
	해외문화홍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어강좌 운영
	한국어세계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외의 한국어 진흥 및 보급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 교포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 한국어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등

한국어 보급 기관 중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 근거 법률, 목적, 사업 및 운영재원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한국어 보급 관련 재단 근거 법률, 목적, 사업 및 운영재원

구 분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미정)
근거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어기본법
목 적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강화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외국어와 제2언어로서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사 업	재외동포 교육·문화사업	국제교류 목적의 각종 행사, 인사 교류 등	세종학당 운영 등 한국어보급
운영재원	정부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국제교류기금의 출연금 등	국제교류기금, 정부출연금등	정부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 등

이하에서는 이들 기관의 설립근거, 조직현황, 재원, 소관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 재외동포재단

1. 설립 근거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1997년 3월 27일 제정, 1997년 4월 28일 시행된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에 근거하여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구 소련 및 중국 수교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이민역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지역동포 사회 내의 세대 교체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

였고,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정부도 세계화 추진 시책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수행할 단일기구로서 ‘교민청’ 설치가 주장되기도 했으나,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시책과 배치되고 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교민청 신설 대신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법」이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재외동포재단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2.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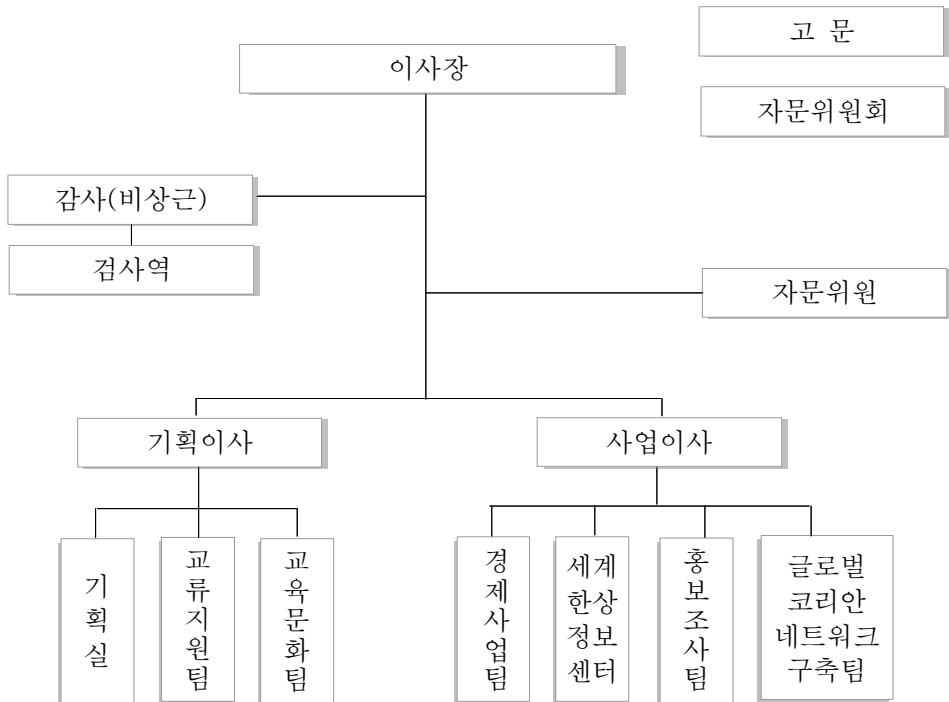
(1) 임 원

재외동포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재외동포재단법 제8조 제1항).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이다(같은 조 제2항).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0조 제1항).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제8조 제6항).

이사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제8조 제4항),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5항).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림-1> 재외동포재단 조직도



※ 출처 : <http://www.okf.or.kr/portal/PortalView.do?PageGroup=USER&pageId=1283437318499&query=>

(2) 이사회

재외동포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재외동포재단법 제12조).

3. 재 원

재외동포재단은 i) 「재외동포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ii)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iii)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iv)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v)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된다(제16조).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정부 출연금은 178억 3천만원, 정부보조금은 195억원, 자체수입금은 9억 1천 5백만원으로, 총 수입은 374억 98백만원이다.²⁶⁾

재외동포재단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1조).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26) 재외동포재단 경영공시, <http://www.okf.or.kr/portal/PortalView.do?PageGroup=USER&pageId=1283437318499> &query= 참조.

4. 소관 사업 내용

재외동포재단은 크게 i) 재외동포 교류사업, ii)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iii)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iv)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v) 그 밖에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vi) ‘i)’부터 ‘iii)’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1)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 교류사업은 다시 i)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 ii) 국내기관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인적교류사업, iii) 재외동포단체의 각종행사 지원, iv) 국외입양인의 모국방문사업으로 세분된다.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다시 i) 재외동포사회의 의식조사사업, ii)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발간, iii) 재외동포사회의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iv) 재외동포관련 연감 및 인명록의 발간, v)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으로 세분된다.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은 다시 i)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ii)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

화 교육사업, iii)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공연·홍보사업, iv) 재외동포와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v) 재외동포의 지도자육성사업, vi)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vii) 독립운동 및 이민관련 사적지의 확보·유지 및 관리사업, viii) 재외동포대상 정기간행물의 발간·배포, ix) 국외입양인의 모국문화전수사업으로 세분된다.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한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임차료, 교사봉사료, 교재비 등) 일부 지원, 재외한글학교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기회 제공,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 파악 및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대학생 모국 연수, 청소년 모국 연수, 민족교육자 초청 연수,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재중국동포 IT 연수, CIS 지역 IT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한국어 강좌([http:// studykorean.co.kr](http://studykorean.co.kr))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고, 한글 뿐 아니라, 한국사, 드라마, 동화, 동요, 만화, 국악 등 한국문화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 한국국제교류재단

1. 설립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외교통상부(문화외교국 문화예술사업과) 산하기관으로 1991년 12월 14일 제정·공포된 「한국

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4414호)에 근거하여 1991년 12월 30일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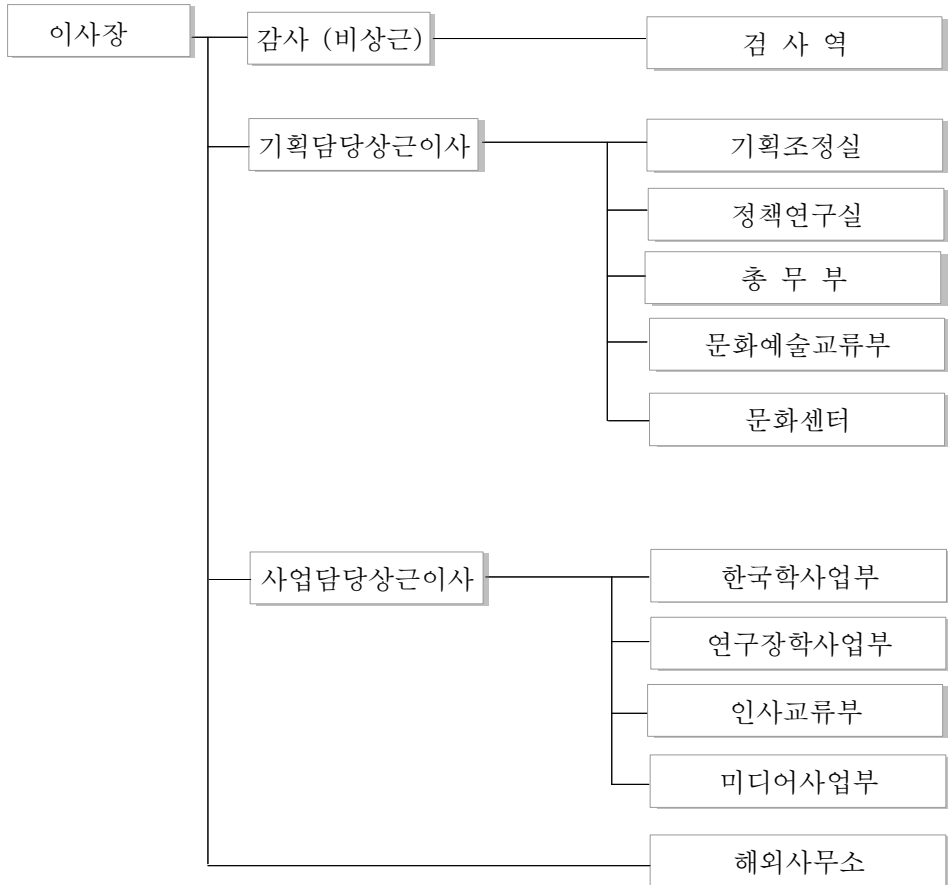
2. 조직 현황

(1) 임 원

한국국제교류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 제1항).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이다(같은 조 제2항).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이사장은 재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9조 제1항).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제7조 제6항).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같은 조 제4항),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5항).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림-2>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직도



※ 출처 : <http://www.kf.or.kr>

(2) 이사회

한국국제교류재단에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²⁷⁾

27) 이사장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1조).

3. 재 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이 설치되어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국제교류기금은 i)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ii)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iii)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iv) 기금 운용 수익금, v)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된다(같은 법 제14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조).

4. 주요 사업 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i)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ii)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iii)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iv)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v)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vi)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vii)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viii) ‘ii)’부터 ‘vii)’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제1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의 사업 외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Ⅲ. 한국국제협력단

1. 설립 근거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외교통상부(문화외교국 문화예술사업과) 산하 기관으로 1991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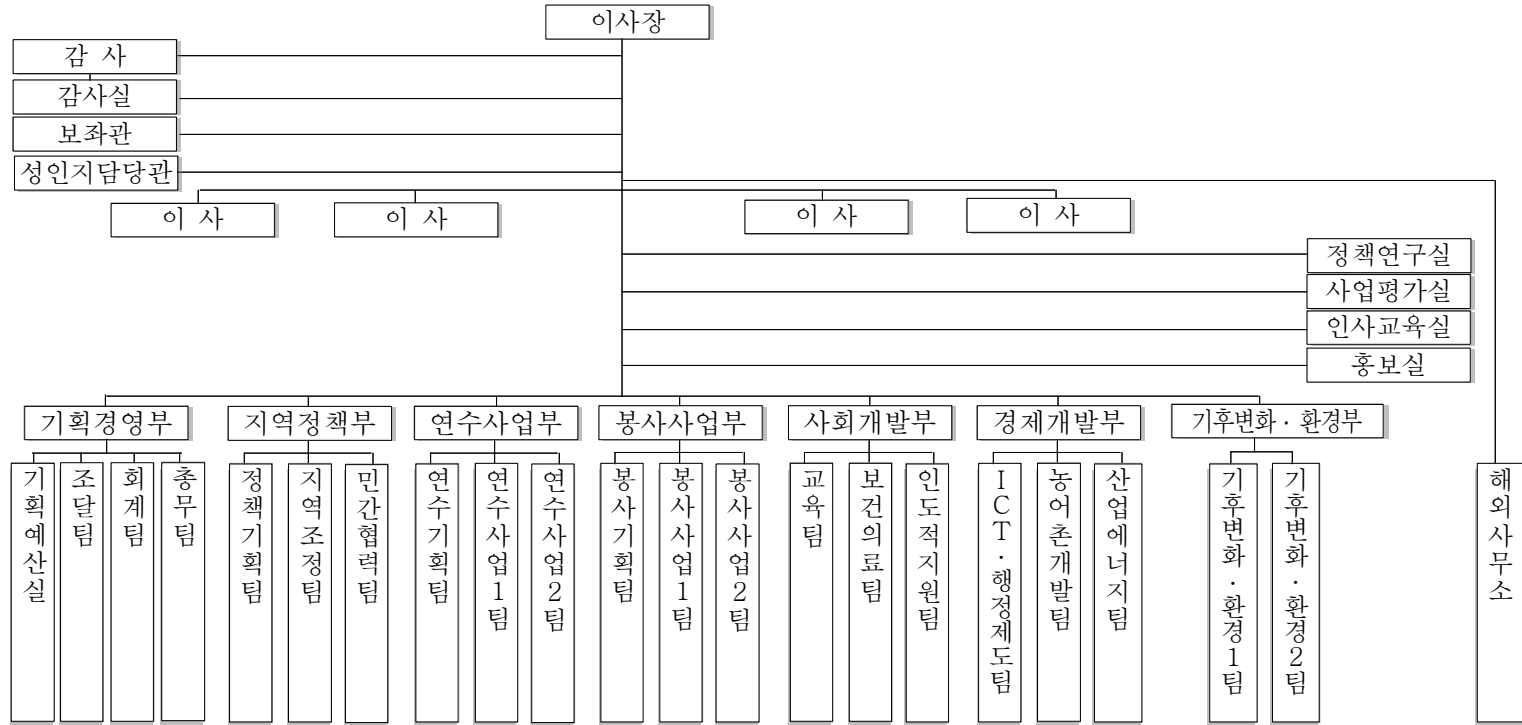
(1) 임 원

한국국제협력단에는 총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8조 제1항). 총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이다(같은 조 제2항).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제10조 제1항).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6항).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같은 조 제4항),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5항).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림-3> 한국국제협력단 조직도



※ 출처 : <http://www.koica.go.kr/>

(2) 이사회

한국국제협력단에는 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이사회를 둔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2조 제1항).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같은 조 제3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재 원

한국국제협력단은 i)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ii)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iii)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²⁸⁾ iv)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같은 법 제15조 전단). 이 경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같은 조 후단).

한국국제협력단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조).

28)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을 부과·징수하는 기여금을 말한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제1항).

4. 주요 사업 내용

한국국제협력단은 i)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연수생의 초청·전문인력의 파견·(한국어교육)해외봉사단의 파견·개발조사·재난구호·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사업, ii)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iii)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iv) ‘i)’부터 ‘iii)’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IV. 한국문화원

1. 설치근거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Service)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관에 두는 기관으로(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제1항 참조),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 조직현황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체관으로 보한다(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제2항).

2010년 현재 뉴욕한국문화원 외 9개국 12개의 문화원이 설치·운영 중이다.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제2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3. 주요 사업 내용

한국문화원은 한국영화상영, 한국음식축제 등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문화원 설치국 사이의 우호와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한글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V. 국립국제교육원

1. 설치 근거

국립국제교육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해 설치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국가기관)이다(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3항). 국립국제교육원은 1962년 모국수학생 지도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로 출발하였고,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었으며,²⁹⁾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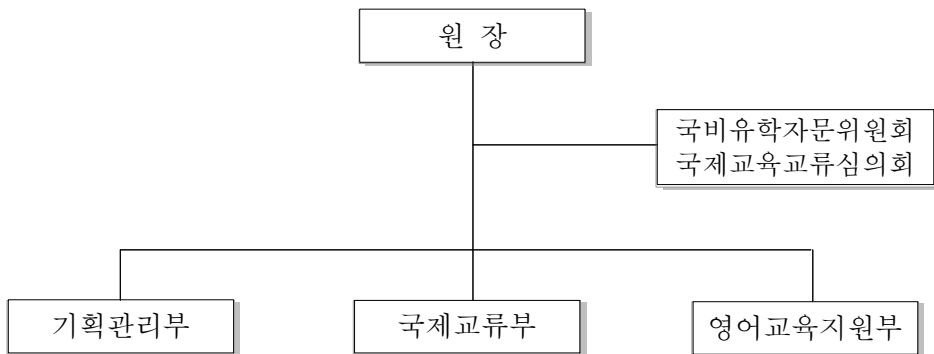
29) 과거의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방문교육, 국제교육·교류협력, 국비 유학생 지도 및 관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 등을 담당했었다. 김정숙, 해외 한국어 보급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뒤, 2008년 7월 11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조직 현황

국립국제교육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그 인적 구성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이다(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이 외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가 존재한다(같은 규칙 제24조).

<그림-4> 국립국제교육원 조직도



※ 출처 : <http://www.niied.go.kr>

3. 소관 사무

국립국제교육원은 i)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ii) 국제교육 교류 협력, iii) 영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iv) 국비 해외유학 지원, v)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vi) 한국어 능력시험의 운영, vii) 영어 공교육 지원사무를 관장하며(교육과학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111쪽.

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기존의 재외동포 연수기관에서 연수 지원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VI. 한국학교 · 한국교육원 · 한글학교

1. 개 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외에 ‘한국학교’ · ‘한국교육원’ · ‘한글학교’ 등의 재외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설치 현황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한국학교 · 한국교육원 · 한글학교 설치 현황

지 역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학교수	교원수 (파견)	학생수 (학급수)	교육 원수	파견 인원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아주	22	891 (33)	10,292 (447)	14	20	3,710,553	335	2,520	25,562
북미	·	·	·	7	3	2,325,605	1,059	9,661	58,543
중남미	3	43(1)	486(33)	3	3	107,029	72	592	4,268
구 주 · CIS	1	9(1)	90(8)	10	11	655,843	604	1,810	37,996
아프리카 중동	4	16(4)	94(24)	·	·	23,576	41	287	1,377
합 계	15개국 30개교	968 (53)	10,769 (499)	14개국 34개원	42	6,822,606	2,111	14,870	128,046

※ 출처 : 재외동포재단(<http://www.korean.net>)

※ 한국학교 교원수(전임교원), 학생수, 학급수 : 2009.9. 기준

※ 동포수 : “재외동포 현황”(외교통상부, 2009.7 기준)

다음에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의 설립(지) 근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학교

(1) 설립 근거 및 현황

한국학교(Korean School)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을 말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대만 등 15개국에 30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북미·유럽지역에는 한국학교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표-5> 한국학교·한국교육원·한글학교 설치 현황 참조).

(2) 설립 절차 및 방법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i)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함)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ii)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한국학교 설립승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국학교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정관 ·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학칙 · 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 ·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

(3) 교육과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 학력 인정

한국학교는 정규학교이므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한국교육원

(1) 설치 근거 및 현황

한국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er)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8조 제1항).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4개원이 설치되어 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에는 한국교육원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표-5> 참조). 한국교육원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일본으로 14개원이

설치되어 있고, CIS 지역에 7개원, 북미 지역에 6개원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에도 한국교육원을 설립하고자 추진한 바 있으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³⁰⁾

(2) 설치 기준

한국교육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i)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에서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가 1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 1실 이상 · 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 설치 절차 및 방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국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한국교육원의 건물은 주재국의 공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30) 노윤환, 재외동포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21쪽.

한국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4) 사업 내용

한국교육원은 i) 국어 등의 보급, ii)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iii)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iv)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활동 지원, v)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vi)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파견, 운영비 지원, 교재 등을 공급해 주고 있다.

4. 한글학교

한글학교(Korean Language School)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³¹⁾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글학교는 현지에서 현지 교민, 회사, 법인 또는 교회·성당 등이 자생적으로 설치한 교육기관으로서 대부분 주말에 한글교육, 한국의 역사·문화 등 한국어 및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³²⁾

그리하여 한글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3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32) 노윤환, 앞의 논문, 23쪽.

에 따라 설치목적, 설치장소, 대표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을 재외 공관장에게 등록한 경우 한글학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같은 법 제31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학교는 한국교육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수는 2009년 9월 현재 북미 지역이 1,059개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주·CIS 지역에 604개교, 중국·아주 지역에 335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나(총 2,111개), 한국의 사설학원과 같이 수시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Ⅶ.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설치 근거 및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단체이다.³³⁾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3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되었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참조).

2010년 현재 서울(4), 부산(3), 대구(3), 인천(3), 광주(2) 등 전국에 총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설치되어 있고,³⁴⁾ 2008년 총 615,820명(연인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했으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사업은 한국어교육사업으로 총 311,555명(연인원)이 참여했다.³⁵⁾

2.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1) 지정권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2) 지정요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i)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ii) 상담실 및 교육장, iii)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경우 상담실 및 교육장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4)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http://liveinkorea.mogef.go.kr/support/support.do?method=supportBoardRead&partyId=mfsc&boardId=244&boardNo=2009272&modelCd=0050003&categoryId=>

35) 보건복지가족부, 앞의 백서, 265쪽.

(3) 지정절차

1) 지정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에서 열거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2) 심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i)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ii) 지리적 접근성, iii)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iv) 시설의 적정성, v)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 지정 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결정을 한다. 이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같은 조 제4항).

3. 주요 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i) 다문화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ii)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iii)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iv)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제2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사업은 다시 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사회이해교육사업, 가족교육사업, 상담사업, 자조집단사업으로 나뉘고, 기타사업은 다시 정서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역량강화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나뉜다. 이들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6>와 같다.

<표-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행 사업

구 분	주요 내용	
기본 사업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초급/중급/고급/기타반으로 구성함 - 국적별 결혼이민자 한글반, 교재연구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한국어강사양성반 등 지역특성 및 센터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로 운영함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상호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함 - 사회교육·역사교육·생활교육 등으로 진행함 - 사회교육 : 지역사회 및 한국의 전반적인 정보·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구 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육 : 현장체험 등을 통한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함 - 생활교육 : 전통예절수업 실시 등 지역센터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함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배우자, 부부, 시부모, 부모-자녀, 가족 통합 등 가족구성원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법을 터득하게 함으로서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함 - 전문가강사의, 전문기관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진행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가족, 자녀, 법률, 심리, 생활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정보제공, 문제해결 등의 서비스를 수행함
	자조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심리적 안정, 이웃과의 유대감 형성, 상호정보교류 및 심리적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문화가족자조집단, 통합국적자조집단, 국적별자조집단, 배우자자조집단, 시부모자조집단을 운영함
기타 사업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멘토링,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함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강사·원어민강사·통번역사 양성 과정, 컴퓨터(정보화)교육, 운전면허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자녀이중언어교육 등을 실시함
	다문화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관련 심포지엄, 토론회, 포럼,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다문화강사파견, 학교·유치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

구 분	주요 내용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인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진행함
	전문인력 양성	- 한국어강사양성, 자원봉사자교육, 산모도우미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결혼이민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9, 263-264쪽.

4. 비용의 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단체이므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것과 같은 정부출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Ⅷ.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 지원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지원 대상 기관 또는 단체로 외국인근로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이다. 2010년 8월 현재 서울, 안산, 의정부, 김해, 마산, 대구, 인천, 천안의 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 지원 요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국가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ii)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iii)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매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참조).

3. 주요 사업 내용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i)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ii) 국내 생활 지원사업, iii)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사업, iv)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v) 상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비용의 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민간단체이므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것과 같은 정부출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참조).

IX. 국립국어원 · 한국어세계화재단

1. 국립국어원

(1) 설치 근거

국립국어원(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거나 표준말을 사정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지며, 또한 어문 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 발간하여 국어와 관련된 유산을 보존, 연구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고, 국어 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국립국어원은 1984년 5월 10일 학술원 산하 임의연구기관인 국어연구소로 출발하였고, 1990년 11월 14일 문화부 소속 국립국어연

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 18588호 2004. 11. 11.)에 따라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립국어원은 북한의 어문 규범에 익숙한 중국 및 CIS 지역의 동포들에게 우리 어문 규범을 보급함으로써 언어의 동질성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 어문 규범과 문법, 우리말과 글의 역사, 언어 예절, 남북한 어문 규범 차이 등 한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고 문화유적지 답사와 지방산업체 시찰도 시행하고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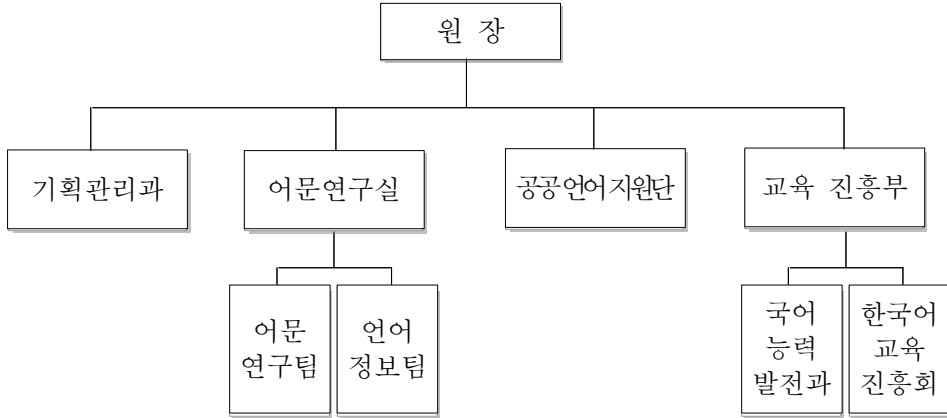
(2) 조직 현황

국립국어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그 인적 구성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제1항).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2항). 국립국어원에는 어문연구실·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정원은 연구직 24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이다.³⁷⁾

36) 노윤환, 앞의 논문, 19쪽.

37)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167쪽.

<그림-5> 국립국어원 조직도



※ 출처 : http://www.korean.go.kr/09_new/about/organization.jsp.

(3) 주요업무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³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국내외의 보급·전파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크게 i)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ii) 이주 한국인 한국어 교육 지원, iii)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문화체

38) 보다 구체적으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은 i)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ii)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iii)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iv)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v)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사무를 담당한다(같은 령 제39조 제2항).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은 i)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ii)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iii)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iv)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사무를 담당한다(같은 령 제40조 제2항).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는 i)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ii)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기 양성에 관한 사항, iii)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iv)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v)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vi)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같은 령 제41조 제2항).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2항 참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국립국어원 한국어 · 한국문화 보급·전파 관련 사업

구분	주요 내용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한류의 확장, 국내 외국인과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³⁹⁾
이주 한국인 한국어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외국인의 사회 통합과 한국 사회로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도모함 - 자원 봉사자와 전국의 국어 상담소를 활용한 한국어 방문 학습지 개발, 언어권별 오디오 북 개발과 함께, 방송국과 연계한 공중파 교육 체계의 구축을 도모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한국문화 일변도의 교육 방법에서 탈피하여 한국문화의 우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함을 소개함과 동시에 교육 대상자의 출신국가의 문화도 함께 소개하는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외국인들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의 생활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각 언어권별로 교재를 제작하고, 드라마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교육 자료와 이주민의 특성에 맞춘 오디오 워크북을 개발할 계획임 - 한국어 교육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한국어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1992년부터 한국어 전문가를 중국, 구소련,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 파견하여 현지의 한국어 교사들을 교육하는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사업과 국외 한국어 교사 또는 한국어 관련 직업 종사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하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는 몽골 세종학당과 일본 오사카한국문화원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한글학회와 공동으로 3회에 걸친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사업을 실시함

※ 출처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6.

39)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는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한국어 교원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꾀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2. 한국어세계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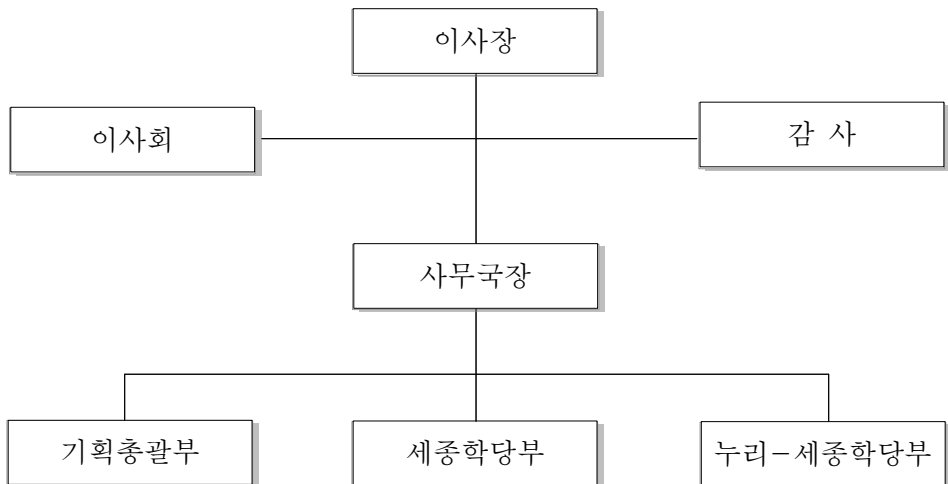
(1) 설립근거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1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한국어의 세계 보급 및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현황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이사장 1명, 사무국장 1명, 1국,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6> 한국세계화재단 조직도



※ 출처 : <http://www.glokorean.org>.

(3) 주요 사업 내용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 교육자료, 교수법 등을 개발하고,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교사지원사업, 세종학당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IX. 문제점

이상에서 한국어 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근거, 조직현황, 재원, 소관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상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그 대상범위가 한정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상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복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일환으로 한국어 강사 현지 파견 등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국제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한국어교육 해외봉사단의 파견 등 한국어 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라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등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학교·한국어교육원·한글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정규교육기관이고, 한국어교육원은 재외국민에게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며,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이다.

다문화지원센터는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다.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이주 한국인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어 세계 보급 및 한국어 교육자료·교수법 개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교사지원사업, 세종학당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한국어 보급관련 유사 기관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등

기관명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상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u>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u> - <u>재외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한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u> - <u>재외한글학교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기회 제공</u> - <u>지역별 한글학교 현황 파악 및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u> - <u>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등</u>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1997. 10. 30. 설립

기관명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한국국제교 류재단법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 나, 개념 내재적으로 국내 거 주자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 의 파견 및 초청 ○ <u>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u> ○ <u>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 한 모든 활동</u>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1991. 12 30. 설립

제 3 장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기관명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p>	<p>외교통상부 산하기관</p>	<p>한국국제협력단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연수생의 초청·전문인력의 파견·(한국어 교육)해외봉사단의 파견·개발조사·재난구호·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사업 ○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외국의 원조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 및 	<p>1991. 4. 설립</p>

기관명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p>연구·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Service)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 소개 ○ 한국과 문화원 설치국 사이의 우호와 교류증진 도모 ○ 한글강좌 개설·운영 	
국립국제교육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국가기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재외국민의 교육 지원</u>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영어, <u>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u> ○ 국비 해외유학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 <u>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u> ○ 영어 공교육 지원사무 	

제 3 장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기관명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er)</p>	<p>교육 과학 기술부장관이 외교 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평생 교육기관</p>	<p>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등의 보급 ○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 -14개국에 34개원 설치(아프리카·중동지역 미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국어원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p>	<p>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p>	<p>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 ○ 한국어와 한국문화 국내외 보급·전파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 이주 한국인 한국어 교육 지원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함 	

기관명	소속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한국어세계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자료, 교수법 등 개발 ○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교사지원 사업 ○ 세종학당 관련 사업 등 	2001. 1. 13. 설립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기관의 관할 부처, 근거 법령, 설립(치) 방법, 운영 현황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9>와 같다.

<표-9> 한국어 교육기관 관할 부처, 근거 법령, 설립(치) 방법, 운영 현황 등

기관명	관할 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설립(치) 방법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한국학교 (Korean School)	교육 과학 기술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 실시	15개국에 30개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기관 - 국내외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 북미·유럽지역 미 설립

제 3 장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설립(치) 방법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한글학교 (Krean Language School)	교육 과학기술부	한글 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면 경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현지 교민, 회사, 법인 또는 교회·성당 등이 자생적으로 설치 -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2,111개교 설치	- 비정규교육기관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설립(지) 방법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한국어 교육 대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여성가족부장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현재 서울(4), 부산(3), 대구(3), 인천(3), 광주(2) 등 전국에 총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설치되어 있음 -2008년 현재 총 615,820명(연 인원)이 사업에 참여했음 -가장 높은 	민간단체

제 3 장 한국어 보급 관련 유사 기관 근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기관명	관할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설립(지) 방법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참여율을 보인 사업은 <u>한국어 교육사업</u> 으로 총 311,555명(연인원)이 참여함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 활동 지원사업 -국내 생활 지원 사업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사업 -<u>한국전통문화 교육</u> 및 홍보사업 -상담사업 등 	2010년 8월 현재 서울, 안산, 의정부, 김해, 마산, 대구, 인천, 천안의 8곳에서 운영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단체 -고용노동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교육 또는 지원 대상	설립(치) 방법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고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보급	2010년 현재 9개국 19개소 운영 중임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을 약간씩 달리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중복하여 다수 부처 다수 기관에서 중복지원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어 보급을 위한 통합적 전략 및 추진기반이 미흡하여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곤란과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예산의 중복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의 자국어 보급 기관은 다음의 <표-10>과 같이 설립 및 운영 중이다.

<표-10>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국가 및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목적	주요 재원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일본 국제교류기금 (Japan Foundation)	외무성	「독립행정 법인 국제 교류기금 법」(법률 제137호)	i)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 진하여 일본에 대한 제 외국의 이해를 증진하 고, ii) 국제상호이해,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 서의 공헌, 이를 바탕으 로 국제환경을 양호하 게 정비하며, iii) 일본 의 조화 있는 대외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출자금 (1,130억 엔) 을 재정적 기초로 정부 출자금의 운 용이익, 정 부로부터의 운영비 교부 금 및 민간 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함	i) 국제문화교류의 목적 수행하는 사 람의 파견 및 초청, ii) 해외에서의 일본 연구에 대한 원조, 알 선 및 일본어 보급, iii)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iv)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 한 자료와 그 밖의	본부(도쿄 소 재)와 교토지 부, 2개의 부 속기관(일본 어국제센터, 관서국제센 터) 및 해외 20개국에 22 개의 해외거 점이 개설되 어 있음	-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국가 및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목적	주요 자원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v)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정비에 대한 원조, 국제문화교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구입에 대한 원조 및 이러한 물품의 증여(국제교류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 vi) 국제문화교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vii) 이러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함		

국가 및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목적	주요 자원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고
중국 공자학원 (Confucius Institute)	교육부		i) 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ii) 세계 각국 국민의 중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iii) 각국의 중국어 학습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국어 교육 콘텐츠 지원, 중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 중국어 교재 개발 및 출판,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그 주요 사업으로 함	87개국에 28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독일 괴테-인스티튜트	외무부	「공단체의 규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립	i) 외국에서의 독일어 지식의 장려, ii) 국제적 문화협력증진, iii) 문화적·공동체적 및 정치적 삶에 관한 정보를 통한 독일의 다양한 모습을 전파를 목적으로 함	연방보조금	괴테-인스티튜트는 독일어, 독일 문화 및 독일 사회에 관한 접근의 길을 열고, 국제적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 괴테-인스티튜트는	83개국에 147개가 설치되어 있음	- 등록단체 (공법인)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국가 및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목적	주요 자원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p>문화적, 공동체적 그리고 정치적 삶에 대한 정보를 통해 독일의 파노라마적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활동을 수행함</p> <p>-괴테-인스티튜트는 다수의 괴테-인스티튜트들과 괴테센터(Goethe-Zentren), 문화공동체(Kulturgesellschaften), 독일서적열람시설(Lesesälen), 평가 및 어학연수센터(Pfungs- und Sprachlernzentren)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50여년 이상 외국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p>		

국가 및 기관명	관할부처	근거 법령	목적	주요 자원	주요 사업 내용	운영 현황	비 고
					문화 및 독일어교육정책의 핵심적 임무를 담당해 오고 있음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외교 · 유럽부		전세계에 프랑스어 및 프랑스문화를 전파함	정부의 재정 적 지원보다 는 수강료 등 현지 수입에 의존하여 운 영 중임	i)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 상으로 다양한 프랑스 어 강좌를 제공함 ii) 프랑스는 물론 프랑 스어권의 문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잘 알림 iii) 프랑스의 모든 문 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 을 널리 이롭게 함 iv) 프랑스 정부가 공인하 는 프랑스어 능력 시험 을 주관함	135 개 국 에 1,016개가 설 치되어 있음	사법상 재 단법인이며 로 직접적 인 설치 근 거 법령은 없음

이하에서는 이들 기관의 설립근거, 목적, 재원,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 일본 국제교류기금

1. 설립 근거 및 목적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외무성 소속 기관으로 1972년 10월 「국제교류기금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국제교류기금은 2002년 12월 6일 제정된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법률 제137호)⁴⁰⁾에 따라 2003년 10월 1일에 외무성 소관 독립행정법인화되었다.

국제교류기금은 i)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제 외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ii) 국제상호이해,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의 공헌, 이를 바탕으로 국제환경을 양호하게 정비하며, iii) 일본의 조화 있는 대외관계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2조). 이러한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금

40)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국제교류기금법」은 폐지되었다. 「국제교류기금법」은 국제교류기금의 업무 범위로 i)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인물파견 및 초청, ii) 해외에서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 보급, iii)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iv)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그 밖의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v)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연구, vi) 위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vii) 이러한 업무 이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어 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연락하도록 하였다(제23조). 또한 기금의 경우 업무 개시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24조).

의 임원에 대해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23조제1호).

2. 조직 현황

국제교류기금에는 필요적으로 이사장 1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7조 제1항), 임의적으로 3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같은 법 제9조).

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장을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9조 제2항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임원은 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를 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대리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이사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두지 않아 감사가 임원을 하게 되는 경우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대리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감사는 본래의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제교류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벌칙적용에 있어 법령에 따른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11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조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퇴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2조).

국제교류기금의 주사무소(본부)는 동경에 있다(제4조). 현재 본부와 교토지부, 2개의 부속기관(일본어국제센터, 관서국제센터) 및 해외 20개국에 22개의 해외거점이 개설되어 있다. 본부는 문화사업그룹, 일본어사업그룹, 일본연구·지적교류사업그룹의 3개의 그룹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 특성에 따라 하위에 부(部)와 센터, 팀의 조직형태로 되어 있다.

한편 2009년 4월 국제교류기금은 보다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부 및 부속기관의 각부서 사업을 재검토하여 부의 일부 통합과 사업 부문에 대한 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직형태 중 팀제는 부에서의 조직을 각부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동성 등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2010년 8월 현재까지 국제교류기금의 조직 개혁 현황⁴¹⁾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국제교류기금 조직 개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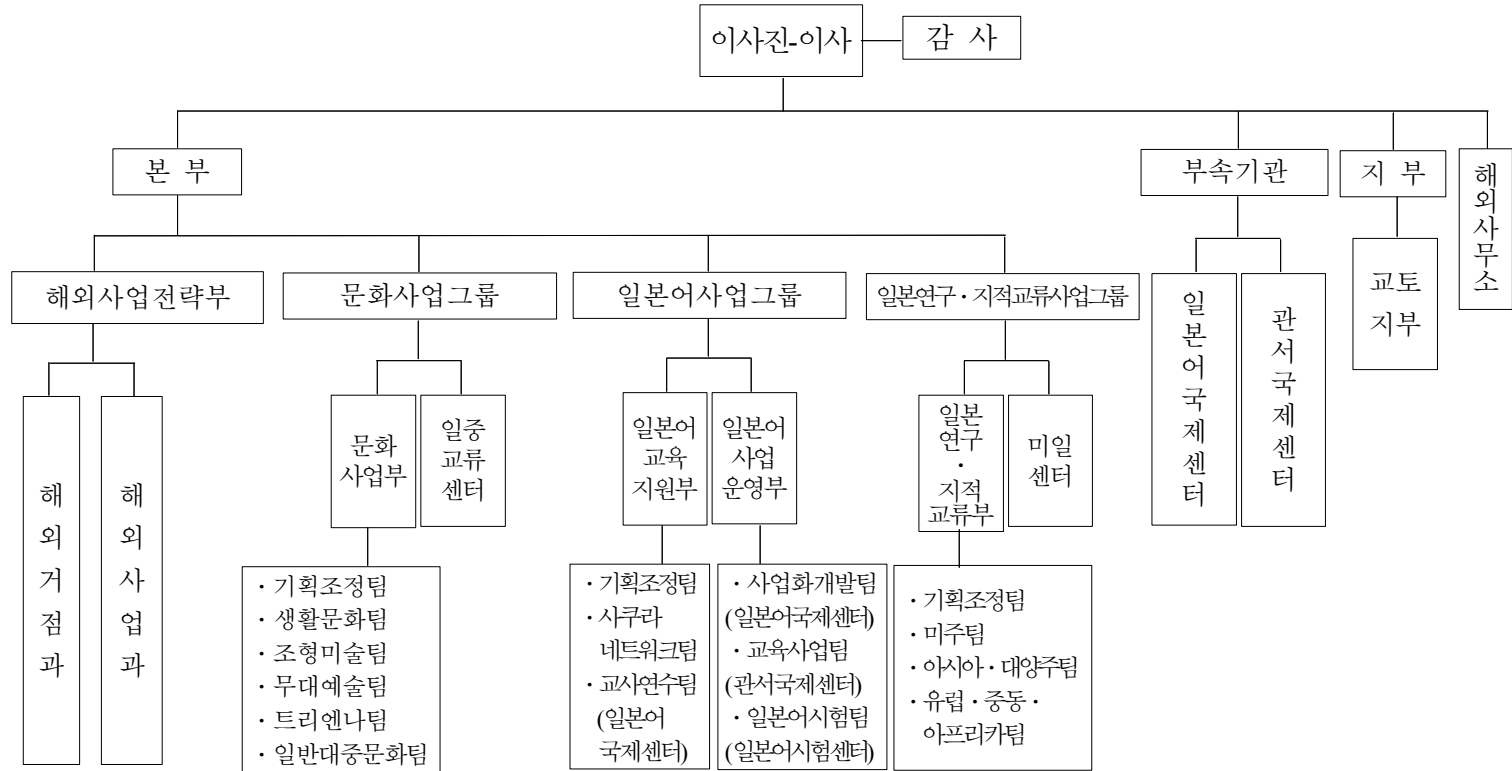
추진 일자	개혁 부문	주요 내용
2004년 5월	사업부문의 대폭적인 재편	사업 부문을 크게 ‘문화예술교류’, ‘일본어사업’, ‘일본연구·지적교류’로 재편하고 달성 목표를 명확화 하였으며,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 발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센터’를 설치함

41) <http://www.jpf.go.jp/j/about/outline/admin/reorganization.html>.

추진 일자	개혁 부문	주요 내용
2006년 4월	중일문화교류센터 설치	1991년 이래 설치되어 있는 미일센터와 더불어 새롭게 중일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중일의 청년교류의 장을 대폭 확충했고, 일본과의 교류 장소가 되는 ‘만남의 장소’를 중국의 지방도시에 개설함
2007년 1월	사업개발전략실 설치	해외에서의 일본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조언 등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선구적 사업을 개발 · 실시하는 부문을 설치함
2008년 4월	해외사업전략부 설치 및 총무부에 기업·평가과, 조사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역마다의 사업 전략의 입안·실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전략부를 설치하였으며, 해외거점과와 해외사업과의 2과 체제로 구성함 -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에 기획·평가과를 설치하고, 총무과내에 조사실을 설치함
2008년 10월	일본어시험센터 설치	일본어능력시험의 내용 충실과 복수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어사업부에 일본어시험센터를 설치함

국제교류기금의 조직 개혁에 따른 조직현황은 다음의 <그림-7>과 같다.

<그림-7> 국제교류기금 조직 - 2010년 4월 현재 -



3. 재 원

국제교류기금의 기본적인 재원은 정부 출자금이고(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6항 참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기금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국제교류기금은 정부출자금(1,130억 엔)을 재정적 기초로 정부출자금의 운용이익,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교부금 및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⁴²⁾

4. 소관 사업

(1) 개 요

국제교류기금은 i)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의 파견 및 초청, ii) 해외에서의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 보급, iii)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iv)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와 그 밖의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v)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정비에 대한 원조, 국제문화교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구입에 대한 원조 및 이러한 물품의 증여(국제교류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 vi) 국제문화교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vii) 이러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12조).

42) <http://www.jpf.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

국제교류기금은 주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일본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기목표 사업계획 및 분야별 시책

1) 중기목표 사업계획

국제교류기금은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기목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기목표 사업계획의 대상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이다.⁴³⁾ 국제교류기금이 수립한 중기목표는 크게 i) 종합적·효과적인 사업실시를 위한 조치, ii)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업무의 질 향상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iii) 대외관계 배려를 위한 조치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① 종합적·효과적인 사업실시

국제교류기금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i) 문화예술교류 촉진,
- ii) 해외일본어교육·학습에 대한 지원 및 추진,
- iii) 해외일본연구 및 지적교류 촉진,
- iv) 국제교류정보 수집·제공 및 국제문화교류 담당자 지원,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교류기금은 외교정책, 수인국의 요구, 국제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12>과 같은 사항을 중점화해야 한다.

43) http://www.jpj.go.jp/j/about/outline/admin/plan/data/mid_plan_19_24.pdf p.2~p.4

<표-12> 국제교류기금 사업 중점화 내용

분 야	중점화 내용
문화예술 교류분야	각 국·각 지역의 사정을 배려하면서 정부간의 합의에 근거하는 대형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 또는 상대국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협력에 근거하는 사업 등 외교 정책상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중점화함
일본어분야	각 국·각 지역의 교육정책 및 요구를 고려하면서 각 국·각 지역의 일본어 교육 기반의 발전 단계에 따라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에 중점화함
부속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사업분야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어 학습 요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교상 필요성의 높은 사업에의 중점화를 도모하고 필요성이 낮은 연수를 폐지하는 등 연수사업을 재검토함
일본연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각 지역에서의 일본연구의 핵심이 되는 기관이나 대일 이해의 핵심이 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화함 - 지적교류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이 직면한 과제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국가·지역과의 교류에 중점화함

국제교류기금은 위와 같은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성·유효성·효율성의 관점에서 매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외무성이 마련한 지역별 중점시책, 중점사업 및 정책적 과제를 고려하면서 해외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 및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사업방침을 작성한 후, 해당국의 국내 사정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와 비교하고, 실시하는 사업의 질적·양적인 불균형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기금은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를 도모할 때 해당국의 요구·관심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의견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②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업무의 질 향상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인터넷, 출판물 등을 통해 각 사업부에 대한 사업의 실시예정 및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계 부처, 다른 국제교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개최, 협력, 정보 공유·정보교환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③ 대외관계 배려

사업실시에 있어, 특히 외교상 중요한 문화사업의 실시가 요구되는 경우는 가능한 협력하고, 문화사업의 실시·중지 및 해외사무소의 설치·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분야별 시책

앞서 언급한 중기계획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은 문화예술교류촉진, 해외에서의 일본연구·지적교류촉진,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국제문화교류담당자 지원 그리고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학습 지원촉진에 대한 기본방침과 세부시책을 정하고 있다.

① 문화예술교류 촉진

문화예술교류촉진은 일본과 여러 국가의 국민이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해를 향상시켜 대일 이해를 촉진시키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국제 공헌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식하여 교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시설 등의 정비 상황, 현지 사정·필요성에 관한 현상 및 향후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외교상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근거한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한다.

결국 문화예술교류촉진에 있어 기본방침은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및 상대국의 국내사정·필요성에 따라 이하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⁴⁴⁾

② 해외 일본연구 및 지적교류 촉진

국제교류기금은 해외 일본연구 및 지적교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 국·지역의 사정, 필요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성격 및 외교상의 필요성·중요성에 입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따라서 기본방침으로서는 i) 지원에 있어 상대국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연구의 촉진이 효과적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육성, 지적커뮤니티에 의한 일본연구자의 활약기회 창출, 일본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확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ii)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실시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⁴⁵⁾

44) 전계 주(3) P.4 세부시책에 관해서는 P.6~8 참조

45) 전계 주(3) P.13 세부시책에 관해서는 P.14~18 참조

③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국제문화교류담당자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제교류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에게의 서비스 강화와 국제교류담당자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정보제공과 다른 단체 등과의 연계 창구를 중심으로 국제교류기금의 사업 정보를 포함한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보 전반의 제공을 실한다. 또한 외부와의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여 국제문화교류사업에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여 국민이 국제문화교류에 참가하기 쉽도록 도모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국제교류 동향 파악, 분석 등 국제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의 충실에 노력한다. 46)

④ 해외에서 일본어 교육·학습 지원 및 추진

국제교류기금은 각국에서의 일본어 학습에 관한 현지 환경, 요구현상 및 향후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더불어, 각국에 대한 일본어 보급의 외교상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지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일본어 보급 시책을 실시한다.

㉠ 기본방침

해외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있어서는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 및 상대국에서의 일본어 교육 기반의 정비 상황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음의 <표-13>과 같은 기본방침을 근거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실시되도록 한다. 다만, 외교상의 요구 및 일본어 보급 사정의 변화

46) 전계 주(3) P.17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P.18 참조

가 있을 경우에는 유연히 대처하여 효과적인 사업 실시가 되도록 한다.⁴⁷⁾

<표-13> 해외에서 일본어 교육·학습 지원 및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

구 분	증점화 내용
일반시민·학습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교육지원 충실	다양한 학습동기를 배경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본어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으로서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의 구축 및 모델로서 일본어 강좌 운영을 실시하고, 현지 관민 기관이 국제교류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반시민이나 학습초보자 전용의 일본어 교육시설을 확충 전개할 수 있도록 사업형태를 종래의 지원형사업에서 증점형으로 전환함
상대국의 일본어 교육 기반 정비 상황을 고려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현지화·자립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국·지역의 교육정책 및 일본어 학습 요구를 고려하고, 각국·지역의 일본어 교육 기반의 발전 단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기관·학습자층 등의 사업 대상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교재개발·거점기관 정비·네트워크형성 등 제시책을 명확하게 하여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에 증점화함 - 범용성을 갖춘 포괄적·체계적인 국제표준으로서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를 구축하여 모델 강좌의 운영등을 통해서 그 보급을 도모하여 다양한 해외의 일본어 학습 요구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함

47) 전계 주(3) P.9

구 분	중점화 내용
지역적 필요성에 대응한 지원	근린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대국도 일본어 교육에 대한 관심, 요구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함
부속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어 학습 요구의 변화에 따라 외교상의 필요성의 있는 사업에의 중점화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실시함 - 연수생이 방일기간 중에 대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를 고려하여 시장화 테스트의 실시를 포함한 경비의 효율화에 노력해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 및 숙박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함

㉞ 시 책

앞서 언급한 기본방침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은 다음의 <표-14>와 같은 시책을 실시한다.⁴⁸⁾

<표-14> 해외에서 일본어 교육·학습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시책

구 분	중점화 내용
다양한 일본어 관심과 요구를 일본어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시책	- 국제표준으로서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의 구축 및 모델로서의 일본어 강좌 운영을 실시하면서 현지 관민·기관이 국제교류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시민과 학습초급자 전용의 일본어 교육 시설을 확충 전개할 수 있는 해외의 일본어 교육을 지원함

48) 전계 주(3) P.10~P.12

구 분	중점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학습자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중문화의 활용과 「e-러닝」등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촉진함 	
<p>해외일본어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형 성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p>	<p>- 네트워크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기관, 해외사무소의 운영을 통해서 해외 일본어 교육의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본어 교육기관, 교사, 학습자 조사 실시 및 해외 일본어 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여 그 정보를 인쇄물, 전자매체, 세미나 등을 통해 내외에 제공함 - 이 조사 분석에 근거하여 일본어 교육 관계자 등과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각국의 사정에 부응한 일본어 교육 지원 방침을 작성함 - 국제교류기금의 해외사무소는 해외 일본어 교육의 종합적 네트워크의 임무를 담당하며 상대국의 사정 및 요구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일본어 보급에 관여함 - 웹사이트를 통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연간 접속 건수가 전기·중기 목표 기간 중의 평균 연간 접속 건수를 상회하도록 하나의 지표로서 내용을 충실화함
	<p>기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일본어교육의 거점이 되는 기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함 · 해당국에서 거점이 되는 일본어 교육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구 분	중점화 내용	
		<p>기관, 국제교류기금 해외사무소 등에 일본어 교육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국의 일본어 보급지원을 실시하는 「어드바이저형」 파견을 종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일본어 교육·학습지도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자립화, 현지화가 달성된 포스트는 단계적으로 파견을 종료함. · 거점이 되는 해외 일본어 교육기관의 교사 확보경비와 해외의 일본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네트워크화, 학습 레벨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연수, 행사 등 경비를 조성함 · 국제교류기금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지원 대상 기관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 이상 가치가 있었다는 평가를 얻을 것을 목표로 함 · 조성 사업 등 설문조사 실시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표에 근거한 외부 유식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체로 양호」이상의 평가를 얻을 것을 목표로 함
	일본어 능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의 대규모 일제 시험으로서 일본어능력시험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함 - 보다 많은 해외 일본어 학습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외의 실시 체제를 정리하여 시험 실시지역을 증가시킴

구 분	중점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차례 실시의 조기 실현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를 구축하고, 일본어 학습자가 자기의 운용 능력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재검토 함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외 일본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 일본어교사 등을 초빙 하여 일본어, 일본어 교수법, 일본사정 등의 연수사업을 부속 기관에 실시하고, 해외 일본어 교육·학습을 위한 교재 제작을 기획·실시 또는 지원함 - 국제 교류기금이 제작한 일본어 교재는 출판·공개에 의해 이용을 촉진함 - 영상 교재 제작, 텔레비전 방영 등을 기획·실시 또는 지원함 - 해외 일본어 교육기관에 대해서 각종 일본어 교재를 기증하고 일본어 교육에 관한 전문 도서관으로 일본어 국제센터 도서관을 운영함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기금 이외의 기관으로는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전문성의 높은 일본어 연수 및 일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연수를 수강할 기회를 해외 일본어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직업상 또는 연구 활동상 전문성이 높은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

구 분	중점화 내용
	<p>대한 전문 일본어 연수 사업 및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일본어 학습 장려 연수사업 등을 부속기관에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무소에서는 재외공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현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현지의 일본어 교육 사정과 현지 요구의 정밀한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본어 보급이 추진되도록 함 - 국내에서는 관민의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효율적·효과적인 일본어 보급의 체제구축에 노력함 - 일본어 교육, 학습에의 지원에 있어서는 국제교류기금의 일본연구·지적교류와 문화예술교류의 제반사업 연계하여 국제교류기금 사업간의 상승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유학생 교류 등 관련 시책과도 연계를 도모함

(3) 주요 사업 내용

1) 일본어교육사업

국제교류기금은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이 일본과의 교류 담당자를 양성함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층화하여 여러 국가와의

우호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하다 라고 인식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10년 8월 현재 해외 133개 국가와 지역에 365만여 명이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으며(2009년 국제교류기금 조사에 의함), 학습자수는 30년간에 약 30배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학습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의 취직·유학과 같은 실리 지향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애니메이션·만화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이유로 일본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국제교류기금을 통해서 일본어 전문가의 해외파견, 해외의 일본어 교사 및 학습자 방일 연수, 일본어 교재개발·기증 등을 실시하는 것 외에 각국의 재외 공관의 문화 사업 차원에서 일본어 변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어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53개의 국가·지역, 173개 도시에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실시(2009년은 약 62만 명이 수험)하고 있고, 젊은 층을 겨냥한 일본어 영상교재(「에린가 도전! 일본어 할 수 있습니다.」)를 제작하여 NHK 교육 TV, 해외의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으며⁴⁹⁾ 향후 방영범위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각국에서의 일본어 보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세계 100여 곳 이상에서 해외 사무소 및 일본어 교육 전문가 등이 파견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JF 일본어 네트워크(통칭: 벚꽃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본어 교육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⁵⁰⁾

49) 영상교재에 대해 자세히는 <https://www.erin.ne.jp/jp/> 참조

50) <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edu/index.html>

① 파견사업

국제교류기금은 각국 교육부, 기금의 해외거점, 중등·고등교육 기관 등에 ‘일본어 상급 전문가·일본어 전문가’, ‘일본어 지도 조수’, ‘JENESYS 청년 일본어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i) 일본어 상급 전문가·일본어 전문가(이하 “일본어 전문가등”이라 한다)는 일본어 교육의 전문가로서 현지 교사들이 자립적으로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재 작성의 조언을 하거나 현지 교사 육성 및 교사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i) 일본어 지도 조수는 일본어 전문가 등의 지도 하에 일본어 교육의 경험을 쌓아 해외의 일본어 교육 지원과 장래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iii) 「JENESYS 청년 일본어 교사⁵¹⁾」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 JENESYS Programme)⁵²⁾」의 일환으로서 파견하고 있다. 현지 교사와 협력하여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일본 문화의 소개를 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켜 청년 일본어 교사 자신의 국제 이해가 증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JENESYS 프로그램’이란 2007년부터 5년간의 예정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 : JENESYS Programme)」

51) http://www.jpff.go.jp/j/japanese/dispatch/jenesys_yjt/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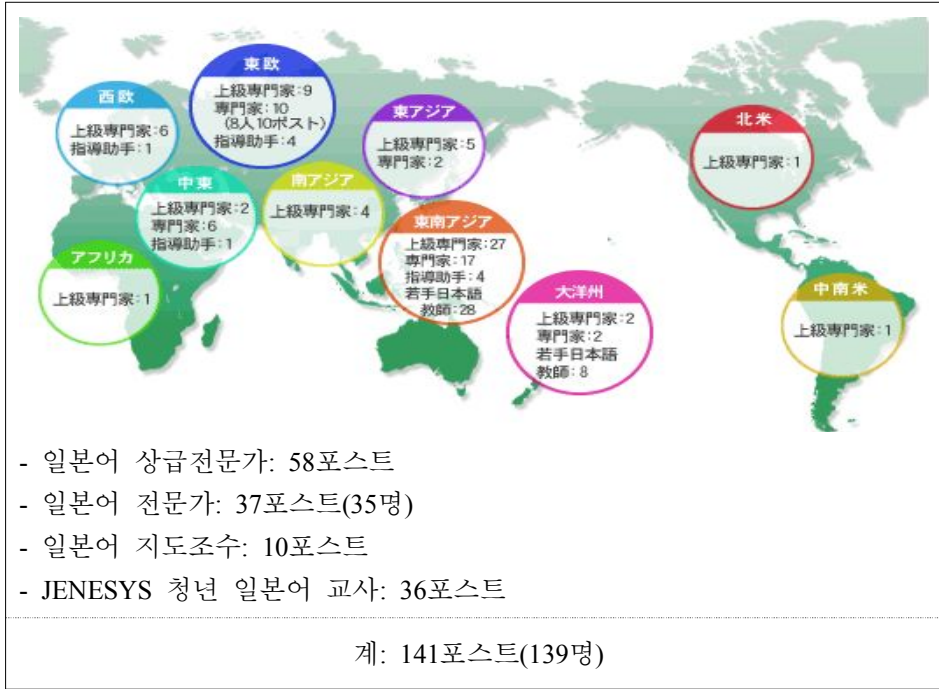
52)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http://www.jpff.go.jp/j/jenesys/index.html> 참조

으로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고교생, 대학생, 교사, 그 밖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초빙 및 일본의 청소년의 파견을 통해서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과 일본의 연계 토대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청소년 교류 사업을 말한다.

‘청년 일본어교사파견 프로그램’이란 JENESY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대학에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일본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청년을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일본어 교육기관에 약 10개월간 파견하여 현지의 일본어 교사와 협력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일본 문화의 소개 등을 통해 현지의 청소년의 일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본 청년들의 국제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이란 2007년 1월에 개최된 제2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아베총리대신(당시)이 표명한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서 대규모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의 강고한 연대구축을 목적으로 EAS 참가국(ASEAN,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을 중심으로 5년간에 매년 6,000명 정도의 청소년을 일본에 초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교류기금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써 동아시아 크리에터 초청, 중국고교생 장기초청, 동아시아 대학원생 일본연구 특별초청 프로그램의 초청사업, 동아시아 차세대 리더프로그램, 차세대 리더프로그램의 교류사업 및 동아시아 청년 일본어파견 연수프로그램의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15> 과견사업 현황



주1) 과견사업 현황은 2010년 4월 30일 기준임

주2) <http://www.jpf.go.jp/j/japanese/dispatch/index.html>

② 연수사업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연수사업에는 해외 일본어교사의 방일연수, 전문일본어 연수, 일본어 학습자 방일연수프로그램이 있다.

i) 해외 일본어 교사 방일 연수

일본어 국제센터에서는 해외 일본어 교사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켜 일본에 관한 지식이 체고되도록 다음의 <표-16>과 같은 지도적 일본어

교사 양산 연수 프로그램과 <표-17>과 같은 해외 일본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는 3주간부터 9개월의 기간으로 매년 50개국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약 500명의 해외 일본어 교사가 참가하고 있다.⁵³⁾

<표-16> 지도적 일본어 교사 양산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세 내용	기 간
일본 언어문화 연구 프로그램 (박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일본어 교육기관 등 현직 일본어 교사 또는 일본어 교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일본어 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도록 하여, 장래 각국의 일본어 교육계의 지도적 지위에 설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은 일본어 국제센터 외에 국립국어연구소, 정책연구 대학원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함 	3년간
일본어 교육지도자 육성프로그램(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일본어 교육기관 등 현직 일본어 교사 또는 일본어 교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일본어 교육 석사과정을 수료하도록 하여, 장래 각국의 일본어 교육계의 지도적 지위에 설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은 일본어 국제센터 외에 국립국어연구소, 정책연구 대학원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함 	1년간
해외 일본어 교사 상급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교사로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이 필요하고 또한 일본어 교육의 실전에 있어 실현하고 싶은 일본어교 	2개월

53) http://www.jpff.go.jp/j/urawa/trnng_t/trnng_t.html

프로그램	상세 내용	기 간
	재제작, 교수법, 커리큘럼 개발 등 과제와 해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립적인 문제해결능력 육성을 목적으로 함	

<표-17> 해외 일본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내용	기 간
장기연수	일본어 교수경험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청년 외국인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일본어, 일본어교수법 및 일본사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함	6개월
단기연수	일본어 교수경험이 2년 이상의 외국인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일본어, 일본어교수법 및 일본사정에 관해 연수를 실시함(단기연수는 년 3회<봄·여름·겨울>실시)	2개월
해외 일본인 연수	해외 재주 일본인 일본어교사를 대상으로 일본어 교수법과 과제연구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함	1개월
국가별 연수<미국·캐나다·영국 초·중 등 일본어 교사연수를 제외함> (비공모 프로그램)	일본어학습자가 많고 일본어 보급도가 높은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 국가·지역별로 일본어 연수를 실시함 <인도네시아 중등교육 일본어 교사연수> <대한민국 중등학교 일본어 교사연수> <중국대학 일본어 교사연수> <중국 중등학교 일본어 교사연수>	1개월 ~2개월

B) 전문 일본어연수, 일본어 학습자 방일 연수

관서국제센터에서는 전문가에게 일본어교육지원과 해외 일본어학습의 계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는 2주간부터 8개월의 기간으로 매년 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약 450명의 일본어학습자가 참가하고 있다.

㉠ 문화·학술전문가 일본어연수

특정 전문업무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연구자, 대학원생, 도서관사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원 등)의 일본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전문가의 특색을 배려한 커리큘럼에 따라 실용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는 다음의 <표-18>와 같다.⁵⁴⁾

<표-18> 문화·학술전문가 일본어연수 연수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연수기간 ⁵⁵⁾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2개월 코스	34명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일본어능력에 초점을 두고 “말하기”, “듣기”, “읽기”의 각 능력 향상을 도모함. - 특정 전문업무 및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자의 일본어 능력에 대응한 선택 수업을 실시

54) http://www.jpfa.go.jp/j/kansai/programs/j_ca.html

55) 2개월 코스와 6개월 코스의 차이점: 2개월 코스는 일반적인 일본어능력을 양성하는 데 있는 반면에, 6개월 코스는 일반적인 일본어능력에서부터 전문적인 활동에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연수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6개월 코스	16명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연수 여행 등 프로그램에 포함 - 전문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정보수집, 발신 및 관계자와의 교류 등에 필요한 일본어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무관련 기관과 연구기관에의 방문, 전문가와의 면담 등 연구실천을 통하여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참가자는 명확한 연구테마 또는 활동테마에 근간하며 센터 외에서의 전문관련 활동을 기획입안하고 실행하는 자립성·적극성이 요구됨 - 일본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 연수 여행, 연수참가자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기관 방문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됨

필요한 일본어 스킬을 양성하여 전문적 활동을 일본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코스임. http://www.jpf.go.jp/j/kansai/pdf/ca_concept_ja.pdf 참조.

㉞ 외교관 일본어연수

외교관 일본어연수는 국제교류기금이 일본 외무성의 협력을 얻어 신진 외교관을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어 및 일본 사정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연수를 통하여 일본과 다른 국가와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친선을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수는 공모가 아니고, 재외 공관이 관서국제센터의 의뢰에 따라 각국·지역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참가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다.

외교관 일본어연수 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참가방법은 다음의 <표-19>과 같다.

<표-19> 외교관 일본어연수 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참가방법

연수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 지역	연수개요	참가방법
8개월	25명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를 목적으로 일본어집중연수를 실시함⁵⁶⁾ - 일본어학습과 일본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의·방문·시찰 여행·교류 등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일본국 외무성과 대상국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발 (개인 참가는 불가능)

56) 구체적인 연수 흐름 및 연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http://www.jpf.go.jp/j/kansai/pdf/j_dlg1.pdf 참조

◎ 공무원 일본어연수

공무원 일본어연수는 제외국의 공적 기관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일본어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장기집중 연수이다. 이 연수는 공모가 아니고, 재외 공관이 관서국제센터의 의뢰에 따라 각국·지역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참가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다.

공무원 일본어연수 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참가 방법은 다음의 <표-20>과 같다.

<표-20> 공무원 일본어연수 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참가방법

연수기간	모집인원	모집대상지역	연수개요	참가방법
8개월	5명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학습이 없는 자 또는 초급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공무원(다만, 외교관 또는 외무성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으로 직무상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일본어학습과 일본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의·방문·시찰여행·교류 등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⁵⁷⁾ 	일본국 외무성과 대상국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발(개인 참가는 불가능)

57) 구체적인 연수 흐름 및 연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http://www.jpj.go.jp/j/kansai/pdf/j_

㉔ 일본어 학습자 방일연수

i) 각국 성적우수자

해외의 일본어 학습 장려 사업의 하나로 해외 각국의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하여 우수한 성적의 학습자를 2주간 일본에 초빙 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 및 연수 여행 등을 통해서 일본어 및 일본 사회·문화에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⁵⁸⁾

ii) 대학생

해외 대학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대학생을 그룹으로 일본에 초빙하여 관서국제센터에서 일본어 집중 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의 특정 대학과 관서국제센터와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며, 연수 기간은 6주간 정도이다.

이 연수의 목표는 현재까지 학습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을 체험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향후 일본어 학습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수목표를 위한 연수내용으로서는 다음의 <표-21>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⁵⁹⁾

<표-21> 일본어 학습자(대학생) 방일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내용

프로그램	연수내용
일본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프로젝트와 발표 - 일본이해를 위한 토론 - 발표 및 회화 등

dgl.pdf 참조

58)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aw.html

59)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sg.html

프로그램	연수내용
교류 프로그램	- 일본 대학생과의 교류 -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사회체험 프로그램	- 오사카 오리엔트링 - 홈스테이 - 연수여행(동경, 교토, 히로시마 등)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 서도, 합기도, 전통예능감상 등
일본문화 및 사회 이해를 위한 가이드	- 동경·교토·히로시마·오사카 가이드 - 전통예능가이드 등

iii) 고등학생

해외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습득하고, 우수한 성적의 학생을 2주간 일본에 초빙 하여 강의 및 연수 여행 등을 통해서 일본어 및 일본 문화·사회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모가 아니라, 국제교류기금의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이 관서국제센터에 의뢰 하며 각 국가·지역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의해 참가후보를 선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2>와 같다.⁶⁰⁾

<표-22> 일본어 학습자(고등학생) 방일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내용

프로그램	연수내용
일본어·일본사정 교실	- 청소년 사정과 청소년 용어 - 지리·역사 가이드

60) http://www.jpj.go.jp/j/kansai/programs/j_haw.html

프로그램	연수내용
	- 일본 노래, 회화, 발표회 준비 등
연수여행·교류프로 그램	- 동경·교토·히로시마여행 - 고등학교방문 - 홈스테이 - 오사카 오리엔트링
문화체험 프로그램	- 서도, 합기도, 차도, 화도 등

㉔ 그 밖의 일본어 연수

i) 아시아 유스 펠로우십 고등교육 장학금 방일연수

아시아 유스 펠로우십 고등교육 장학금 방일연수는 ASEAN 제국 및 방글라데시의 11개국으로부터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7개월간의 일본어, 일본 문화연수이다. 참가자의 전문분야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등 다양하다.

이 연수는 일본에서의 일상생활과 대학원에서의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연구테마에 대한 기초적인 발표능력 습득을 목표로하고 있다. 연수 중에는 대학원 진학의 준비로서 연구실 방문, 일본 유학 중인 선배와의 면담 등 서포터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 문화사회 체험활동, 교류회, 강의 등의 프로그램⁶¹⁾이 마련되어 있다.⁶²⁾

61) 연수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해서는 http://www.jpf.go.jp/j/kansai/pdf/ayf_nagare_j.pdf 참조

62)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ayf.html

ii) 수탁연수

국제교류기금의 관서국제센터에서는 일본에서의 유익한 일본어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개개의 기관에 대해 수탁을 받아 일본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수의 목적은 일본인과 다양한 교류활동과 일본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국에서 습득한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일본어를 표현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또한 연수여행과 홈스테이,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에 있다.⁶³⁾

③ 조성·지원사업

일본과 여러 국가의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대일 이해·상호 이해의 증진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해외의 일본어 교사 등에 대한 연수, 해외 일본어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조성, 일본어 교재의 기증 등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해외의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성·지원사업으로서는 해외의 비영리 일본어교육기관에 강사에 대한 사례금 일부를 조성하는 “해외 일본어 강좌 현지 강사 사례금 조성”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변론대회에 상품 등 일부를 조성하는 “해외 일본어 변론대회 조성”, 해외의 일본어 강사 등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실시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해외 일본어교육 네트워크 형성 조성”,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현지에서 입수 곤란한 일본어 교재를 기증하는 “일본어 교재기증”,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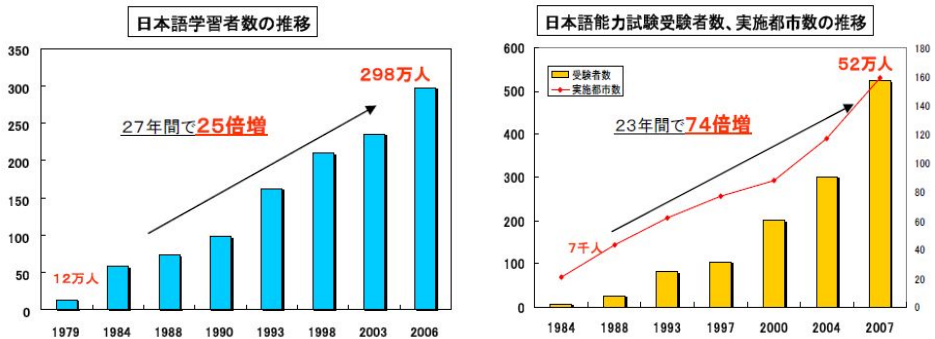
63) http://www.jpj.go.jp/j/kansai/programs/j_info/index.html

육용 교재 간행에 대해 출판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일본어 교재 제작조성”을 실시하고 있다.⁶⁴⁾

④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능력시험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아니하는 자의 일본어능력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시험으로서 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교육협회(현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1984년에 실시하였다. 시험 실시초기에는 수험자 수가 전 세계에서 7,000명 정도였으나, 최근 시험목적이 실력측정 뿐만 아니라 취직, 승진, 자격인정 등 그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의 수험자수는 전 세계에서 약 7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시험 실시부터 25년 이상 발전해 온 일본어교육학과 테스트이론의 연구결과와 현재까지 축적된 시험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본어능력시험의 내용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일본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국제교류기금, 해외 일본어교육기관 조사 · 2006년=개요⁶⁵⁾

64) 각각의 조성 ·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http://www.jpff.go.jp/j/japanese/support/index.html> 참조

65) <http://www.jpff.go.jp/j/japanese/survey/result/index.html>, <http://www.jpff.go.jp/j/japanese/survey/result/dl/2006-1.pdf>.

2) 일본어교육 스탠더드 사업

국제교류기금은 2010년 3월 일본어교육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도달 정도의 합리적 설계부터 평가까지 일본어학습의 체계화, 표준화, 공통화를 위하여 ‘JF 스탠더드 2010’을 발표했다.

‘JF 스탠더드 2010’은 ‘일본어를 사용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일본어의 숙달도의 레벨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일본어교육 즉,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도/ 가르치고 있어도 지금 자신이 배우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레벨이 어디에 도달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숙달도를 평가하여 언어적·문장 체험을 기록하고 과제 수행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을 육성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⁶⁾

(4) 일본어교육 활성화 방안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어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일본브랜드전략과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무성과는 제외국의 일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세계 140개 국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국제예술전본시 실시, 문화청의 문화교류사, 문부과학성의 청년예술가파견사업, 농림수산성의 일식 해외보급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6) <http://jfstandard.jp/top/ja/render.do>

그 밖에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사업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NTO(국제관광진흥기구), JICA(국제협력기구) 등과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II. 중국 공자학원

1. 설립 배경 및 근거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폐쇄적이던 중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2년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선언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연 10% 전후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다. 중국은 2002년 말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점차 강화해왔다. 또한 동남아시아 각국과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등 정치, 외교, 경제 방면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문화 및 교육 외교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의 설립과 그에 따른 중국어, 중국문화의 적극적 보급을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1987년 급증하는 유학생의 지도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으로 ‘국가 대외 중국어 교육 지도소조’를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외 중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다만,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중국어 교육을 실시했다.⁶⁷⁾

67) 권재욱,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통합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52쪽.

1993년 중국 중앙국무원은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강요」를 통해 ‘대외 중국어 교육 강화’ 이론은 명확하게 제시했고, ‘대외한어(對外漢語)’라는 명칭의 과목을 과목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했다.⁶⁸⁾

중국의 중국어 보급 정책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종래의 유학생에 대한 중국어 교육 중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국어 학습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 하에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현지 외국인에 대한 중국어 교육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⁶⁹⁾ 특히 WTO 가입 이후인 2006년에는 ‘국가 대외 중국어 교육 지도소조’를 ‘국가 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국가 대외 중국어 국제 보급 지도팀)’로 변경하고 팀장을 종래의 교육부장에서 국무위원으로 승격시켰으며, 구성원도 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 정부기관 간부 11명을 포함한 17명으로 증원했다. 이처럼 국무위원이 팀장을 맡고 각 부처의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부터 중국정부가 국외 중국어 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는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인스티투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투트 등 외국의 자국어 보급 사업 기구를 모델로 해외에 중국어 보급 기구 설립을 준비했다. 2004년 3월 국무위원인 진지립(陳至立)은 이 해외 중국어 보급 기구의 공식 명칭으로 중국 유교문화의 대표적 인물인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⁷⁰⁾ 다만, 공자학원은

68) 권재욱, 앞의 논문, 52쪽.

69) 정윤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 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중국연구 제47권,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 中國研究所, 2009, 27-28쪽.

70) 정윤철, 앞의 논문, 29쪽.

공자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중국 외의 현지 교육기관으로서 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 국민의 중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각국의 중국어 학습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¹⁾

2. 설치 현황

공자학원총부는 법인의 지위를 갖고 베이징에 소재해 있다.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21일 세계 최초로 한국(서울)에 처음 개설된 이래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4년에 2010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2년만인 2006년에 달성되었고, 2010년까지 500개소 개설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2009년 10월 현재 공자학원은 87개국에 282개소가 설치되었다. 해외에 설치하는 공자학원의 명칭은 중국 ‘○○공자학원’으로 표시하고, 영문명칭은 ‘Confucius Institute in ○○’으로 표시한다.

3. 설치 및 운영 방식

공자학원의 설치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중국정부에 의한 직영방식, 합작방식, 독립(계약·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²⁾

i) 직영방식은 학사, 교원, 교재 등 전부를 중국정부가 정하고 공자학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 일체를 중국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ii) 합작방식은 외국 대학 등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공자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71) 노윤환, 앞의 논문, 27쪽 참조.

72) 권재욱, 앞의 논문, 53쪽.

iii) 독립방식은 중국정부가 공자학원의 경영권을 외국기관 등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4. 주요 사업 내용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 콘텐츠 지원, 중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 중국어 교재 개발 및 출판,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설립 당시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을 그 주된 사업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각 학원마다 중국어 교육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비즈니스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비즈니스 공자학원’, 중국 의학을 교육하는 ‘한방 공자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종래의 대면식 수업이 아닌 라디오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라디오 공자학원’, ‘인터넷 공자학원’ 등 다양한 학습방식을 채용한 공자학원이 개설되고 있다.⁷³⁾

중국은 2003년부터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재를 개발해왔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학습교재 ‘장성한어(長城漢語)’ 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어 학습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처음 중국어를 접하는 12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승풍한어(乘風漢語)’를 개발하여 2008년 현재 미국 116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공자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재의 낮은 질과 전문교원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교원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73) 권재욱, 앞의 논문, 54쪽 참조.

중국정부는 중국 내 중국어 관련 전공 재학자를 ‘자원봉사 교사’로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인, 해외 거주 유학생 화교 등을 자원봉사 교사로 모집하는 등 전문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중국어 교원을 국비로 파견하거나 해외 중국어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원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⁷⁴⁾

이 외에 ‘세계 대학생 중국어 콘테스트’와 ‘세계 중국어 대회’⁷⁵⁾ 등 중국어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⁷⁶⁾

III. 독일 괴테-인스티투트

1. 설립 근거

괴테-인스티투트의 독일공식명칭은 “Goethe-Institut e.V.”이며(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1조 제1항), 독일아카데미(DA, die Deutsche Akademie)의 후속기관으로서 1951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괴테-인스티투트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있는 독일어 교사의 독일 내 연수 또는 교육을 주업무로 했다.⁷⁷⁾

괴테-인스티투트의 법적 성격은 등록단체(e.V., Vereinsregister)로서 공법인이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1조 제4항). 본부는 뮌헨(München)에 소재해 있다. 독일에서의 공법상 등록단체의 설립 및 금지단체에 관한 재산 몰수 등에 관한 규율은 「공단체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에 따른다.

74) 권재욱, 앞의 논문, 54쪽 참조.

75) 세계 중국어 대회는 중국어 교육의 국외 보급에 관한 중국정부의 시책과 공자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대외이다. 권재욱, 앞의 논문, 55쪽 각주 50 참조.

76) 권재욱, 앞의 논문, 55쪽 참조.

77) <http://www.goethe.de/uun/org/ges/deindex.htm>.

그런데 「공단체의 규율에 관한 법률」은 공법상 등록단체의 설립에 있어서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립은 원칙적으로 자유다(제1조). 따라서 괴테-인스티투트의 설치에 관한 개별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공단체의 규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⁸⁾

괴테-인스티투트의 내부 규정으로 정관(Satzung, 현행 정관으로서 2005년 6월 24일자 기준)이 존재한다. 괴테-인스티투트 정관은 괴테-인스티투트의 목적, 위원에 관한 문제, 기관(위원 총회, 의장단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대외문화정책 및 독일어교육정책과 관련한 연방정부 즉, 연방의 무부와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총괄협약(Rahmenvertrag)이다. 총괄협약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계약의 일종으로서 공법상의 일반원칙 및 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⁷⁹⁾

괴테-인스티투트의 활동은 철저히 공익적이어야 하며, 사적 목적 또는 괴테-인스티투트 스스로를 위한 이기적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즉 괴테-인스티투트의 활동 및 재원은 정관의 제 규정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 또는 사용되어야 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2조 제2항).

괴테-인스티투트의 위원(Mitglieder)은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괴테-인스티투트의 재원에 의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괴테-인스티투트의 비이기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2조 제3항).

78) 강주영, 독일 괴테-인스티투트(das Goethe-Institut)에 관한 법제적 고찰,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53쪽.

79) 강주영, 앞의 논문, 53쪽.

또한 괴테-인스티투트의 활동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사례 등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관상의 규정을 통해, 괴테-인스티투트의 재원이 특정 개인에게 불합리한 혜택을 줄 여지를 차단하여 괴테-인스티투트 활동의 공익성 보장하고 있다.⁸⁰⁾

2. 연 혁

괴테-인스티투트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3>과 같다.

<표-23> 괴테-인스티투트의 연혁⁸¹⁾

연 도	주요 내용
1953년	- 첫 번째 어학과정이 Bad Reichenhall에서 개설됨 - 이어 Murnau와 Kochel에도 괴테-인스티투트의 어학코스 강좌가 개설됨
1953년 ~1955년	이전의 독일아카데미의 외국강사진들을 승계함
1959년~ 1960년	연방외무부의 문화부서 부서장인 Dieter Sattler의 주도 하에 재외독일문화기구들이 점진적으로 괴테-인스티투트에 부속 및 병합됨 ⁸²⁾
1970년	연방외무부의 위탁에 따라 Ralf Dahrendorf는 “대외문화정책을 위한 원칙(Leitsätze für die auswärtige Kulturpolitik)”을 발전시킴

80) 강주영, 앞의 논문, 54쪽.

81) <http://www.goethe.de/uun/org/ges/deindex.htm>.

82)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재외국기구의 편제조정은 독일의 대외 문화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상징한다. <http://www.goethe.de/uun/org/ges/deindex.htm>.

연 도	주요 내용
1976년	연방외무부와 총괄협약(Rahmenvertrag)을 체결하였고, 이 총괄협약 내에서의 괴테-인스티투트의 지위는 독립적 문화기관으로 규정됨
2001년	인터 나치온(Inter Nation)과 합병
2004년	서방 문화기관으로서 최초로 북한의 평양에 정보센터를 개설함
2005년	스페인의 Prinz-von-Asturien-Preis를 수상함

출처 : <http://www.goethe.de/uun/org/ges/deindex.htm> 재구성

3. 주요 목표 및 임무

괴테-인스티투트는 연방독일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서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독일연방정부의 위탁에 의해 등록단체인 괴테-인스티투트(das Goethe-Institut e.V.)는 해외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괴테-인스티투트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⁸³⁾

- i) 외국에서의 독일어 지식의 장려,
- ii) 국제적 문화협력증진,
- iii) 문화적·공동체적 및 정치적 삶에 관한 정보를 통한 독일의 다양한 모습을 전파(Vermittlung).

괴테-인스티투트는 독일어, 독일 문화 및 독일 사회에 관한 접근의 길을 열고, 국제적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83) <http://www.goethe.de/uun/org/deindex.htm>.

또한 괴테-인스티투트는 문화적, 공동체적 그리고 정치적 삶에 대한 정보를 통해 독일의 파노라마적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괴테-인스티투트는 다수의 괴테-인스티투트들과 괴테센터(Goethe-Zentren), 문화공동체(Kulturgesellschaften), 독일서적열람시설(Lesesälen), 평가 및 어학연수센터(Prüfungs- und Sprachlernzentren)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50여년 이상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문화 및 독일어교육정책의 핵심적 임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4. 조직 현황

(1) 위 원

1) 위원의 구성

괴테-인스티투트는 정위원(ordentliche Mitgliedern), 임시위원(außerordentliche Mitgliedern), 당연직위원(Mitgliedern kraft Amtes)으로 구성되며(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3조 제1항), 정위원의 총수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각 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표-24>과 같다.

<표-24> 괴테-인스티투트 위원 구성

정위원(ordentliche Mitglieder)	임시위원(außerordentliche Mitglieder)	당연직위원(Mitglieder kraft Am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연방공화국 - 의장단 및 委員總會의 제안에 따라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연방의회 각 원내교섭단체(Fraktion)에서 1회기 동안 임명한 1명의 의원 - 각 주정부의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위원은 문화원장과 정관 제7조 제3항 제2호상의 의장단원과 정관 제7조 제3항 제4호 상의

정위원(ordentliche Mitglieder)	임시위원(außerordentliche Mitglieder)	당연직위원(Mitglieder kraft Amtes)
상이한 문화적, 학문적 그리고 공동체적 생활영역 출신의 인사	로서 연방독일공화국 각 州의 문화장관의 상시적 회의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2인	의장단원으로서 그 임기기간 동안이며, 의장단원의 정위원으로서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됨

독일연방공화국 그 자체가 정위원이 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임시위원과 당연직 위원은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위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3조 제6항).

2) 위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정위원은 정위원으로서의 연방독일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매년 7월 15일과 위원총회가 정위원의 임기를 정한 시점에 그 자격이 시작된다(같은 조 제7항). 정위원으로서의 연방독일공화국을 제외하고 정위원의 자격은 사퇴를 위한 서면신청 또는 5년의 임기 종료, 제명, 사망에 의해 상실된다(같은 조 제8항).

임시위원은 위원직의 근거가 되었던 의석의 상실, 파견을 위한 그 밖의 조건들의 상실, 사퇴를 위한 서면신청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자격이 상실된다(같은 조 제9항).

3) 위원의 제명

위원은 품위의 손상, 문화원 이익의 침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유에 의해 위원총회의 의결로써 제명될 수 있다. 의결이 있기 전에

해당 위원에 대한 청문이 실시되어야 하며, 제명결정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명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

(2) 기 관

괴테-인스티투트는 위원총회(die Mitgliederversammlung), 의장단(das Präsidium) 및 이사회(der Vorstand)로 구성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5조).

1) 위원총회

① 위원총회의 임무

괴테-인스티투트의 위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6조 제1항 각 호).

- i) 괴테-인스티투트업무의 정책적 질문에 대한 자문과 권고,
- ii) 정관개정의 결정, 연방독일공화국과 괴테-인스티투트간의 총괄협약(Rahmenvertrag)의 체결·변경 및 해지에 대한 동의,
- iii) 의장단의 연례보고에 대한 접수와 자문,
- iv) 이사회회의 연례의결과 연례보고에 대한 접수,
- v) 이사회회의 면책에 관한 결정,
- vi) 자문기구의 보고에 대한 접수,
- vii) 의장단의 제안과 위원총회의 제안에 의한 위원의 선출 및 입회 그리고 위원의 제명,

- viii) 의장단원의 선출,
- ix) 위원회비의 결정.
- x) 회계감사자의 선출

② 위원총회의 소집

위원총회는 정기 위원총회와 임시 위원총회로 나뉜다. 정기 위원총회는 1년에 두 번 개최된다.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이 정기 위원총회를 소집하며, 위원들에게는 최소 6주 전에 문서로써 의사일정을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정기 위원총회에서 “의장단의 연례보고에 대한 접수와 자문, 이사회의 연례의결과 연례보고에 대한 접수, 이사회의 면책에 관한 결정”의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 6조 제2항). 임시위원총회는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7명 이상의 위원들이 목적 및 이유를 명시하여 문서로써 신청할 경우 문화원장은 임시위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 위원총회의 성수

위원 1/3이 참석했을 때는 회의성수가 되며, 회의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문화원장은 즉시 새로운 위원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의 위원총회는 회의 참가인원을 막론하고 회의성수가 된 것으로 본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6조 제7항).

④ 위원총회의 의결과 이의제기

위원총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한다. 위원총회의 결정이 협약상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즉, 결정이 국제문화정책 또는 공공사업 영역에서 지침, 계획 그리고 조정(die Koordination)에 반할 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표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Einspruch)는 결정이 이루어진 회의에서 논증되어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독일공화국의 대표자가 즉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정은 보류된다. 최종적 입장은 1개월 내에 원장에게 문서로써 표명해야 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6조 제8항).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3/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9항).

2) 의장단(Präsidium)

① 의장단의 업무

의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7조 제1항).

- i) 이사회의 소집⁸⁴⁾ 및 그 활동의 감독, 이사회에 대한 법정 및 법정 외 대표,
- ii) 괴테-인스티투트 업무를 위한 지침 제정,
- iii) 이사회와 의장단이 준비하고 위원총회의 심의를 마친 괴테-인스티투트의 전체기구에 대한 장기적 개념계획에 대한 결정,
- iv) 이사회가 작성한 경제·재정 및 투자계획초안에 대한 결정,
- v) 연말결산에 대한 접수와 검토,
- vi) 이사회의 연간보고의 검토,

84) 이사회의 소집에는 연방외무부의 동기가 필요하다.

- vii) 피테-인스티투트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정과 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 ㉠ 피테-인스티투트의 기구 설립과 폐지,
 - ㉡ 피테-인스티투트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관접수와 기존의 본질적인 업무의 종결 및 변경,
 - ㉢ 운영기구에 대한 본질적 조치,
 - ㉣ 임금협약의 체결,
 - ㉤ 토지의 취득, 양도 그리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과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양도 및 제한,
 - ㉥ 피테-인스티투트 재산 중 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승인 또는 그 밖의 물적 권리에 대한 승인,
 - ㉦ 신용차입에 대한 승인 등,
- viii) 피테-인스티투트 직무규정의 제정,
- ix) 위원총회의 준비, 신규위원의 가입에 대한 제안.

협약사무에서 의장단의 결정이 지침, 사업계획 또는 대외 문화정책 및 공공사업의 조정에 반할 때 연방외무부의 대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② 의장단의 구성 및 회장의 업무

의장단은 피테-인스티투트 원장, 위원총회에서 선출한 4년 임기의 6명의 의장단원, 연방외무부와 연방재정부의 대표자 각 1인, 3인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다(피테-인스티투트 정관 제7조 제3항).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은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같은 조 제6항).

- i) 이사회와 법률적 대표권한에도 불구하고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은 괴테-인스티투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ii)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은 의장단을 소집하며 의장단회의를 주재한다.
- iii) 회기 중 의장단을 대표한다.
- iv) 의장단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긴급히 결정해야 할 경우 원장은 의장단을 대신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은 즉시 의장단에 보고해야 한다.
- v)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은 이사회 및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의 회의

의장단은 참석한 의장단의 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원장이 결정하며 의장단의 회의는 최소한 선출된 네 명의 회원이 참석함으로써 성수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7조 제7항). 회의가 의장단원의 개인적 사항을 다룰 경우 해당 의장단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의장단회의는 1년에 최소 4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3) 이사회

①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괴테-인스티투트 사업을 관장하며 그 업무와 권한에 관한 개별적 사항은 직무규정에서 정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8조

제1항). 그러나 협약사무의 경우 중요한 정책적 원인 또는 근거가 있을 경우, 연방외무부는 이사회에 대해 특정 정책적 수단 또는 그 시행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무부의 요청에 대해 이사회는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즉시 의장단의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무부의 요청으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외무부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5항).

②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최소 2인 이상 최대 3인까지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모든 이사는 독일민법 제26조상의 이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소송상, 소송외적으로 괴테-인스티투트를 대표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8조 제2항). 이사가 임기 전에 사직하면 당해 이사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괴테-인스티투트 원장이 선출한 임시이사가 그 직을 대신한다(같은 조 제3항).

(4) 재산귀속

위원이 괴테-인스티투트에서 해직되거나 문화원이 폐원 또는 해산한 경우 그는 현금 및 현물출자를 반환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금 및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괴테-인스티투트의 재원으로 획득한 재산과 연방예산법(BHO) 제23조⁸⁵⁾, 제44조⁸⁶⁾ 및 독일연방행정절차법

85) BHO 제23조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행정청 외의 기관에 대해 지출하거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그 기관이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 및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와 관심은 국고보조금 없이는 충분히 또는 전혀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한 한다”

86) BHO 제44조 제1항 “보조금은 이 법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이 때 보조금지급의 목적에 부합한 사용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그 외에도 담당 행정청 또는 그 수탁자의 감사권이 규정되어야 한다.”

(VwVfG) 제49조87), 제49a조88)에 따른 보조금도 포함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9조 제1항). 괴테-인스티투트가 폐원·해산되거나

87) VwVfG 제49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① 적법하게 이루어진 비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철회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장래를 향해 철회될 수 있다.

②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익적 행정행위는 아래의 경우에서만 장래를 향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1. 철회가 법규정으로 허용되거나 행정행위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2. 행정행위에 부담적 부관(Auflage)이 있고, 수익자가 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행정청이 사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익이 침해될 경우
4. 수익자가 아직 자기의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거나 수익적 급부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행정청이 사후에 변경된 법규정을 원인으로 행정행위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익이 침해될 경우
5. 중대한 공익상의 피해를 막거나 배제하고자 할 경우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회적이거나 반복적인 금전급부 또는 구분가능한 물적 급부인 적법한 행정행위는 아래의 경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과거를 향해 취소될 수 있다.

1. 급부가 행정행위가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급부 후 즉시 또는 더 이상 행정행위가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2. 행정행위에 부담적 부관(Auflage)이 있고, 수익자가 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행정청이 다른 시점을 정하지 않은 이상, 철회가 효력 있게 되는 시점에서 철회된 행정행위가 효력 없게 된다.

⑥ 제2항 제3호에서 제5호의 사안에서 수익적 행정행위가 철회되면, 재산피해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은 보상해야 한다“

88) 독일행정절차법(VwVfG) 제49a조 (반환, 이자) “① 행정행위가 과거효를 가지고 취소·철회되거나 해제조건이 실현되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되어야 할 급부는 문서인 행정행위로서 확정되어야 한다.

② 이자를 제외한 반환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되는 정황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득의 손실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는 행정행위가 실효되는 때부터 연 5%의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되는 정황을 주장할 수 없어서 행정청이 지정한 기한 내에 금액을 반환한다면, 이자지급청구의 주장은 배제될 수 있다.

④ 지출 후 급부된 금액이 특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제3조 제1문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의 시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 괴테-인스티투트의 재산은 학문과 연구의 장려, 교육과 양성, 문화와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 또는 그 밖의 세제혜택을 받는 단체로 이관된다(같은 조 제2항). 괴테-인스티투트 재산의 장래적 사용에 대한 결정은 재정행정청(Finanzamt)의 동의를 받은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5) 해 산

괴테-인스티투트는 위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한다. 괴테-인스티투트 해산을 위한 위원총회는 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6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의장단에 의해 총회 2개월 전에 문서로써 소집되어야 한다. 이 소집은 이사회가 괴테-인스티투트장의 권유에 의해, 회의일정이 적시된 등기 우편이 회원에 송부되었음을 위원총회에서 확인했을 때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10조 제1항).

위원총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성수된다. 만약 위원총회가 성수되지 못하면 1개월 이내에 제2차 위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늦어도 제1차 위원총회가 개최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차 위원총회는 출석위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문화원해산의 의결을 위한 총회성수가 된다(같은 조 제3항). 해산의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석위원 3/4의 찬성을 요한다(같은 조 제4항).

(6) 총괄협약(Rahmenvertrag)과의 관계

연방독일공화국과 괴테-인스티투트와의 총괄협약은 이 정관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괴테-인스티투트 정관 제12조).

5. 연방외무부의 괴테-인스티투트에 대한 업무위탁

(1) 업무위탁의 근거

연방외무부는 괴테-인스티투트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 독일연방국가의 대외 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괴테-인스티투트에 위탁하고 있다. 총괄협약 제1조 제1항은 “연방외무부는 그의 대외문화정책에 관한 헌법적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괴테-인스티투트에 위탁한다. 이러한 사무를 ‘협약사무’(Vertragsaufgabe)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협약사무

1) 내 용

연방외무부와 괴테-인스티투트의 총괄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위탁되는 협약사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총괄협약 제1조 각 호).

- i) 외국에서의 독일어지식의 장려,
- ii) 국제적 문화적 협력의 증진,
- iii) 문화적, 공동체적 및 정치적 삶에 대한 정보를 통해 독일의 다양한 모습의 전달 등.

이 세 가지 부문에서의 협약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총괄협약 제1조 제1호에 적시되어 있으며, 괴테-인스티투트 정관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협약사무는 독일연방공화국

및 외국에 소재한 다수의 괴테-인스티투트 소속의 문화기관에서 수행된다.⁸⁹⁾

이와 같은 사무영역의 수행자는 주로 괴테-인스티투트가 되지만 연방외무부는 제3자에 대해서 같은 영역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 있고, 외국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도 이 총괄협약과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다(총괄협약 제1조 제2항). 물론 협약사무 외의 사무도 괴테-인스티투트에 위탁될 수 있으며 종류와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괴테-인스티투트는 그 정관 제2조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협약사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지침(Richtlinie), 전체계획과 지역계획(Gesamt- und Regionalplanung) 및 연방외무부와와의 조정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총괄협약 제1조 제3항).

2) 업무협조

협약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연방외무부와 괴테-인스티투트는 긴밀히 협력할 의무가 있다(총괄협약 제2조 제1항). 연방외무부는 괴테-인스티투트의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고, 외무부의 의견개진, 결정, 이의 및 긴급사항에 대해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외무부는 각종 회의와 심의회에 괴테-인스티투트를 참석시킬 수 있다(총괄협약 제2조 제2항).

괴테-인스티투트는 연례보고서 등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외무부와와의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사항과 그 밖의 긴급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총괄협약 제2조 제3항).

89) 강주영, 앞의 논문, 62쪽.

한편 연방외무부와 괴테-인스티투트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 정례적 간담회에서는 협약사무의 계획 및 중앙지부의 프로그램 및 그 시행에 대한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총괄협약 제3조 제1항).

협약에 따라 괴테-인스티투트는 재외 문화시설의 기관장을 위해 지역회의와 업무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서로간의 경험들이 교류되고, 장래의 업무를 위한 지침과 개최프로그램이 조정된다. 괴테-인스티투트는 모든 지역회의와 관련된 소식들을 연방외무부와 관할 재외주재소에 보내야 한다(총괄협약 제3조 제3항, 제4항).

(3) 재외 문화시설

1) 괴테-인스티투트 소속의 재외 문화시설(Kulturinstitute)과 연방외무부의 재외주재소(Auslandsvertretung)

괴테-인스티투트 소속의 재외 문화시설을 설치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괴테-인스티투트는 재외 문화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대한 외무부의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총괄협약 제4조 제1항). 외무부의 재외주재소 업무 중 대외문화정책과 공적 업무는 괴테-인스티투트와의 총괄협약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주재소와 괴테-인스티투트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총괄협약의 제2조 제1항, 즉 업무협조와 관련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사업의 영역에서 양 기관에 대해 유의미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예컨대, 경과·사건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등)에 대해 상호 보고 또는 통보할 의무가 있다(총괄협약 제4조 제6항).

또한 재외주재소와 문화원의 재외 문화시설의 기관장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간

담회 또는 업무협조를 통한 의견개진의 경우 특히 문화시설의 장은 재외주재소장의 권고 또는 제안을 참고해야 한다(총괄협약 제4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2) 회계처리

괴테-인스티투트 소속의 재외 문화시설의 회계 및 예산처리는 괴테-인스티투트와 연방외무부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실무 핸드북 제1편(재외 문화시설의 재정처리편)이 적용된다(총괄협약 제4조 제11항).

(4) 재 정

1) 예산의 보고

괴테-인스티투트는 매년 연방예산계획의 형식과 원칙에 따라 다음 해 예산안을 작성하여 연방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은 기구구성계획과 정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총괄협약 제5조).

2) 연방 보조금

괴테-인스티투트는 협약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받는데, 이 재원의 액수는 외무부가 예산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년 보조금통지를 통해 결정된다. 정원계획은 연방의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 후에 외무부가 괴테-인스티투트에 통지한다. 이와 같은 정원계획에 벗어나서 괴테-인스티투트가 정원을 조정하려면 외무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총괄협약 제6조 제1항).

연방보조금사용원칙(Grundsätze für die Verwendung der Zuwendungen des Bundes)과 보조금사용입증 및 심사원칙(일반경영원칙, allgemeine

Bewirtschaftungsgrundsätze) 및 연방외무부 연방보조금지급보장 특별 원칙(besonderen Bewirtschaftungsgrundsätze des Auswärtigen Amtes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des Bundes)은 총괄협약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다. 외무부는 특별운영원칙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괴테-인스티투트에 통보하여야 한다(총괄협약 제6조 제2항).

괴테-인스티투트는 외무부가 교부한 재원의 범위에서만 협약사무의 수행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진다(총괄협약 제6조 제3항). 괴테-인스티투트가 사적 부문에서 취득한 제3의 재원(Drittmittel) 또는 괴테-인스티투트가 설립한 재단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협약사무의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괴테-인스티투트는 다년간에 걸친 재정지출이나 임대계약의 연장 계약체결 등의 경우 외무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외무부가 승인한 재원은 “연방행정 외에서의 보조금수령자와 연방재원관리자에 대한 연방재원 지출지침(Richtlinie zur Auszahlung von Bundesmitteln an Zuwendungsempfänger und an Bundesmittel verwaltende Stellen außerhalb der Bundesverwaltung)”에 따라 청구절차를 통해 지급된다(총괄협약 제6조 제6항).

괴테-인스티투트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재원을 지출할 경우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손실에 대한 입장표명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3) 부동산에 대한 외무부의 전속적 권한

부동산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의 취득, 부담 및 양도 등은 외무부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괴테-인스티투트에 위탁된 외국에 소재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산권의 경우 괴테-인스티투트는 무상으로 수익할 수 있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총괄협약 제6조 제8항).

4) 동 산

외무부는 괴테-인스티투트의 본부 및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시설이 사용하는 동산에 대해 연간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괴테-인스티투트 본부가 재외 문화시설의 재산목록을 관리·감독한다(총괄협약 제6조 제9항).

5) 결 산

괴테-인스티투트는 매년의 회계연도가 지난 뒤 늦어도 다음 해 9월 1일까지 활동보고서(사항보고)와 회계검사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매 분기와 연말에 재정계획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계수화된 수입·지출의 내역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총괄협약 제7조 제1항). 외무부는 회계처리를 위한 장부기입방식 및 종류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 임 금

연방 내에 거주하거나 재외 문화시설에 파견된 괴테-인스티투트의 직원은 임금협약에 따라 그 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비파견 직원으로서 재외 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자(즉, 현지인)는 외무부의 재외주재소와의 협의 하에 그 지역의 일반적 급여수준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임금협상은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 외무부의 요청으로 괴테-인스티투트의 전권에 따라 내무부가 행한다. 외무부와 괴테-인스티투트는 임금협상과 그 준비에 참여하며, 임금협약의 체결에는 괴테-인스티투트의 동의가 필요하다(총괄협약 제8조 제2항. 연방공

무원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위한 초과 또는 특별급여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외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총괄협약 제8조 제4항).

(5) 인사조치

파견된 괴테-인스티투트의 직원이 독일의 국위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의 행동이 독일연방공화국과 해당국 및 제3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부담을 끼칠 경우에 외무부는 해당 직원의 즉각적 면직·정직을 요구할 수 있다. 괴테-인스티투트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청문을 한 뒤 외무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한다(총괄협약 제9조 제1항).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괴테-인스티투트는 외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외국에 파견된 직원에게 필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에 직면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외무부의 각 재외주재소는 파견된 재외 문화시설의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지시권한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탈출에 관한 명령을 포함한다(총괄협약 제10조).

(6) 협약의 효력

총괄협약의 효력은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도 미친다. 총괄협약을 해지하려면 1년의 기한을 두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지해야 한다. 외무부의 이의제기에 대해 괴테-인스티투트가 정관개정을 통해 불복할 경우, 외무부가 심사 뒤 2주 내에 문화원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자기의 이의제기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총괄협약은 연말을 기점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총괄협약 제11조 제1항).

총괄협약을 해지하면 괴테-인스티투트는 협약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모든 협약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해야 한다. 연방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중 불용액은 외무부에 반환해야 한다. 연방의 재산인 부동산과 동산은 청산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연방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괴테-인스티투트에 귀속된 재산은 연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IV.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1. 설립 배경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그 어떤 국가보다도 크고 프랑스어 대한 긍지가 대단한 국가이다. 프랑스 헌법 제2조 제1항은 ‘공화국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하여 프랑스의 국어가 프랑스어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어가 국가의 단합을 이루게 하고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매개체라는 프랑스 국민들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⁹⁰⁾

1994년 프랑스 여론기관인 SOFRES의 조사에 따르면 97%의 프랑스 국민이 모국어에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5%는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70%는 프랑스어권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78%는 유럽에서 강력한 영어에 대해 다언어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⁹¹⁾

90) 전학선,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73쪽.

91) 전학선, 앞의 논문, 74쪽.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영어의 강세로 프랑스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저하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는 프랑스인 6천만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 52개국의 프랑스어권(francophonie)에서 약 2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⁹²⁾

프랑스는 1634년 프랑스어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설립했고, 19세기에 접어들어 근대국가로서 구가, 국민 전체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거듭해 왔는데, 이 때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프랑스어 보급과 공유화였다. 다만, 이 당시의 프랑스어의 보급은 무엇보다도 자국내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⁹³⁾

프랑스어 국외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세기 전반 즈음으로 1830년 알제리 침략 이후 가속화되었던 식민지 획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⁹⁴⁾ 즉 식민지에서 현지인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민지 통치를 효율화하고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현지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프랑스어 국외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83년 Paul Cambon과 Pierre Foncin의 제안으로 설립된 ‘식민지 및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보급을 위한 국립협회’(L’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propag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dans les colonies et à l’étranger)라는 호칭을 가진 민간단체인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를 활용했다.⁹⁵⁾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884년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했고, 1886년 공공기관으로 공인되었다.⁹⁶⁾ 이 당시 알리앙스 프랑세

92) 전학선, 앞의 논문, 74쪽.

93) 권재욱, 앞의 논문, 28쪽.

94) 권재욱, 앞의 논문, 28쪽.

95) 배수옥, 프랑스의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보급 정책, 교육정책 포럼 제177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8. 8, 17쪽.

96) 권재욱, 앞의 논문, 28쪽.

즈는 식민지에 프랑스어를 보급하고 식민지 이외 국가에도 프랑스어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⁹⁷⁾

그러나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설립배경은 단순한 프랑스 문화보급 차원에서 프랑스어의 해외보급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설립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870년도 보불전쟁의 패배로 침체된 분위기를 만회하고 프랑스 문화를 재건하여 외국에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고자 설립된 측면이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성직자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첫 사무국의 구성원으로 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이름도 알리앙스 프랑세즈보다 20여년 일찍 설립된 알리앙스 이스라엘(L'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에서 차용했다.⁹⁸⁾

2. 연 혁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5>와 같다.

<표-25>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1883년	Paul Cambon과 Pierre Foncin의 제안으로 ‘식민지 및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보급을 위한 국립협회’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884년	- Ferdinand de Lesseps, Louis Pasteur, Ernest Renan, Jules Verne, Armand Colin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을 파리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운영위원(les membres du conseil d'administration

97) 전학선, 앞의 논문, 76쪽.

98) 전학선, 앞의 논문, 76쪽.

IV.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연 도	주요 내용
	de l'Alliance française de Paris)으로 임명 - 바로셀로나, 세네갈, 모리스 섬, 멕시코에 알리앙스 프랑 스즈 설립
1886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파리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공공기관 으로 공인
1889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멜버른)에 알리앙스 프랑스즈 설립
1902년	캐나다(몬트리올)에 알리앙스 프랑스즈 설립, 미국에 알리 앙스 프랑세즈 연합 설립
1904년	프랑스 내에 150여개, 해외에 450여개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917년	서인도 제도, 도미니카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919년	현재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어 보급소인 101 Bd Raspail에 프 랑스어 학원 개원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독 일이 알리앙스 프랑세즈 기록물을 베를린으로 가져감
1943년	드골 장군이 알제리 연설에서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기록물 들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하여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중요 성을 더욱 더 부각시킴
1944년	파리 회복 후 파리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개원
2002년	알리앙스 프랑세즈 현대화 추진
2008년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법인화

출처 : 전학선, 앞의 논문, 76-77쪽 재구성

3.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의 설립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재단법인(fondation)이다. 프랑스에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2008년 이전에는 단순한 결사체, 즉 단체(association)로 인정되었다. 1901년 법률(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에 따라 단순한 단체로서 인정되었으나, 2008년 재단법인화한 것이다.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의 본부는 파리에 소재해 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프랑스 정부부처 가운데 외교·유럽부(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소속이다.

4. 운영 현황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프랑스어 보급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요건을 검토한 후 알리앙스 프랑세즈로 인증을 한다.

해외에 프랑스어의 보급을 위하여 일찍이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설립한 프랑스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하여 프랑스어 보급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다. 2010년 현재 135개국에 1,016개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있으며, 여기에서 492,4612명의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주요 8개 도시(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전주)에 설치되어 있다.⁹⁹⁾ 전 세계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각 대륙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26>과 같다.¹⁰⁰⁾

99) <http://www.afcoree.co.kr/index.php?idobjet=2>.

100) 전학선, 앞의 논문, 73쪽.

<표-26> 알리앙스 프랑세즈 현황

	국가 수	알리앙스 프랑세즈 수	학생 수
아프리카	36	129	76,152
북아메리카	2	133	41,899
라틴아메리카	33	274	188,291
아세아	23	78	99,408
유럽	41	354	86,711
합계	135	968	492,461

5. 재 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2001-2008년도에 550만 유로의 기금을 모았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재단의 규모는 3,860만 유로 정도이다.¹⁰¹⁾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수강료 등 현지 수입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6. 임 무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 국경 밖의 지역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전파해 왔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임무를 수행한다.¹⁰²⁾

- i)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랑스어 강좌를 제공한다.

101) Rapport d'activité 2008, p.34.

102) 전학선, 앞의 논문, 80쪽.

- ii) 프랑스는 물론 프랑스어권의 문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잘 알린다.
- iii) 프랑스의 모든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외에도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 정부가 공인하는 프랑스어 능력 시험인 DELF(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와 DALF(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7. 알리앙스 프랑세즈 관련 기관

(1) 프랑스 연구소

2010년 7월 27일 제정된 「국가의 외부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10-873 du 27 juillet 2010 relative à l'action extérieure de l'Etat)에 따라 외교 공공기관으로서 프랑스 연구소(L'Institut français)가 설치되었다. 프랑스 연구소는 그 임무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어의 해외 보급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프랑스 연구소가 프랑스 문화를 해외에 전파할 때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 연구소와 프랑스 문화 해외 전파 관련 업무에 협력하고 있다.¹⁰³⁾

(2)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Centre culturel français)도 해외에서 프랑스어 보급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경우에도 청소년 불어

103) 전학선, 앞의 논문, 86쪽.

강좌·(비)프랑스어권 유아들을 위한 수업·불어강좌 성인반·어린이 불어강좌·독서 클럽·시네 프랑스·프랑스 문화원 강연회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V. 시사점

이상에서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중국의 공자학원,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중심으로 일본어 보급기관 관련 법제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 일본의 경우 외무성에 소속된 국제교류기금이 자국어 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외무성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국제문화교류 임무를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자국어 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국의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보급사업은 실패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어 보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상국가의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국어 보급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고, 대상국을 자극하여 대일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방일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수자들이 직접 일본을 경험함으로써 일본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어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재 개발, 다양한 매체 활용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어 보급 사업이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다수의 법인을 통하여 이루어 질 때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국제교류기금이라는 단일기구가 주도적으로 (문화뿐 아니라) 자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어 보급 사업은 단일기관만에 의해서는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여 국내외 관련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ii)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자국어 보급 업무에 뛰어들었지만, 자국어 보급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공자학원을 통하여 중국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중의학 등 중국 문화 전반에 걸친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의 질, 교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역시 전개해 나가고 있다.

iii) 독일의 경우 공법인인 괴테-인스티투트가 자국어 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 등에서 ‘공익 목적’ 추구하고 관련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괴테-인스티투트의 활동은 철저히 공익적이어야 하며, 사적 목적 또는 괴테-인스티투트 스스로를 위한 이기적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괴테-인스티투트의 위원은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괴테-인스티투트의 재원에 의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괴테-인스티투트의 비이

기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괴테-인스티투트의 활동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사례 등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관상의 규정을 통해, 괴테-인스티투트의 재원이 특정 개인에게 불합리한 혜택을 줄 여지를 차단하여 괴테-인스티투트 활동의 공익성 보장하고 있다.

괴테-인스티투트는 매년 연방예산계획의 형식과 원칙에 따라 다음 해 예산안을 작성하여 연방외무부에 제출하는 등 외무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일정한 범위에서 연방보조금을 지급받고, 재산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괴테-인스티투트는 독일연방외무부와 공법상 계약의 일종인 총괄협약을 체결하여 연방외무부로부터 문화 보급 업무·자국어 보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괴테-인스티투트는 비록 연방외무부로부터 임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문화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v) 프랑스의 경우 순수민간단체에서 최근 사법상 재단법인화 된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자국어 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 외에 프랑스 연구소, 프랑스 문화원이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즉 프랑스 국민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만큼 이를 해외에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도 일찍부터 시행하여 전 세계에 프랑스어를 보급하기 위한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수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외무부가 프랑스어 보급 임무를 중심으로 수행해 온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알리앙스 프랑세즈 역시 외교·유럽부 소속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수입은 정부출연금 또는 재정지원금이라기 보다는 수강료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어 보급뿐만 아니라, 프랑스 공인 프랑스어 시험도 함께 주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27> 주요 시사점

국 가	기관명	주요 시사점
일 본	국제 교류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가의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국어 보급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 대상국을 자극하여 대일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함 - 각종 방일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수자들이 직접 일본을 경험함으로써 일본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일본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어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재 개발, 다양한 매체 활용 등에도 노력함 - 국제교류기금이라는 단일기구가 주도적으로 자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국내외 관련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함

국 가	기관명	주요 시사점
중국	공자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산해 나가고 있음 - 공자학원을 통하여 중국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중의학 등 중국문화 전반에 걸친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급함 - 교사의 질, 교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독일	괴테-인스티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테-인스티투트가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 등에서 ‘공익목적’ 추구하고 관련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 - 괴테-인스티투트는 매년 연방예산계획의 형식과 원칙에 따라 다음 해 예산안을 작성하여 연방외무부에 제출하는 등 외무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일정한 범위에서 연방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재산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받고 있음 - 괴테-인스티투트는 독일연방외무부와 공법상 계약의 일종인 총괄협약을 체결하여 연방외무부로부터 문화 보급 업무·자국어 보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괴테-인스티투트는 비록 연방외무부로부터 임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문화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국 가	기관명	주요 시사점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법상 재단법인화 된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자국어 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 외에 프랑스 연구소, 프랑스 문화원이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 -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주수입은 정부출연금 또는 재정지원금이라기 보다는 수강료임 -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어 보급뿐만 아니라, 프랑스 공인 프랑스어 시험도 함께 주관하고 있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 ‘괴테 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와 같은 자국어 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언어권역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오랜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식민지의 원활한 지배와 식민지인들의 지배국 문화에의 동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주요한 담당 부처를 ‘외교부’로 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국가의 경우도 단순한 외교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을 추진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보급을 통한 자국어 보급을 전개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어‘교육’의 관점을 중시하여 ‘교육부’가 주요 부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공자학원에서는 중국어뿐 아니라, 문화

보급을 통한 언어보급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국문화, 중의학,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 등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전제로 한국어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나라 및 외국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어 보급 추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 5 장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 추진을 위한 입법방안

I. 입법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에서의 한국어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그 대상 및 지역 역시 다변화되고 있으나, 한국어 보급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각 다른 근거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 및 지원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어 보급을 위한 통합적 전략 및 추진기반이 미흡하여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곤란과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예산의 중복낭비 우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비교적 일찍부터 ‘괴테 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등 자국어 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언어권역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 비교적 늦게 자국어 보급에 뛰어든 중국의 경우에도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설립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어 보급과 이를 통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자국어 보급 사업은 ‘교육’, ‘외교’, ‘문화’의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는 매우 특수한 영역의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과 ‘외교’에 중점을 두어 ‘국어교육’ 및 ‘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해 온 측면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에는 오랜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식민지의 원활한 지배와 식민지인들의 지배국 문화에의 동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주요한 담당 부처를 ‘외교부’로 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국가의 경우도 단순한 외교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을 추진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보급을 통한 자국어 보급을 전개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특히 일본의 경우 단일기관에서 자국어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하여 중요하므로 자국어 보급사업을 주로 외무성 소관 국제교류기금이 담당하고 있으나, 문화청,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국어 보급 대상국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일방적 자국어 보급이 아닌 쌍방적 자국어 보급·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어‘교육’의 관점을 중시하여 ‘교육부’가 주요 부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자학원에서는 중국어뿐 아니라, 문화보급을 통한 언어보급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국문화, 중의학,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 등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류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경제력 제고 등에 따른 국내외 한국어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일화·표준화된 한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한 국가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향상과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때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전제로 한국어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나라 및 외국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적인 기구, 즉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일부처의 지도·감독 및 지원을 받는 세종학당재단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 사업, 즉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세종학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일부처가 주도적으로 세종학당재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부처간 협조 체제가 구축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때 한국어 보급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입법 방안

‘한국어 교육 공동 브랜드(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어 보급 총괄기구(세종학당재단)’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법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세종학당재단’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칭)세종학당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를 위한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방안은 「국어기본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이므로 입법 과정 및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범위가 「국어기본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점과 기존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부처 및 기관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부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안은 새로이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대상 및 범위(예컨대, 국민, 한국문화의 보급 등)를 기존의 「국어기본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제한 받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28>와 같다.

<표-28> 입법방안별 장·단점

구 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방안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장 점	입법 과정 및 절차 간명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범위가 「국어기본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 점	-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범위가 「국어기본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입법 과정 및 절차 복잡

구 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방안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규정의 범위 내로 제한됨 - 타부처 소관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부처 협의 난항	

한편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하거나 또는 가칭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하더라도 타 부처 소관 국내 한국어 보급기관 근거 법령과 직접적인 중복이나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세종학당의 대상과 관련하여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관과 사업범위에 있어서 중복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법인설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방안 ‘정의’ 조항에 관한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입법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 방안

(1)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 신설

현행 「국어기본법」 제19조제1항은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 대한 국어 보급 사업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국어 보급 사업의 책무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근거를 「국어기본법」 제19조의2로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국어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세종학당 설치 지원 및 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 2.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육과정 보급
 - 3.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 4.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사업
 - 5.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재단은 제5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 설】

- 세종학당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세종학당 설치 지원, 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육과정 보급,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동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정의 조항의 개정

1) 정의규정의 의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방안 채택시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의 수행 사업 중의 하나인 ‘누리-세종학당’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국어기본법」 제2조 정의규정에 이들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의 내재적 한계상 현행 「국어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세종학당이 교육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국내·외를 불문함)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에 한정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내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국민 또는 내국인)는 제외된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에 대하여 ‘국어의 보급’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한국 문화의 보급’에 대한 책무는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어기본법」 전체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역시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 문화의 보급’을 국어기본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을 개정하는 입법 방안은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의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어의 보급’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세종학당의 교육대상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의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의 소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한글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의 사업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의 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안을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대안

① 제1안 : 세종학당의 교육대상을 외국인으로 하는 방안

< 정 의 >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종학당”이란 제2언어, 외국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7. “누리-세종학당”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에게 통합교육정보를

< 정 의 >

제공하고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하는 누리집을 말한다.

【해 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세종학당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면 한글학교의 대상은 재외국민, 세종학당의 대상은 외국인으로 구분되게 되어 차별화가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다.
- ② 제2안 : 세종학당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하는 방안

< 정 의 >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종학당”이란 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략)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조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세종학당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를 제외한 것으로서 국어 등을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해 설】

- 세종학당의 정의를 법률에서 확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다. 대통령령에서 정할 때 한글학교를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제3안 :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의 설치나 지원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하는 방안

< 정 의 >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종학당”이란 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7. (생략)

< 정 의 >

제19 조의2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④ (생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세종학당의 설치·지원 및 누리세종학당의 개발·운영
2. (이하 생략)

⑥ 재단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 설】

- 개정 「국어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세종학당의 정의는 그대로 두되,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한글학교 등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때 외교통상부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④ 제4안 :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의 설치나 지원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

< 정 의 >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종학당”이란 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7. (생략)

제19 조의2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④ (생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세종학당의 설치·지원 및 누리세종학당의 개발·운영

2. (이하 생략)

⑥ 재단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조 재단이 법 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 설】

- 이 안은 제3안의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할 것이고 제3안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 안은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안대로 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은 제3안의 법률 내용을 그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

3) 소 결

위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칙 조항 신설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세종학당재단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재단설립준비를 위한 규정, 기존의 한국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둘 필요가 있다.

< 부 칙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

-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⑧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세계화재단(이하 “세계화재단”이라 한다)이 이를 부담한다.

제 3 조 (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세계화재단은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세계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가칭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1) 입법체계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이라 한다)은 현행 각종 재단법의 입법체계를 참고하여 본문 제27개조 및 부칙 4개조로 구성하였다.

총칙규정에서는 법률제정의 입법 목적과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세종학당재단의 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주요사항(등기, 정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실체규정에서는 세종학당재단의 주요사업, 조직구성, 운영재원의 조달방법(출연금·보조금 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보칙규정으로는 세종학당재단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자금차입 및 주무부처에 의한 관리·감독장치(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결산서의 제출, 기타 보고 및 검사 등), 비밀엄수의무와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 두었다.

벌칙규정으로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비밀엄수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 및 경미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었다.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로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2) 개별 조문 및 해설

1) 목 적

< 목 적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우호적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법률에 두는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을 이해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그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 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인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특수법인 또는 비영리특수법인이라고 한다.
-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그 정책의 수행이나 사업의 운영을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특수법인의 대체적 특징으로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민법」·「상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과 「상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 내지 기능과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에 규정을 두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특수법인은 법률제명에 특수법인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여 개별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설립하거나 관련 법률에서 일부규정으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를 두어 설립한다. 즉 특수법인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여 개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설립에 관한 목적을 제1조에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일부규정으로 특수법인의 설립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보통은 ‘설립’조항을 둔다.
-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그 특수법인 설립 자체를 직접적인 입법목적으로 하여 제정되는 개별 법률이다.
- 현행법상 특수법인은 공사·재단·공단·조합·연구원·은행·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중 어떠한 명칭을 써서 특수법인을 설립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제1차적으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우호적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정의 규정

< 정 의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학당”이란 한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 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2. “누리-세종학당”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 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하는 누리집(www.sejonghacdang.org)을 말한다.

【해 설】

- 용어의 정의 규정은 당해 법률 중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 당해 법률의 내용 속에 포함된 용어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 그 뜻을 정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 설립을 통하여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1차적인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조항에서 ‘세종학당’과 ‘누리-세종학당’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둔다.
- 한편 외국에서 세종학당의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순수 외국인이 되는데, 이 중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대상자와 겹친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세종학당에서 한글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제1안)과 세종학당에 한글학교를 포함하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제2안)을 생각할 수 있다.

□ 제1안 : 세종학당에서 한글학교를 제외하는 방안

- 세종학당의 정의에서 한글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법률 제 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1. “세종학당”이란 한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는 제외한다.

- 제1안은 외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세종학당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한글학교의 과정으로 양분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일법 제정 이유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같은 사업을 2개의 부처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는 예산의 중복, 단일화된 교육의 곤란 등의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제2안 : 세종학당에 한글학교를 포함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 세종학당의 설치·운영·지원사업의 목적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나아가 국가를 홍보하는 것으로, 재외국민뿐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이 주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의 대상은 재외국민만을 그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한글학교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일부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하여 이를 일일이 제외한다면, 이 법의 제정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앞서 보듯이 제1안과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 특히 이 법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고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업을 규제할 때에는 주무부처가 중복되면 이중규제나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지원할 때에는 2개 부처가 중복되어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1개 부처의 지원액이 적은 경우에 2개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자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2중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 그리하여 이 보고서는 제2안을 취하여 ‘세종학당’을 “한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피교육자는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하고, 교육내용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포함하게 된다.

3) 법인격 부여

< 법인격 >

제 3 조 (법인격)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해 설】

- 특수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

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에서 당해 재단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4) 등기사항

< 설립 >

제 4 조 (설립) ①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 설】

- 특수재단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법인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법인의 존재를 사회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수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에 법인으로 성립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특수법인이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려면 설립등기·변경등기와 그 밖의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설립법에 어느 범위까지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현행 입법례 중에는 설립등기사항만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등 다양한 입법형식이 있다.
- 해당 법률에서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필요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하고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성격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르도록 하면 된다.
- 따라서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을 세종학당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며,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5) 사무소의 설치

< 사무소의 설치 등 >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사무소의 설치 등 >

- ② 재단은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 재단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필요한바,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6) 재단법인의 정관

<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

제 6 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 설】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3조), 이 서면을 정관이라 한다. 정관은 단체의 대외적 활동 및 대내적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단체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규범이다.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민법 제43조).
-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물론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한 이상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그리고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하는데, 특수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주무부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범위

< 사업 >

제 7 조 (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지원
2. 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3. 한국어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5.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6.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7. 외국의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8.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사업
9.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사업
10.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승인할 때 해당 법률에 따른 주무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 설】

- ‘세종학당재단’은 국가정책의 수행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므로 그 설립법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열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재단법인의 사업에 관한 규정은 사무소·등기 등의 다음에 두고 있다.
- 「세종학당재단 법률(안)」 제2조 정의조항에 따라 세종학당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를 포함 하되,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이 한글학교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승인할 때 해당 법률에 따른 주무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처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규정한다.
- 또한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인 세종학당재단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비영리 특수재단법인으로서의 세종학당재단의 법적 성격이 몰각되지 않도록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규정한다.

8) 임원의 구성

< 임 원 >

제 8 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임 원 >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⑤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 설】

- 특수재단법인이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려면 실제 활동하는 임직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임면, 결격사유, 직무, 겸직제한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특수재단법인은 법인으로서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을 정하고 있다. 대표기관은 그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데, 사장·이사장·원장·조합장·회장·총재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임원으로는 대체로 이사와 감사를 든다.
- 공무원의 경우 임면·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특수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있다.

- 특수법인의 이사장의 경우 주무관청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 특수법인의 대표자(이사장)의 임기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은 특수법인 대표자의 신분보장을 통해 해당 기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게 하거나 업무수행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대표자의 임기는 보통 3~4년 사이에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며, 그 직무에 요구되는 독립성·중립성의 정도에 따라 연임 또는 중임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9) 임원의 결격사유

< 임원의 결격사유 >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해 설】

- 특수재단법인은 일반재단법인과 달리 공익목적 수행을 도모하므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목적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보할 필요가 있다.

10) 임원의 직무

< 임원의 결격사유 >

-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해 설】

- 이사장은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자, 대내외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1)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 설】

- ‘겸직금지’란 법률에 의하여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자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법인의 임직원이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신분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생긴다.
- 그러나 겸직금지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겸직의 제한에서 오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규정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영리업무의 금지규정도 특수법인의 임직원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이다.
- 만약 영리업무가 아니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서는 임원은 주무장관, 직원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세종학당재단의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직원은 세종학당재단의 대표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12) 이사회 구성 등

< 이사회 >

- 제12조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 특수재단법인이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려면 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보통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3) 직원의 임면

< 직원의 임면 >

-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해설】

- 공무원의 경우 임면·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특수법인의 직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해당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임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이들은 공법상 근무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놓인다.

14) 재단의 운영재원

< 운영재원 >

제14조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6조에 따른 기부금품 또는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 출연금 >

제15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

제16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해 설】

- 특수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의 확보·유지가 필요하다. 최초 설립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 특수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주로 그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운영하고, 수익사업이 없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보조금·차입, 채권발행, 기부금품의 모집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으로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을 열거하고 세종학당재단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다.

15)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특수법인은 그 존재 의의와 목적,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특별한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국가가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둔다.

16) 예·결산서 관련 사항 등

< 사업연도 >

제1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

제1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결산서의 제출 >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민법」이 적용되는 재단법인에는 회계연도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 재정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 특수법인은 그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고 운영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전에 감독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독 행정관청에게 세입·세출결산서도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리하여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16) 지도·감독 등

< 지도·감독 등 >

제21조 (지도·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과우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해 설】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일정한 사무의 집행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고 당해 행정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보고·검사 등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보고·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해 요구를 받는 자의 측에서 본다면 그 자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17) 비밀엄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설】

- 특수법인의 임직원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대한 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법인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특수법인의 설립목적 및 수행업무는 공공성을 띠거나 국가사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법인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공공성·공정성·신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리·겸직금지, 비밀엄수의무 등을 두고 있다.

18)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세종학당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 설】

-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당해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진 특정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둔다.
-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는 특정기관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자격자나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이나 유사기관의 설립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다만,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 또한 동일 명칭 외에 유사 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규제를 확대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19) 민법의 준용

< 민법의 준용 >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 설】

- 특수재단법인 역시 재단법인이므로 그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 된다.

20)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 설】

-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擬制)’라 한다.

- 이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루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에 관한 조항은 보칙의 장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칙의 장을 두지 않는 법률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근거조항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과 관련된 실체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벌 칙

< 벌 칙 >

제26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 설】

- 벌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다.
- 법률상의 실체규정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법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벌칙은 의무내용에 따라 그것을 둘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벌칙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입법에 있어서 양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현행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형에 큰 차이가 있는 사례가 많으나, i)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ii)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칙의 한도를 고려하고, iii) 위법행위의 반사회성과 가벌성의 정도에 따른 타당한 양형의 고려 등을 인식하여 정한다.
- 따라서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2) 과태료

< 과태료 >

- 제27조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세종학당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해 설】

- 과태료는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형벌과는 달리, 행정법규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업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을 말한다.

- 과태료는 금전에 의한 행정벌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과료 등과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형벌인 벌금·과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며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과태료는 그것이 형벌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벌칙과의 사이에서 누범관계가 생길 수 없다.
- 이러한 과태료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성질이 직접 사회의 법익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무위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고찰하여야 한다.
-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의 형사벌을 부과하고, 기관명칭 등에 관한 벌칙은 형사벌로 다루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세종학당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3) 부 칙

< 과태료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세계화재단(이하 “세계화재단”이라 한다)이 이를 부담한다.

< 과태료 >

제 3 조 (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세계화재단은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세계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 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 설】

- 법률은 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규정·벌칙규정으로 구성되는 본칙과 부수적·경과적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칙으로 나눌 수 있다.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령의 시행일,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관계법령의 개정폐지의 조치 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시행지역에 관한 규정이나 그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 이러한 부칙규정의 순서에 관해서는 일정한 원칙적 순서가 있으며, 통상 i)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ii)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iii)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iv)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v)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vi)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vii) 법령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viii) 기타 규정 등의 순서로 배열한다.
-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지만, 법률이 법규범으로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포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법률의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헌법 제53조 제7항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법령의 시행일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세종학당재단 법률(안)」의 경우 법률의 시행일 외에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과 기존의 ‘한국어세계화재단’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 세종학당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서 세종학당재단 설립 준비 및 한국어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둔다.

- 또한 「세종학당재단 법률(안)」 제1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세종학당재단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서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참 고 문 헌

- 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0. 9.
- 강주영, 독일 괴테-인스티투트(das Goethe-Institut)에 관한 법제적 고찰,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 권재욱,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통합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국립국어원, 2007 세종학당백서, 2007. 10.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 김정숙,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 노윤환, 재외동포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2007.
-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6.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6.
- 배수옥, 프랑스의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보급 정책, 교육정책 포럼 제177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8. 8.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9.
- 전학선,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참 고 문 헌

정운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 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중국연구 제47권,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 中
國研究所, 2009.

임형재, 지난 10년,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제32집,
2010.

정명운,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최용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문법 교육 제6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6.

최정순, 재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대책, 교육정책
포럼 제177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8. 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R. Stober, Allg.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6. Aufl. Stuttgart 2008.

<http://www.jpj.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

<http://www.jpj.go.jp/j/about/outline/admin/reorganization.html>

http://www.jpf.go.jp/j/about/outline/admin/plan/data/mid_plan_19_24.pdf
p.2~p.4

<https://www.erin.ne.jp/jp/>

<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edu/index.html>

http://www.jpj.go.jp/j/japanese/dispatch/jenesys_yjt/index.html

<http://www.jpf.go.jp/j/jenesys/index.html>
<http://www.jpf.go.jp/j/japanese/dispatch/index.html>
http://www.jpf.go.jp/j/urawa/trnng_t/trnng_t.html
http://www.jpf.go.jp/j/urawa/trnng_t/trnng_t.html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ca.html
http://www.jpf.go.jp/j/kansai/pdf/ca_concept_ja.pdf
http://www.jpf.go.jp/j/kansai/pdf/j_dlgl.pdf
http://www.jpf.go.jp/j/kansai/pdf/j_dlgl.pdf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aw.html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sg.html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haw.html
http://www.jpf.go.jp/j/kansai/pdf/ayf_nagare_j.pdf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ayf.html
http://www.jpf.go.jp/j/kansai/programs/j_info/index.html
<http://www.jpf.go.jp/j/japanese/survey/result/index.html>
<http://www.jpf.go.jp/j/japanese/survey/result/dl/2006-1.pdf>
<http://www.jpf.go.jp/j/japanese/support/index.html>
<http://jfstandard.jp/top/ja/render.do>

부 록

목 차

【부록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5
【부록 2】 세종학당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3
【부록 3】 국내 관련 입법례	233
• 재외동포재단법	23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240
• 한국국제협력단법	247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5
• 다문화가족지원법	26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65
【부록 4】 국외 관련 입법례	267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267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령	277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규칙	279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업무방법서	286
• 괴테-인스티투트 정관(SATZUNG)	289
• 괴테-인스티투트 ·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총괄협약(Rahmenvertrag)	308

【부 록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종학당”이란 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7. “누리-세종학당”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에게 통합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하는 누리집을 말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국어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부 록

1. 세종학당 설치 지원 및 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2.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육과정 보급
 3.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4.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재단은 제5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
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
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
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세계화재단(이하 “세계화재단”이라 한다)이 이를
부담한다.

제 3 조 (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세계
화재단은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
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세계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 3 조 (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세종학당”이란 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u></p> <p>7. <u>“누리-세종학당”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에게 통합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하는 누리집을 말한다.</u></p> <p><u>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u></p> <p>① <u>국가는 국어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라 한</u></p>

현행	개정안
	<p><u>다)을 설립한다.</u></p> <p><u>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u></p> <p><u>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u></p> <p><u>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세종학당 설치 지원 및 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u> <u>2.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육과정 보급</u> <u>3.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u> <u>4.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사업</u> <u>5.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u>⑥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⑦ 재단은 제5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p> <p><u>⑧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u></p> <p><u>⑨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 2 조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인 이내의 설립</u></p>

현행	개정안
	<p><u>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u>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u>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p> <p>④ <u>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u></p> <p>⑤ <u>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u></p> <p>⑥ <u>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u></p> <p>⑦ <u>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u></p>

현 행	개 정 안
	<p><u>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u></p> <p><u>⑧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세계화재단(이하 “세계화재단”이라 한다)이 이를 부담한다.</u></p> <p><u>제 3 조 (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세계화재단은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세계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u></p>

【부 록 2】

세종학당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우호적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학당”이란 한국어 또는 제2언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과정을 말한다.
2. “누리-세종학당”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 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하는 누리집(www.sejonghaktang.org)을 말한다.

제 3 조 (법인격)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설립) ①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지원
2. 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3. 한국어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5.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6.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7. 외국의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8.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사업
9.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사업
10.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학교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승인할 때 해당 법률에 따른 주무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6조에 따른 기부금품 또는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세종학당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세종학당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세계화재단(이하 “세계화재단”이라 한다)이 이를 부담한다.

제 3 조 (세계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세계화재단은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세계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 록 3】

국내 관련 입법례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09.12.30] [법률 제9878호, 2009.12.30,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제 3 조 (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부 록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1999.12.31>

제16조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9조 (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 (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096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시행 2009.12.30] [법률 제9878호, 2009.12.30,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 (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 ③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 4. 기금 운용 수익금
-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록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의2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 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7조 삭제 <2009.12.30>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6>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 내지 <145>생략

제 6 조 생략

【 한국국제협력단법 】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95호, 2010. 3.17,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 3 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제 8 조 (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총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부 록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 (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생략)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생략)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생략)

제25조 (산하기관) (생략)

제26조 (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록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 삭제

부칙 <법률 제10095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22] [법률 제8913호, 2008. 3.21,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 1 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제 5 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학칙·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설립승인의 취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 조 (운영승인의 취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 (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 절 (생 략)

제 3 절 (생 략)

제 4 절 (생 략)

제 3 장 한국교육원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 4 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32조 (보고·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장부 등에 대한 검사·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검사·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부 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 5 장 (생 략)

제 6 장 벌칙 (생 략)

부칙 <법률 제8913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 3 조~제11조 (생략)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이하 생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3 조~제23조 (생략)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부 록 4】

국외 관련 입법례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2002년 12월6일 법률 제137호

(최종개정: 2004년 6월23일 법률 제13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의 명칭, 목적,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 및 독립행정법인 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통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한다.

제 3 조 (기금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제 외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상호이해 및 문화 그 밖의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함으로써 양호한 국제환경정비, 일본

국의 조화 있는 대외관계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기금은 주요 사무소를 동경에 둔다.

제 5 조 (자본금) ① 기금의 자본금은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 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부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제5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출자할 목적으로 기금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제2항에 따라 정부출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자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격은 출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과 그 밖의 동향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명칭의 사용제한) 기금이 아닌 자는 국제교류기금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 7 조 (임원) ① 기금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기금에 임원으로 3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통칙법 제9조제2항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임원은 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통칙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대리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감사는 본래의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사퇴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과 그 밖의 벌칙적용에 있어 법령에 따른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 3 장 업무 등

제12조 (업무의 범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의 파견 및 초청
2. 해외에서의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 보급
3.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4.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와 그 밖의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5.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정비에 대한 원조, 국제문화교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구입에 대한 원조 및 이러한 물품의 증여(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
6. 국제문화교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7. 전항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제13조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대한 법률이 특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79호)의 규정(별칙을 포함한다)은 제12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금이 교부하는 조성금(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제2조제7항을 제외한다) 중 “각성각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각성각청의 장”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의 이사장”으로, 같은 제2종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국가”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동같은 제14조 중 “국가의 회계연도”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대체한다.

제14조 (적립금의 처분) ① 기금은 통칙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기목표 기간(이하 이 항에서 “중간목표 기간”이라 한다)의 최후

사업연도와 관련하는 통칙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리를 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이 있을 때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중 외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당해 중기목표 기간의 다음 중기목표의 기간과 관련하는 통칙법 제30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동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때는 그 변경후의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음의 중기목표기간에서 제12조에 따른 업무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외무대신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 할 때는 미리 외무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동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잔여 액수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납부금의 납부절차와 그 밖의 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용자금) ① 기금은 업무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칙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외무대신이 표시한 금액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금액 및 운용자금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이하 “운용자금”이라 한다)은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용자금의 운용) ① 통칙법 제47조 및 제67조는 운용자금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통칙법 제47조제3호 중 “금전신탁”은

“금전신탁에서 원본보전의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지불이 외국통화로 시행하는 사업의 실시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충당하려는 때는 외화건채권(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을 말한다. 다음 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같다)의 취득에 따라 운용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있어 외화건채권의 종류, 외화건채권의 취득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의 한도액과 그 밖의 외화건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잡 칙

제17조 (긴급 필요가 있는 경우 외무대신의 요구) ① 외무대신은 국제정세의 급변하는 변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국제회의 그 밖의 국제협조의 범위를 말한다)의 요청을 받아 외교정책의 수행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금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업무 또는 기금의 외국에 있는 사무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외무대신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재무대신의 협조) 외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고 하는 때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외화건채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때

제19조 (주무대신) 기금과 관련하는 통칙법에 따른 주무대신, 주무성 및 주무성령은 각각 외무대신, 외무성 및 외무성령으로 한다.

제20조 (국가공무원속사법의 적용제외) 국가공무원속사법(1949년 법률 제117호)의 규정은 기금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삭제)

제 5 장 별 칙

제22조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금의 임원에 대해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에 따른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무대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15조제1항에 위반하여 운용자금을 따로 정한 때
4.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통칙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운용자금을 운용한 때
5. 제16조제3항에 따라 외무대신이 정한 사항에 위반하여 운용자금을 운용한 때

제24조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초(抄)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4조 및 부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2003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지분의 반환)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기금법(1972년 법률 제48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의 해산일의 전일까지 국제교류기금에 출자한 정부 이외의 자에 대해 당해 지분과 관련하는 출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분을 반환한다. 이 경우 국제교류기금은 그 반환한 금액에 따른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국제교류기금의 해산 등) ① 국제교류기금(이조에서 “구(旧)기금”이라 한다)은 기금 성립시에 해산하는 것으로 하며 그 권리 및 업무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승계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기금이 승계한다.

② 기금의 성립시 현재에 구기금이 가지는 권리 중 기금이 그 업무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기금의 성립시에 국가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하는 자산의 범위와 그 밖의 당해 자산의 국가로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④ 구기금의 2003년 4월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는 구기금의 해산일의 전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⑤ 구기금의 2003년 4월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와 관련하는 결산, 재산목록, 임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기금이 구기금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때는 그 승계시 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격(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구기금에 출연한 금액 중 의무대신이 채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및 기금의 최초 중기목표 기간에서의 재무재원에 충당하는 금액으로서 의무대신이 채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제외한 다)에서 부채금액을 제한 액수는 정부로부터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대신은 채무대신과 협의한 후 당해 출자 중 제15조에 따른 운용자금에 충당하여야 할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⑦ 제6조에 따른 자산의 가격은 기금의 성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⑧ 제7항의 평가위원 그 밖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⑨ 구기금의 해산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기금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배분은 하지 아니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구기금이 해산한 경우 해산 등기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의무대신은 기금이 성립한 날의 전 날에 현재 의무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4호) 제4조제1호2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국제교류기금법의 폐지) 국제교류기금법은 폐지한다.

제 6 조 (국제교류기금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시행 전에 국제교류기금법(제12조를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통칙법 또는 이 법률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 7 조 부칙 제5조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 사항과 관련하는 이 법률 시행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8 조 (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전2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설립에 필요한 경과조치와 그 밖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04년 6월23일 법률 130호) 초(抄)

제 1 조 (시행일) 1. 이 법률은 2004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및 부칙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76조의2까지, 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200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령】

2003년 9월20일 시행령 제411호
(최종개정:2005년 4월1일 시행령 제118호)

<제정문>

내각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2002년 법률 제137호) 제5조제6항,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이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 1 조 (평가위원의 임명 등) ①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평가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외무대신이 임명한다.

1. 외무성 직원 1인
 2. 재무성 직원 1인
 3.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임원 1인
 4. 학식경험이 있는 자 2인
-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같은 항의 평가위원 과반수의 일치로 한다.
-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서무는 외무성대신관방홍보문화교류부문화교류과에서 처리한다.

제 2 조 (운용자금의 분할) ① 제15조제2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직접 그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부 록

해당 고정자산의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의 지불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자금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외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 외무대신은 제1항의 승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2005년 7월28일 시행령 제247호) 초(抄)

제 1 조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규칙 】

2003년 9월30일 외무성시행규칙 제21호

<제정문>

독립행정법인 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독립행정법인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에 관한 시행령(2000년 시행령 제316호) 제5조제2항 및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령(2003년 시행령 제411호)에 근거하여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 (업무방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관련하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이하 “통칙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2002년 법률 제137호, 이하 “기금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인물과건 및 초청에 관한 사항
2. 기금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외에서의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금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그 밖의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에 관한 사항
5. 기금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정비에 대한 원조, 국제문화교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구입에 관한 원조 및 물품증여(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금법 제12조제6호에 따라 국제문화교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기금법 제12조제7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8. 업무위탁 기준
9. 경쟁 입찰 그 밖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0. 그 밖에 기금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조 (중기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기금은 통칙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의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중기계획의 최초 사업개시년도 개시 30일전까지(기금의 최초 사업연도에 속하는 중기계획에 관해서는 기금 성립 후 지체 없이)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통칙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기계획의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중기계획에 기재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과 관련하여 통칙법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 성립후 최초의 중기계획과 관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1.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계획
2. 인사에 관한 계획
3. 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칙법 제29조에 따른 중기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 4 조 (연도계획의 기재사항 등) ① 기금과 관련하는 통칙법 제31조제1항의 연도계획에는 중기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서 실시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통칙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도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등록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사업연도와 관련하는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기금은 통칙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와 관련하는 업무실적에 대해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통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무성에 설치한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때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도계획에서 정한 사항마다 그 실적을 명확히 하는 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중기목표와 관련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기금과 관련하는 통칙법 제33조의 사업보고서에는 당해 중기목표에서 정한 사항마다 그 실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7 조 (중기목표와 관련하는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기금은 통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각 중기목표기간의 사업실적에 관해서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때는 당해 중기목표에서 정한 사항마다 그 실적을 분명히 하는 보고서를 당해 중기목표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계원칙) ①기금의 회계에 관해서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에게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른다.

② 금융청조직령¹⁰⁴(1998년 시행령 제392호)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회계심의회에 따라 공표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에게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1999년 4월27일의 중앙성청 등 개혁추진본부결정에 근거하여 시행된 독립행정법인의 회계에 관한 연구 성과로서 공표된 기준

104) 금융청조직령 제24조제1항 ①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심의회 등 이외에 금융청에 기업회계심의회를 둔다.

② 기업회계위원회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감사기준의 설정, 원가계산의 통일 그 밖의 기업회계제도의 정비개선에 대해선 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내각총리대신, 금융청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업회계심의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심의회영(1952년 시행령 제30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서 “독립행정법인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이 시행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9 조 (수익획득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각자산) ① 외무대신은 기금이 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려고 하는 상각자산에 관해서 그 감가에 대응하여야 할 수익획득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까지 당해 상각자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자산의 감가액과 같은 액을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제로서 계상한다.

제10조 (재무제표) 기금과 관련하는 통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독립행정법인 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캐시프로계산서 및 행정서비스실시비용계산서로 한다.

제11조 (열람기간) 기금과 관련하는 통칙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 (단기차입금의 인가신청) 기금은 통칙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기차입금의 차입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기차입금의 차환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의 액수
3. 차입처

4. 차입금의 이율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지불방법 및 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중요 재산) 기금과 관련하는 통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건물 및 외무대신이 지정하는 그 밖의 재산으로 한다.

제14조 (중요 재산의 처분 등 인가신청) 기금은 통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양도 또는 담보(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등과 관련하는 재산의 내용 및 평가액
2. 처분 등의 조건
3. 처분 등의 방법
4. 기금의 업무운영상 지장이 없는 이유

제15조 (적립금의 처분과 관련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 독립행정법인의 조직,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는 공통적인 사항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제5조제1항의 기간 최후의 사업연도(이하 “기간 최후의 사업연도”라 한다)의 사업연도말 연차대조표
2. 기간 최후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3. 기간 최후의 사업연도말 이익처분에 관한 서류
4. 승인을 받으려 하는 금액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한 서류

제16조 (운용자금의 분할승인) 기금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용자금의 분할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분할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분할한 금액의 사용용도
4. 취득 또는 임차와 관련하는 고정자산의 내용 및 용도
5. 운용자금의 분할방법
6. 분할예정기일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기금의 성립시 기금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라 기금에 출자된 자산 중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업무방법서 】

제 1 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업무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운영의 방침) 기금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2002년 법률 제137호, 이하 “기금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능률적·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제 3 조 (기금의 업무) 기금은 기금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인재를 파견, 초청하는 것
2. 해외에 일본연구를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초청, 회의 등 실시, 자료배포, 해외에서 일본연구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금 이외의 자에 대한 조성방법에 의한 해외에서의 일본연구를 원조 및 알선하는 것
3. 일본어에 관한 교육전문가 파견, 일본에 관한 교육전문가 및 일본어학습을 위한 연수실시(연수를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다), 회의 등 실시, 교수법 연구, 교재개발, 작성 및 배포, 일본어능력측정과 관련한 시험 개발 및 실시, 일본어보급에 기

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금 이외의 자에 대한 조성방법에 의한 일본어 보급을 수행하는 것

4.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전시, 상영, 강연, 세미나, 회의 등 행사를 실시(이러한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는 자 및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조성방법에 의하여 원조, 알선 및 참가하는 것
5.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와 그 밖의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로서 출판물, 시청각자료 및 전기적 기록매체 등을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하는 것
6.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정비에 대한 원조 및 국제문화교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구입에 관한 원조, 이러한 물품의 증여(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를 수행하는 것
7.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관련하여 수행하는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사용이 지정된 기부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원조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

제 4 조 (업무의 위탁) 기금은 제3조의 업무에 대해서 해당 업무가 확실히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위탁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록

제 5 조 (업무의 수탁) 기금은 기금법 제12조의 업무범위에서 업무 운영에 지정이 없는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그 밖의 자의 의뢰에 응하여 수탁에 의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경쟁입찰 그 밖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금은 매매, 임차, 청부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경쟁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소액인 경우 그 밖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외부자금) 기금은 기금법 제3조에 따른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금 등 외부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시설 등의 대여) ① 기금은 국제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에 따라 기금의 시설·설비의 일부를 기금이외의 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하는 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그 밖의 업무방법)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업무방법서는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괴테-인스티투트 정관(SATZUNG) 】

vom 21. September 2000

i. d. F. vom 20. November 2009

§ 1 NAME, SITZ, GESCHÄTSJAHR, RECHTLICHE NATUR

- (1) Der Verein führt den Namen “Goethe-Institut e.V.”
- (2) Der Sitz ist München.
- (3) Das Geschäftsjahr entspricht dem Kalenderjahr.
- (4) Der Verein ist in das Vereinsregister eingetragen.

§ 2 VEREINSZWECK, GEMEINNÜZIGKEIT

(1) Vereinszweck sind die Förderung der Kenntnis deutscher Sprache im Ausland, die Pflege der internationalen kulturellen Zusammenarbeit und die Vermittlung eines umfassenden Deutschlandbildes durch Informationen über das kulturelle,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Leben. Der Verein verfolgt ausschließlich und unmittelbar gemeinnützige Zwecke im Sinne des Abschnitts “teuerbegünstigte Zwecke” der Abgabenordnung. Er fördert Wissenschaft und Forschung, Bildung und Erziehung, Kunst und Kultur sowie die Völkerverständigung. Der

Satzungszweck wird insbesondere durch die Erfüllung der Aufgaben verwirklicht, die sich aus dem Rahmen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Goethe-Institut e.V. in seiner jeweils geltenden Fassung ergeben. Das Goethe-Institut e.V. unterhält Kulturinstitute im Ausland und im Inland. Sitz der Zentrale ist München. Die Zentrale hat eine Vertretung in Berlin sowie Außenstellen in Deutschland.

(2) Der Verein ist selbstlos tätig. Durch die Tätigkeit des Vereins werden nicht in erster Linie eigenwirtschaftliche Zwecke angestrebt. Die Mittel des Vereins dürfen nur für die satzungsgemäßen Zwecke verwendet werden. Die Mitglieder erhalten in ihrer Eigenschaft als Mitglieder keine Zuwendungen aus Mitteln des Vereins.

(3) Es dürfen keine Personen durch Ausgaben, die den Zwecken des Vereins fremd sind, oder durch unverhältnismäßig hohe Vergütungen begünstigt werden.

§ 3 MITGLIEDSCHAFT

(1) Der Verein besteht aus

- ordentlichen Mitgliedern,
- außerordentlichen Mitgliedern und
- Mitgliedern kraft Amtes.

(2) Die Gesamtzahl der ordentlichen Mitglieder ist auf 30 begrenzt.

(3) Ordentliche Mitglieder sind

-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Persönlichkeiten aus verschiedenen Zweigen des kulturellen, wissen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ben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auf Vorschlag des Präsidiums und aufgrund von Vorschlägen aus dem Kreis der Mitgliederversammlung durch die Mitgliederversammlung gewählt werden.

(4) Außerordentliche Mitglieder sind

- je eine Abgeordnete/ein Abgeordneter der Fraktionen des Deutschen Bundestages, die/der von ihrer/seiner Fraktion für die Dauer einer Legislaturperiode benannt wird,
- zwei Vertreter/-innen von Länderregierungen, die von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innen der Lä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jeweils vier Jahre benannt werden.

(5) Mitglieder kraft Amtes sind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und die in § 7 Abs. 3 Nr. 2 genannten Präsidiumsmitglieder unbeschadet ihrer etwaigen ordentlichen Mitgliedschaft sowie die in § 7 Abs. 3 Nr. 4 genannten Präsidiumsmitglieder für die Dauer ihrer Amtsperiode.

(6) Die außerordentliche Mitgliedschaft und die Mitgliedschaft kraft Amtes stehen der ordentlichen Mitgliedschaft gleich, soweit die Satzung nichts anderes bestimmt.

(7) Die ordentliche Mitgliedschaft beginnt - außer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부 록

1. am 15. Juli eines jeden Jahres, nachdem die Mitgliederversammlung über die Aufnahme des Mitglieds beschlossen hat. Wahlen neuer Mitglieder finden in der Regel nur während der Mitgliederversammlung in der ersten Jahreshälfte statt,
2. zu einem anderen Zeitpunkt, wenn dieser von der Mitgliederversammlung in dem Beschluss über die Aufnahme bestimmt wird.

(8) Die ordentliche Mitgliedschaft erlischt durch schriftlich erklärten Austritt oder - außer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1. mit Ablauf von fünf Jahren,
2. durch Ausschluss oder
3. durch Tod.

(9) Die außerordentliche Mitgliedschaft endet

1. mit Ablauf oder Verlust des Mandats, welches die Grundlage für die Mitgliedschaft ist,
2. durch sonstigen Wegfall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Entsendung,
3. durch schriftlich erklärten Austritt oder
4. durch Tod.

§ 4 AUSSCHLUSS EINES MITGLIEDS

(1) Ein Mitglied kann durch Beschluss der Mitgliederversammlung wegen Schädigung des Ansehens, der Interessen des Vereins oder aus einem anderen wichtigen Grund ausgeschlossen werden.

(2) Vor der Beschlussfassung ist das Mitglied zu hören.

(3) Der Beschluss über den Ausschluss ist dem Mitglied schriftlich mitzuteilen.

(4) Gegen den Beschluss ist binnen einer Frist von einem Monat die Berufung an die Mitgliederversammlung zulässig.

(5) Mit dem Ausschluss erlöschen alle Ämter, die das Mitglied im Verein innehat.

(6) Die Absätze 1 bis 5 sind nicht auf die Arbeitnehmervertretung im Präsidium anzuwenden. Das Recht zur außerordentlichen Kü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bleibt unberührt.

§ 5 ORGANE DES VEREINS

Organe des Vereins sind

- die Mitgliederversammlung,
- das Präsidium,
- der Vorstand.

§ 6 MITGLIEDERVERSAMMLUNG

(1) Die Mitgliederversammlung hat folgende Aufgaben:

1. Beratung und Empfehlung zu konzeptionellen Fragen für die Arbeit des Goethe-Instituts e.V.,
2. Beschlussfassung über Satzungsänderungen sowie Zustimmung zum Abschluss, zur Änderung und Kündigung des Rahmen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Goethe-Institut e.V.,

부 록

3. Entgegennahme und Beratung des Jahresberichts des Präsidiums,
4. Entgegennahme des Jahresabschlusses und des Jahresberichts des Vorstandes,
5. Beschlussfassung über die Entlastung des Vorstandes,
6. Entgegennahme der Berichte der Beiräte,
7. Wahl und Aufnahme von Mitgliedern auf Vorschlag des Präsidiums und aufgrund von Vorschlägen aus dem Kreis der Mitgliederversammlung und Ausschluss von Mitgliedern,
8. Wahl von Präsidiumsmitgliedern,
9. Regelung der Mitgliedsbeiträge,
10. Wahl der Wirtschaftsprüferin/des Wirtschaftsprüfers.

(2) In jedem Jahr finden zwei ordentliche Mitgliederversammlungen statt. Sie werden durch die Präsidentin/den Präsidenten einberufen. Die Mitglieder sind unter Angabe der vorläufigen Tagesordnung mindestens sechs Wochen vor dem Tag der Versammlung schriftlich einzuladen. Auf der zweiten ordentlichen Mitgliederversammlung im Jahre sind die Aufgaben gemäß Absatz 1 Nr. 3 - 5 zu erledigen.

(3) Anträge zur ordentlichen Mitgliederversammlung sind spätestens vier Wochen vor der Mitgliederversammlung mit schriftlicher Begründung einzureichen. Dies gilt nicht für Abänderungsanträge zu vorliegenden Anträgen. Die endgültige Tagesordnung wird spätestens zwei Wochen vor der ordentlichen Mitgliederversammlung durch die Präsidentin/den Präsidenten an die Mitglieder versandt.

(4)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kann eine außerordentliche Mitgliederversammlung einberufen. Sie/er ist hierzu verpflichtet, wenn mindestens 7 Mitglieder diese unter Angabe des Zwecks und der Gründe schriftlich beantragen. In diesem Falle sind die Mitglieder unter Bekanntgabe der Tagesordnung mindestens sechs Wochen vor dem Tage der außerordentlichen Mitgliederversammlung schriftlich einzuladen. Absatz 3 gilt entsprechend.

(5) Den Vorsitz in der Mitgliederversammlung für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6) Jedes anwesende Mitglied hat in der Versammlung eine Stimme.

(7) Die Mitgliederversammlung ist beschlussfähig, wenn mindestens ein Drittel der Mitglieder anwesend ist. Bei Beschlussunfähigkeit kann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unverzüglich eine neue Mitgliederversammlung einberufen, für deren Einberufung die Bestimmungen des Abs. 4 gelten. Diese Mitgliederversammlung ist ohne Rücksicht auf die Zahl der anwesenden Mitglieder beschlussfähig. Abs. 9 sowie § 10 bleiben unberührt.

(8) Alle Beschlüsse der Mitgliederversammlungen werden, soweit die Satzung nichts anderes bestimmt,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der anwesenden Mitglieder gefasst. Gegen Beschlüsse der Mitgliederversammlung im Bereich der Vertragsaufgaben, die den Richtlinien, der Planung oder Koordination auf dem Gebiet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oder der Öffentlichkeitsarbeit widersprechen, kann die Vertreterin/der Vertre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pruch einlegen.

Der Einspruch ist in der Sitzung, in der der Beschluss gefasst worden ist, zu begründen. Durch den Einspruch gilt der Beschluss als aufgehoben. Sofern der Vertreterin/dem Vertre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sofortige Stellungnahme nicht zuzumuten ist, kann diese/-r einen vorläufigen Einspruch einlegen. Dadurch wird der Beschluss suspendiert. Eine endgültige Erklärung ist binnen einer Frist von einem Monat gegenüber der Präsidentin/dem Präsidenten schriftlich abzugeben und für den Fall der Aufrechterhaltung des Einspruchs zu begründen.

(9) Satzungsänderungen bedürfen einer Mehrheit von drei Viertel der erschienenen Mitglieder.

(10) Die Tagesordnung kann während der Mitgliederversammlung durch Dringlichkeitsanträge ergänzt werden, sofern zwei Drittel der anwesenden Mitglieder dafür stimmen. Dies gilt nicht für Anträge auf Änderungen der Satzung oder Auflösung des Vereins. Abs. 3 Satz 2 bleibt unberührt.

(11) Über die Beschlüsse der Mitgliederversammlung ist eine Niederschrift zu fertigen, die von der/dem Vorsitzenden und von der Protokollführerin/ dem Protokollführer zu unterzeichnen ist. Abweichende Meinungen sind auf Antrag zu Protokoll zu nehmen.

(12) Ein Mitglied kann an der Beratung und Abstimmung nicht teilnehmen, wenn es sich um seine persönlichen Angelegenheiten handelt.

§ 7 PRÄSIDIUM

(1) Das Präsidium hat folgende Aufgaben:

1. Bestellung des Vorstandes, die der Zustimmung des Auswärtigen Amtes bedarf, und Überwachung der Tätigkeit des Vorstandes; gerichtliche und außergerichtliche Vertretung des Vereins gegenüber dem Vorstand.
2. Beschlussfassung über die Richtlinien für die Institutsarbeit.
3. Beschlussfassung über die von Vorstand und Präsidium vorbereiteten und in der Mitgliederversammlung beratenen langfristigen konzeptionellen Planungen für das Gesamtinstitut.
4. Beschlussfassung über die vom Vorstand aufgestellten Entwürfe der Wirtschafts-, Finanz- und Investitionspläne.
5. Entgegennahme und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und Empfehlung hinsichtlich der Entlastung des Vorstandes an die Mitgliederversammlung. Der Jahresabschluss ist unter Einbeziehung der Buchführung und des Geschäftsberichts, soweit er die Buchführung erläutert, durch eine Wirtschaftsprüferin/einen Wirtschaftsprüfer zu prüfen, bevor er dem Präsidium vorgelegt wird.
6. Prüfung des Jahresberichts des Vorstandes.

7. Vorherige Zustimmung zu den Entscheidungen und Maßnahmen des Vorstandes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für den Verein, insbesondere:

- a) Eröffnung und Schließung von Instituten,
- b) Übernahme neuer Aufgaben und Beendigung oder Veränderungen bisheriger wesentlicher Aufgaben des Vereins,
- c) Abschluss von Tarifverträgen,
- d) wesentliche Maßnahmen in der Betriebsorganisation,
- e) Erwerb, Veräußerung und Belastung von Grundeigentum und anderen Grundstücksrechten,
- f) Einräumung von Pfand- oder anderen dinglichen Rechten am beweglichen Vermögen des Vereins,
- g) Aufnahme und Gewährung von Krediten, Übernahme von Bürgschaften, Erlass von Forderungen und Abschluss von Vergleichen. Die jeweiligen Wertgrenzen für bzw. Arten von zustimmungsfreien Rechtsgeschäften dieser Art werden in der Geschäftsordnung des Präsidiums festgelegt.
- h) Das Präsidium kann sich die Entscheidung bei der Besetzung besonders wichtiger Stellen oder zum Abschluss, zur Änderung und zur Kündigung von Verträgen mit den Inhabern solcher Stellen in seiner Geschäftsordnung vorbehalten.

Für bestimmte Geschäfte kann das Präsidium in seiner Geschäftsordnung dem Vorstand seine Zustimmung auch allgemein erteilen.

In Eilfällen kann sie im Umlaufverfahren eingeholt werden.

8. Erlass der Geschäftsordnungen des Vereins.
9. Vorbereitung der Mitgliederversammlung; Vorschläge zur Aufnahme neuer Mitglieder.

(2) Gegen Beschlüsse des Präsidiums im Bereich der Vertragsaufgaben, die den Richtlinien, der Planung oder Koordination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oder der Öffentlichkeitsarbeit widersprechen, kann die Vertreterin/der Vertreter des Auswärtigen Amtes Einspruch einlegen. § 6 Abs. 8 Sätze 3 - 7 gelten entsprechend.

(3) Das Präsidium besteht aus:

1. der Präsidentin/dem Präsidenten,
2. sechs Mitgliedern, die von der Mitgliederversammlung aus ihrem Kreis in geheimer Wahl auf die Dauer von vier Jahren gewählt werden. Die Wahl regelt eine Wahlordnung.
3. je einer Vertreterin/einem Vertreter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4. drei von den Arbeitnehmerinnen/Arbeitnehmern des Goethe-Instituts e.V. auf die Dauer von vier Jahren gewählten Mitgliedern. Wählbar sind alle bei der Wahl zu den Betriebsräten wahlberechtigten Arbeitnehmer/-innen, die mindestens ein halbes Jahr beim Verein beschäftigt sind. Die Wählbarkeit der im Ausland beschäftigten Arbeitnehmer/-innen wird regional begrenzt. Das Nähere wird in der Wahlordnung zur Wahl der Arbeitnehmervertreter/-innen im Präsidium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geregelt. Die Bestimm-

ungen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über Kündigungs- und Versetzungsschutz für Betriebsratsmitglieder gelten entsprechend. Verliert eine Arbeitnehmerin/ein Arbeitnehmer die Wählbarkeit, so erlischt ihr/sein Mandat.

(4) Alle erforderlich werdenden Nachwahlen erfolgen für die verbleibende Dauer der jeweiligen Wahlperiode.

(5) Das Präsidium wählt in geheimer Wahl auf die Dauer von vier Jahren die Präsidentin/den Präsidenten, die/der nicht dem Verein anzugehören braucht; aus dem Kreis der gemäß Abs. 3 Ziffer 2 gewählten Mitglieder für die Dauer von vier Jahren die/den erste/-n und zweite/-n VizePräsidentin/VizePräsidenten, die die Präsidentin/den Präsidenten in dieser Reihenfolge vertreten. Die Wahl der Präsidentin/des Präsidenten und der VizePräsidentinnen/VizePräsidenten bedarf der Bestätigung der Bundesministerin/des Bundesministers des Auswärtigen. Im Falle einer Neuwahl bleiben die/der bisherige Präsidentin/Präsident bzw. die VizePräsidentinnen/VizePräsidenten bis zur Bestätigung der Amtsnachfolger/-innen durch die Bundesministerin/den Bundesminister des Auswärtigen im Amt. Sie können ihr Stimmrecht nur ausüben, wenn sie erneut gemäß Abs. 3 Nr. 2 als Präsidiumsmitglieder gewählt worden sind.

(6)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hat - außer den sonst in der Satzung genannten - folgende Aufgaben:

1. Sie/er repräsentiert den Verein unbeschadet der gesetzlichen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es,

2. sie/er beruft die Sitzungen des Präsidiums ein und leitet sie,
3. sie/er vertritt das Präsidium zwischen den Sitzungen,
4. bei unaufschiebbaren Entscheidungen des Vorstandes, die der Zustimmung des Präsidiums bedürfen, kann sie/er die Zustimmung anstelle des Präsidiums erteilen. In diesem Falle hat sie/er dem Präsidium unverzüglich zu berichten,
5. in sonstigen Eilfällen kann sie/er die Entscheidungen des Präsidiums im Umlaufverfahren herbeiführen. Sie/er stellt fest, dass ein Präsidiumsbeschluss zustande gekommen ist, wenn die Mehrheit der Präsidiumsmitglieder schriftlich zugestimmt hat,
6. sie/er kann an Vorstandssitzungen sowie an Ausschuss- und Beiratssitzungen teilnehmen.

(7) Das Präsidium fasst seine Beschlüsse mit der Mehrheit der Stimmen der erschienenen stimmberechtigten Mitglieder.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r Präsidentin/des Präsidenten. Das Präsidium ist beschlussfähig, wenn mindestens vier gewählte Mitglieder anwesend sind.

(8) Ein Präsidiumsmitglied nimmt an den Beratungen und Abstimmungen nicht teil, wenn es sich um seine persönlichen Angelegenheiten handelt.

(9) Die Mitglieder des Vorstandes nehmen an den Sitzungen des Präsidiums mit beratender Stimme teil.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kann auch andere Personen zu den Sitzungen des Präsidiums einladen.

(10) Die Sitzungen des Präsidiums sollen mindestens viermal jährlich stattfinden.

(11) Zur Vorbereitung seiner Sitzungen kann das Präsidium aus seiner Mitte Ausschüsse bilden, an deren Sitzungen Vertreter/-innen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teilnehmen können. Das Präsidium kann ferner aus seiner Mitte einen besonderen Ausschuss bilden, der sich aus der Präsidentin/dem Präsidenten, den VizePräsidentinnen/VizePräsidenten, je einer Vertreterin/einem Vertreter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sowie einer Arbeitnehmervertreterin/einem Arbeitnehmervertreter zusammensetzt, und diesen von Fall zu Fall ermächtigen, Entscheidungen anstelle des Präsidiums zwischen den Präsidiumssitzungen zu treffen.

(12) Das Präsidium kann zu seiner und des Vorstandes Beratung Beiräte berufen, deren Zusammensetzung, Aufgaben und Arbeitsweise in einer Geschäftsordnung niedergelegt werden. An den Sitzungen der Beiräte können Vertreter/-innen des Auswärtigen Amtes teilnehmen.

(13) Das Präsidium ist ehrenamtlich tätig, d.h. die Mitglieder des Präsidiums erhalten keine Vergütung, sondern nur Ersatz der entstehenden Aufwendungen. Näheres bestimmt die Geschäftsordnung des Präsidiums.

§ 8 VORSTAND

(1) Der Vorstand für die Geschäfte des Vereins.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r Vorstandsmitglieder im Einzelnen regelt die Geschäftsordnung.

(2) Der Vorstand besteht aus mindestens zwei und bis zu drei Mitgliedern. Den Vorsitz führt die Vorstandssprecherin/der Vorstandssprecher; sie/er für die Bezeichnung “Generalsekretärin/Generalsekretär”. Die Mitglieder des Vorstandes werden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bestellt, wiederholte Bestellungen für den jeweils gleichen Zeitraum sind möglich. Alle Mitglieder des Vorstandes sind Vorstand im Sinne des § 26 BGB und vertreten den Verein je einzeln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lich.

(3) Scheidet ein Vorstandsmitglied aus seinem Amt vorzeitig aus, so beruft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bis zur Bestellung einer Nachfolgerin/eines Nachfolgers durch das Präsidium eine kommissarische Vertreterin/einen kommissarischen Vertreter. Die Präsidentin/der Präsident beruft in diesem Falle unverzüglich eine Präsidiumssitzung zum Zwecke der Nachwahl ein.

(4) Durch die Geschäftsordnung können auch andere Personen zur Vertretung gemäß § 30 BGB berufen werden.

(5) In Einzelfällen kann das Auswärtige Amt ausnahmsweise aus gewichtigen politischen Gründen den Vorstand um eine Maßnahme

oder Unterlassung im Bereich der Vertragsaufgaben ersuchen. Der Vorstand hat einem solchen Ersuchen zu entsprechen und den Mitgliedern des Präsidiums unverzüglich zu berichten. Für derartige Ersuchen trägt das Auswärtige Amt die alleinige Verantwortung.

§ 9 VERMÖGENSBINDUNG

(1) Die Mitglieder dürfen bei ihrem Ausscheiden oder bei Auflösung oder Aufhebung des Vereins nicht mehr als ihre eventuell gegebenen Bareinlagen oder den Gemeinwert geleisteter Sacheinlagen zurückerhalten. Zu den Bareinlagen oder geleisteten Sacheinlagen gehören auch Gegenstände (einschließlich Grundstücke), die der Verein aus Mitteln erworben hat, di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Zuwendung gemäß §§ 23, 44 BHO sowie §§ 49 und 49a VwVfG zur Verfügung gestellt hat. Nicht dazu gehören Mitgliedsbeiträge und Spenden.

(2) Bei Auflösung oder Aufhebung des Vereins oder bei Wegfall seines bisherigen Zwecks fällt das Vermögen des Vereins an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oder an eine andere steuerbegünstigte Körperschaft zwecks Verwendung für die Förderung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Bildung und Erziehung, Kunst und Kultur sowie der Völkerverständigung.

(3) Beschlüsse über die künftige Verwendung des Vermögens dürfen erst nach Einwilligung des Finanzamtes ausgeführt werden.

§ 10 AUFLÖSUNG DES VEREINS

(1) Die Auflösung des Vereins erfolgt durch Beschluss der Mitgliederversammlung. Die Einladung zu einer Mitgliederversammlung, die über die Auflösung beschließen soll, muss abweichend von § 6 Abs. 2 der Satzung durch das Präsidium zwei Monate vor der Sitzung schriftlich erfolgen. Die Einladung gilt als erfolgt, wenn der Vorstand in der Mitgliederversammlung versichert, dass er auf Veranlassung der Präsidentin/des Präsidenten den Mitgliedern eine Einladung unter Bekanntgabe der Tagesordnung durch eingeschriebenen Brief zugesandt hat.

(2) Die Mitgliederversammlung ist beschlussfähig, wenn mindestens die Hälfte der Mitglieder anwesend ist. Ist die Versammlung nicht beschlussfähig, so ist innerhalb eines Monats eine zweite Versammlung einzuberufen, die spätestens zwei Monate nach der vorhergegangenen Mitgliederversammlung stattfinden muss.

(3) Die zweite Mitgliederversammlung kann ohne Rücksicht auf die Zahl der erschienenen Mitglieder die Auflösung beschließen.

(4) Der Auflösungsbeschluss bedarf in jedem Fall der Zustimmung von drei Viertel der anwesenden Mitglieder.

§ 11 ÜBERGANGSBESTIMMUNGEN

(1) Abweichend von § 3 Abs. 2 werden diejenigen Mitglieder, die zum Zeitpunkt der Verabschiedung der Satzung des Goethe-Instituts e.V. vom 15. Juni 1976 dem Verein angehörten, auf die Gesamtzahl der ordentlichen Mitglieder nicht angerechnet. Abweichend von § 3 Abs. 7 Ziff. 1 endet ihre Mitgliedschaft auch nicht durch Zeitablauf.

(2) Nach der Verschmelzung des eingetragenen Vereins “Goethe-Institut” mit dem eingetragenen Verein “Inter Naciones” gelten folgende Übergangsbestimmungen:

1. Abweichend von § 3 Abs. 2 gilt Folgendes: Di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r Satzung laufenden Mandate der Mitglieder der bisherigen eingetragenen Vereine “Goethe-Institut” und “Inter Naciones” bestehen bis zum Ende ihrer jeweiligen Laufzeit fort. Eine Wiederwahl dieser Mitglieder ist möglich, ohne dass es hierfür eines Vorschlags des Präsidiums i. S. d. § 7 Abs. 1 Ziff. 9 bedarf. Das Nähere regelt eine Geschäftsordnung. Die Wahl neuer ordentlicher Mitglieder erfolgt erst dann wieder, wenn die Zahl von 30 Mitgliedern unterschritten wird.
2. Abweichend von § 7 Abs. 3 und Abs. 4 gilt Folgendes: Die Amtszeit der Präsidentin/des Präsidenten und der sechs Präsidiumsmitglieder des bisherigen eingetragenen Vereins “Goethe-Institut”, die von der Mitgliederversammlung gewählt werden, sowie der drei von den Arbeitnehmerinnen/Arbeitnehmern des bisherigen eingetragenen Vereins “Goethe-Institut” gewählten Mitglieder des Präsidiums endet am

31. Dezember 2001. Die/der Vorsitzende der Mitgliederversammlung und die/der von den Arbeitnehmerinnen/Arbeitnehmern gewählte Vertreterin/Vertreter im Verwaltungsrat des bisherigen eingetragenen Vereins “Inter Nationes” sind bis zum Ende ihrer jeweiligen Amtszeit Mitglieder des Präsidiums des Goethe-Instituts e.V. Dieses Präsidium ist beschlussfähig, wenn fünf der gem. § 7 Abs. 3 Ziffer 1 und 2 gewählten Präsidiumsmitglieder anwesend sind.
3. Abweichend von § 8 Abs. 2 gilt Folgendes: Der Vorstand kann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ab de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r Satzung aus bis zu vier Mitgliedern bestehen. In diesem Fall entscheidet bei Beschlüssen des Vorstands bei Stimmgleichheit die Stimme der Generalsekretärin/des Generalsekretärs.

§ 12 SCHLUSSBESTIMMUNG

Der Rahmen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Verein in seiner jeweils geltenden Fassung wird durch diese Satzung nicht berührt.

**【 괴테-인스티투트 ·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총괄협약(Rahmenvertrag) 】**

§ 1

(1) Das Auswärtige Amt betraut im Rahmen seiner verfassungsmäßigen Zuständigkeit für die auswärtige Kulturpolitik das Goethe-Institut in Übereinstimmung mit dessen Satzung mit der Ausführung folgender Aufgaben, im Folgenden als “ertragsaufgaben” bezeichnet:

1. Förderung der Kenntnis deutscher Sprache durch
 - a) Erteilung und Forderung von Deutschunterricht im Ausland,
 - b) Zusammenarbeit mit Unterrichtsverwaltungen, Institutionen und Lehrkräften im Ausland,
 - c) fachliche Förderung ausländischer Sprachlehrer und Germanisten,
 - d) Entwicklung und Verbesserung von Unterrichtsmethoden, Materialien und Sprachprüfungen sowie Mitwirkung an entsprechenden Maßnahmen Dritter,
 - e) Verteilung von Stipendien zum Erlernen der deutschen Sprache.
2. Pflege der internationalen kulturellen Zusammenarbeit mittels
 - a) Durchführung und Vermittlung kultureller Veranstaltungen,
 - b) Vermittlung von Informationen im Ausland über das kulturelle Leben in Deutschland,
 - c) Vorbereitung, Durchführung und Nachbereitung des Besucherprogramms des Goethe-Instituts,

- d) sonstiger Beteiligung an kultureller Zusammenarbeit und Austausch mit kulturellen Einrichtungen im Ausland nach vorheriger Abstimmung mit dem Auswärtigen Amt,
 - e) Forderung deutsch-ausländischer Kulturgesellschaften (z.B. “Goethe-Zentren”),
 - f) Vergabe von Sprachstipendien an Multiplikatoren aus allen gesellschaftlichen Bereichen.
3. Vermittlung eines umfassenden Deutschlandbildes durch Informationen über das kulturelle,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Leben mittels
- a) Durchführung des Besucherprogram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 Vorbereitung, Herausgabe, Herstellung, Beschaffung und Verbreitung von
 - aa) Printmedien (Büchern, Zeitschriften, Pressediensten/Informationsmaterialien, Drucksachen und Dokumentationen),
 - bb) Filmen, Fernsehproduktionen, Bild- und Tonträgern,
 - cc) elektronischen Medien,
 - c) Vergabe von Sachspenden,
 - d) Übersetzungsförderung.

Zur Durchführung der unter 1., 2. und 3. genannten Aufgaben unterhält das Goethe-Institut Kulturinstitute im Ausland und an verschiedenen Standorten im Inland.

(2) Die Betätigung des Auswärtigen Amtes auf diesen Gebieten, insbesondere Aufträge an Dritte und die Forderung ausländischer Einrichtungen, die dem kulturellen Austausch dienen, wird durch diesen Vertrag nicht berührt. Das Goethe-Institut wird in der Regel hierzu gehört.

(3) Das Goethe-Institut führt die Vertragsaufgaben in eigener Verantwortung gemäß § 2 seiner Satzung durch. Dies geschieht im Rahmen der Richtlinien, der Gesamt- und Regionalplanung sowie der Koordination des Auswärtigen Amtes. Einzelheiten der Durchführung des Besucherprogram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Sinne des § 1 Abs. 1 Nr. 3a und der in §1 Abs. 1 Nr. 3b beschriebenen Aufgaben werden in Protokollnotizen geregelt. Die Protokollnotizen sind integraler Bestandteil dieses Vertrages und treten gleichzeitig mit ihm in Kraft.

(4) Weitere Aufgaben im Sinne des § 1 Abs. 1 können dem Goethe-Institut übertragen werden; Art und Umfang der Aufgaben werden im Einzelfall festgelegt.

§ 2

(1) Das Auswärtige Amt und das Goethe-Institut arbeiten bei der Ausführung der Vertragsaufgaben eng zusammen. Sie machen ihren Bediensteten und Mitarbeitern eine loyale Zusammenarbeit zur Pflicht.

(2) Das Auswärtige Amt gibt dem Goethe-Institut vom Inhalt seiner grundsätzlichen Erlasse und wichtiger Berichte der Auslandsvertretungen sowie von Anregungen, Beanstandungen, Entscheidungen und sonstigen Vorkommnissen Kenntnis, soweit sie für die Arbeit des Goethe-Instituts von Bedeutung sind. Es lädt das Goethe-Institut zu eigenen Sitzungen und Beratungen ein, die für die Durchführung der Vertragsaufgaben von Bedeutung sind und holt es zu den dabei behandelten Themen.

(3) Das Goethe-Institut berichtet regelmäßig über seine Arbeit (insbesondere Jahresberichte) sowie über Maßnahmen und sonstige Vorkommnisse, die Einfluss auf die gemeinsame Zusammenarbeit haben oder die Verantwortung des Auswärtigen Amtes auf dem Gebiet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und der Öffentlichkeitsarbeit betreffen.

(4) Es übersendet dem Auswärtigen Amt laufend alle wichtigen Rundschreiben und führt dessen vorherige Zustimmung zu solchen Fragen herbei, welche die Beziehungen des Goethe-Instituts und seiner Kulturinstitute zum Auswärtigen Amt oder zu den Auslandsvertretungen betreffen.

§ 3

(1) Zwischen dem Auswärtigen Amt und dem Goethe-Institut finden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Besprechungen statt. Gegenstand der

Besprechungen ist die Abstimmung der Planung, der laufenden Programme der Zentrale und deren Durchführung auf dem Gebiet der Vertragsaufgaben in Bezug auf den in § 1 Abs. 3 Satz 2 genannten Rahmen. Das Goethe-Institut und das Auswärtige Amt bereiten diese Besprechungen durch Erstellung der Planungsunterlagen vor,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2) Das Goethe-Institut informiert das Auswärtige Amt frühzeitig über geplante Auslandsdienstreisen von Angehörigen der Zentrale und spricht sich mit diesem über Verlauf und Aufgaben ab.

(3) Das Goethe-Institut veranstaltet Regionaltagungen und Arbeitsbesprechungen für die Leiter der Kulturinstitute. Auf diesen Tagungen sollen Erfahrungen ausgetauscht, die Richtlinien der künftigen Arbeit beraten und die Veranstaltungsprogramme koordiniert werden. An den Regionaltagungen sollen die Kulturreferenten der beteiligten Auslandsvertretungen teilnehmen.

(4) Das Goethe-Institut gibt dem Auswärtigen Amt und den zuständigen Auslandsvertretungen so rechtzeitig Nachricht von allen Regionaltagungen, dass Gelegenheit besteht, amtliche Vertreter zu entsenden.

In jedem Fall unterrichtet der Regionalbeauftragte die beteiligten Auslandsvertretungen über das Ergebnis der Regionaltagungen und Arbeitsbesprechungen durch Übersendung des Protokolls.

§ 4

(1) Für die Errichtung oder Schließung von Kulturinstituten ist die Zustimmung des Auswärtigen Amtes erforderlich. Vorschlägen des Auswärtigen Amtes zur Errichtung oder Schließung von Kulturinstituten wird das Goethe-Institut entsprechen.

(2) Für Kulturinstitute und deren Mitarbeiter gelten grundsätzlich die jeweiligen Gesetze und Bestimmungen des Gastlandes. Ihr Status muss im Einzelfall gesondert mit dem jeweiligen Gastland vereinbart werden.

(3) Die Regelung von Statusfragen obliegt dem Auswärtigen Amt. Das Auswärtige Amt wird sich bemühen, den Status der Kulturinstitute und ihrer entsandten Mitarbeiter im Benehmen mit dem Goethe-Institut so zu regeln, dass die Durchführung der Vertragsaufgaben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Auslandsvertretungen werden bemüht sein, den Kulturinstituten möglichst gute Arbeitsbedingungen zu verschaffen. Das Goethe-Institut hat dafür Sorge zu tragen, dass die Kulturinstitute ihren gesetzlichen Verpflichtungen nach dem Recht des jeweiligen Gastlands nachkommen.

(4) Für die Programmgestaltung der Kulturinstitute ist die Institutsleitung verantwortlich.

(5) Die Verantwortung der Auslandsvertretungen für Fragen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und der Öffentlichkeitsarbeit innerhalb ihres

Amtsbezirks einschließlich Koordination und Planungskontrolle wird von der Wahrnehmung der Vertragsaufgaben durch die Kulturinstitute nicht berührt.

(6) Fü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Auslandsvertretungen und Kulturinstitut gelten die Bestimmungen des § 2 Abs. 1 entsprechend. Die Auslandsvertretung unterrichtet das Kulturinstitut über alle Vorgänge und Kontakte, die auf die Tätigkeit des Kulturinstituts und die gemeinsame Arbeit Einfluss haben können. Die Institutsleitung unterrichtet die Auslandsvertretung frühzeitig über alle Vorgänge und Maßnahmen, insbesondere Kontakte, die für die Zusammenarbeit Bedeutung haben oder die politische Verantwortung der Auslandsvertretung berühren. Erhebt der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gegen Kontakte Bedenken, die für die politischen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lastend oder Anlass zu Sicherheitsbesorgnissen sind, so trägt die Institutsleitung dem Rechnung.

(7) Zwischen dem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oder einem von ihm beauftragten Bediensteten und der Institutsleitung finden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Besprechungen statt, auf denen alle gemeinsam interessierenden, für die Zusammenarbeit wichtigen Fragen zu erörtern sind.

Die Programmplanung ist so rechtzeitig zur Erörterung zu stellen, dass die Vertretung dazu Stellung nehmen und das Programm gegebenenfalls noch geändert werden kann. Erhebt der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im Rahmen der ihm übertragenen politischen

Aufgaben gegen eine Veranstaltung Einspruch, so trägt die Institutsleitung diesem Einspruch Rechnung. Der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berichtet in diesem Fall an das Auswärtige Amt, die Institutsleitung an die Zentrale des Goethe-Instituts. Auf Verlangen des Goethe-Instituts prüft das Auswärtige Amt, ob der Einspruch gerechtfertigt war.

(8) Im Rahmen seiner politischen Aufgabenstellung kann der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nach Abstimmung mit der Institutsleitung auch eigene, als solche gekennzeichnete Veranstaltungen in den Räumen des Kulturinstituts durchführen oder mit Veranstaltungen des Kulturinstituts verbinden. Bei de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solcher Veranstaltungen sind die Interessen des Goethe-Instituts zu berücksichtigen.

(9) Einladungen an das Staatsoberhaupt oder den Regierungschef zu Veranstaltungen im Kulturinstitut sind stets vom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auszusprechen. Einladungen von Regierungsmitgliedern und ausländischen Missionschefs sind mit der Auslandsvertretung abzusprechen.

(10) Zu Veranstaltungen des Kulturinstituts ist stets der Leiter der Auslandsvertretung und der von ihm mit der kulturpolitischen Arbeit beauftragte Bedienstete einzuladen.

(11) Für die Haushalts- und Rechnungsführung der Kulturinstitute im Ausland gilt das vom Goethe-Institut im Einvernehmen mit dem Auswärtigen Amt herausgegebene Handbuch für die Verwaltungs-

praxis Teil 1 (“as Rechnungswesen der Kulturinstitute im Ausland”) in seiner jeweils gültigen Fassung.

§ 5

Das Goethe-Institut legt dem Auswärtigen Amt jährlich einen in der Form und nach den Grundsätzen des Bundeshaushaltsplanes zu erstellenden Entwurf eines Wirtschaftsplanes einschließlich eines Stellen- und Organisationsplanes für das folgende Haushaltsjahr vor. Die Termine für die Vorlage des Haushaltsentwurfs werden dem Goethe-Institut möglichst frühzeitig mitgeteilt. Über den Fortgang des Haushaltsaufstellungsverfahrens wird das Goethe-Institut auf dem Laufenden gehalten.

§ 6

(1) Das Goethe-Institut erhält zur Durchführung der Vertragsaufgaben Haushaltsmittel, über deren Höhe das Auswärtige Amt im Rahmen der im Haushaltsplan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 jeweils durch Zuwendungsbescheid entscheidet. Der Stellenplan wird dem Goethe-Institut vom Auswärtigen Amt nach Genehmigung des Bewirtschaftungsplans durch den Deutschen Bundestag mitgeteilt; er ist verbindlich.

Abweichungen vom Stellenplan bedürfen der vorherigen Zustimmung des Auswärtigen Amtes.

(2) Die Grundsätze für die Verwendung der Zuwendungen des Bundes sowie für den Nachweis und die Prüfung der Verwendung (allgemeine Bewirtschaftungsgrundsätze), die in Ausführung der §§ 23, 44 BHO ergangen sind, sowie die besonderen Bewirtschaftungsgrundsätze des Auswärtigen Amtes fü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des Bundes sind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integrale Bestandteile dieses Vertrages.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der besonderen Bewirtschaftungsgrundsätze wird das Auswärtige Amt dem Goethe-Institut möglichst frühzeitig mitteilen. Entsprechendes gilt für etwa notwendig werdende Auflagen.

(3) Das Goethe-Institut darf rechtliche Verpflichtungen zur Erfüllung der Vertragsaufgaben nur im Rahmen der hierfür vom Auswärtigen Amt bewilligten Haushaltsmittel eingehen.

(4) Drittmittel, die vom Goethe-Institut von privater Seite eingeworben werden oder die Erträge einer vom Goethe-Institut noch zu errichtenden Stiftung werden in erster Linie für die Durchführung der Vertragsaufgaben verwendet.

(5) Das Goethe-Institut holt die schriftliche Einwilligung des Auswärtigen Amtes ein vor _ Begründung von Verpflichtungen, die sich über das Haushaltsjahr hinaus erstrecken, mit Ausnahme der laut Stellenplan bewilligten Personalkosten, _ Abschluss neuer und Verlängerung bestehender Mietverträge ohne Rücksicht auf die Mietdauer. Die Verlängerung eines bestehenden Mietvertrages bedarf keiner Einwilligung, wenn

- der Mietvertrag im Rahmen der üblichen Tätigkeit des Institutes für ein Institutsgebäude verlängert wird,
- eine Steigerung des Mietzinses von nicht mehr als 10% vereinbart wird, - der Mietvertrag eine Diplomatenklausel enthält und
- der Mietvertrag nicht länger als 5 Jahre unkündbar ist.

Mit der Einwilligung verpflichtet sich das Auswärtige Amt, die für diese Maßnahmen erforderlichen Haushaltsmittel bereitzustellen.

(6) Die vom Auswärtigen Amt bewilligten Mittel werden dem Goethe-Institut nach den "Richtlinien zur Auszahlung von Bundesmitteln an Zuwendungsempfänger und an Bundesmittel verwaltende Stellen außerhalb der Bundesverwaltung" im Abrufverfahren bereitgestellt. Das Goethe-Institut verfährt dabei nach den Bestimmungen der Richtlinien und nimmt insbesondere die Mittel nicht eher und nur soweit in Anspruch, als sie für die Bewirkung fälliger Zahlungen im Rahmen des Verwendungszwecks erforderlich sind. Dieser Grundsatz gilt entsprechend für die Geldversorgung der Kulturinstitute im Ausland durch die Zentrale des Goethe-Instituts. Am Ende des Haushaltsjahres nicht verausgabte Zuwendungsbeträge werden von der Zentrale unverzüglich an das Auswärtige Amt zurückgezahlt. Die Kulturinstitute liefern solche Beträge bei den zuständigen Auslandsvertretungen ab, sobald die erste Betriebsmittelrate für das neue Rechnungsjahr eingegangen ist.

(7) Das Goethe-Institut legt dem Auswärtigen Amt die Fälle einer nicht zweckentsprechenden Verwendung der Mittel unter genauer

Angabe des Sachverhalts mit einer Stellungnahme zur Verschuldensfrage vor.

(8) Erwerb, Belastung und Veräußerung von Grundstücken oder rundstücksähnlichen Rechten sowie Baumaßnahmen gehören zur ausschließlichen Zuständigkeit des Auswärtigen Amtes. Im Eigent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ehende Liegenschaften im Ausland, die dem Goethe-Institut überlassen werden, werden von ihm unentgeltlich genutzt und treuhänderisch verwaltet.

(9) Das Auswärtige Amt verzichtet hinsichtlich der beweglichen Gegenstände auf die jährliche Vorlage der Bestandsverzeichnisse (Gerätekartei), die von der Zentrale des Goethe-Instituts sowie den Kulturinstituten im Ausland zu führen sind. Die Führung der Bestandsverzeichnisse bei den Kulturinstituten im Ausland wird von der Zentrale des Goethe-Instituts überwacht, die Bestände werden jährlich von den Auslandsvertretungen geprüft.

§ 7

(1) Das Goethe-Institut legt dem Auswärtigen Amt nach Ablauf jedes Haushaltsjahres, spätestens zum 1. September des darauffolgenden Jahres, einen Tätigkeitsbericht (Sachbericht) und den Prüfungsbericht eines Wirtschaftsprüfers vor. Außerdem legt das Goethe-Institut dem Auswärtigen Amt vierteljährlich und am Jahresschluss jeweils zum 15. des folgenden Monats zahlenmäßige übersichten der angefallenen

Einnahmen und Ausgaben entsprechend der Gliederung des Wirtschaftsplanes vor. Anstelle der bei den Kulturinstituten im Ausland angefallenen Einnahmen und Ausgaben wird die Summe der an sie gezahlten Betriebsmittel angegeben.

(2) Das Auswärtige Amt kann Bestimmungen über die Art der Buch- und Kassenführung treffen. Beanstandungen, die sich bei der Prüfung der Verwendungsnachweise ergeben, trägt das Goethe-Institut alsbald Rechnung.

§ 8

(1) Die Arbeitsbedingungen für die aus Mitteln des Bundes vergüteten Arbeitnehmer, die im Inland tätig sind, in das Ausland entsandt oder als deutsche, nicht entsandte Arbeitnehmer bei den Kulturinstituten im Ausland beschäftigt werden, richten sich nach den gemäß Abs. 2 abgeschlossenen Tarifverträgen. für die nach dem 31. März 1991 eingestellten deutschen, nicht entsandten Arbeitnehmer, die bei den Kulturinstituten im Ausland beschäftigt werden, gilt § 8 Abs. 5.

(2) Tarifverhandlungen werden auf Antrag des Auswärtigen Amtes mit Zustimmun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kraft Vollmacht des Goethe-Instituts durch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geführt. Das Auswärtige Amt beteiligt das Goethe-Institut an den Tarifverhandlungen und deren Vorbereitung. Der Abschluss eines Tarifvertrages bedarf der Zustimmung des Goethe-Instituts.

(3) Im Falle der Kündigung eines Tarifvertrages, dessen Nachwirkung ausgeschlossen ist, können neue Arbeitsbedingungen nur mit Zustimmung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geschaffen werden.

(4) über- und außertarifliche Maßnahmen sowie Verträge mit höherer Vergütung als nach BAT bedürfen der vorherigen Zustimmung des Auswärtigen Amtes.

(5) Die Arbeitsbedingungen für die aus Mitteln des Bundes vergüteten, nicht entsandten Arbeitnehmer der Kulturinstitute im Ausland werden im Einvernehmen mit der Auslandsvertretung nach der Ortsüblichkeit festgelegt.

(6) Das Goethe-Institut sieht in den Regelungen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seiner Arbeitnehmer das Recht einer Kündigung zum frühestmöglichen Zeitpunkt für den Fall vor, dass dieser Vertrag endet oder dass das Goethe-Institut infolge politischer oder wirtschaftlicher Entwicklungen seine Arbeit wesentlich einschränken muss oder, sofern Arbeitsbedingungen nicht entsandter Arbeitnehmer betroffen sind, seine Arbeit am Tätigkeitsort einschränken oder einstellen muss.

(7) Das Goethe-Institut wendet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BGleiG)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sinngemäß an. Alle vier Jahre legt das Goethe-Institut dem Auswärtigen Amt einen Erfahrungsbericht über die Situation der Frauen im Vergleich zu der der Männer und

über die sinngemäße Anwendung des BGleiG ohne personenbezogene Daten vor.

§ 9

(1) Schädigt ein entsandter Mitarbeiter des Goethe-Instituts nach begründeter Auffassung des Auswärtigen Amtes das deutsche Ansehen oder führt sein Verhalten zu einer Belastung der polit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Gastland oder zu dritten Ländern, so kann das Auswärtige Amt seine sofortige Suspendierung verlangen. Er ist von seinem Dienstposten abzuberufen, wenn nach Prüfung des Goethe-Instituts, die eine Anhörung des Betroffenen einschließt, das Auswärtige Amt sich nicht in der Lage sieht, seine Beurteilung des Falles zu ändern.

(2) Ortskräfte sind in entsprechenden Fällen vom Dienst zu suspendieren. Das Dienstverhältnis ist gegebenenfalls aus wichtigem Grund zu kündigen.

§ 10

Das Goethe-Institut ergreift in Krisenfällen in Abstimmung mit dem Auswärtigen Amt die erforderlichen Schutzmaßnahmen für sein entsandtes Personal und erteilt diesem, wenn nötig, die Weisung, den Empfehlungen der Auslandsvertretung Folge zu leisten. Bei Gefahr im Verzug oder bei Unterbrechung der Nachrichtenverbindung ist der Leiter der jeweiligen Auslandsvertretung gegenüber dem entsandten

Personal der Kulturinstitute weisungsberechtigt. Diese Berechtigung schließt die Anweisung zum Verlassen des Gefahrengebietes ein.

§ 11

(1) Dieser Vertrag gilt auch für bereits bestehende Rechtsverhältnisse. Er wird auf unbestimmte Zeit abgeschlossen und kann von jeder Seite unter Einhaltung einer Frist von zwölf Monaten zum Jahresende gekündigt werden. Die Kündigung bedarf der Schriftform. Der Vertrag gilt als vom Goethe-Institut zum Jahresende gekündigt, wenn gegen den Widerspruch des Auswärtigen Amtes eine Satzungsänderung beschlossen wird und das Auswärtige Amt nach Prüfung innerhalb von zwei Wochen seinen Widerspruch durch Erklärung gegenüber dem Präsidenten aufrechterhält.

(2) Wird der Vertrag gekündigt, so stellt das Auswärtige Amt die zur Abwicklung der fortbestehenden Verpflichtungen notwendigen Mittel bereit. Sollen nach erfolgter Kündigung Verpflichtungen eingegangen werden, so ist die Einwilligung des Auswärtigen Amtes einzuholen.

(3) Das Goethe-Institut wird nach Kündigung dieses Vertrages alle Verträge, die im Bereich der Vertragsaufgaben abgeschlossen worden sind, zum frühestmöglichen Zeitpunkt kündigen. Nicht verwendete Zuwendungsbeträge sind an das Auswärtige Amt zurückzuzahlen. Die im Eigentum des Bundes stehenden Grundstücke, Gebäude und beweglichen Sachen sind im Rahmen der Abwicklung herauszugeben.

Die aus Zuwendungsmittel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chafften Grundstücke und Gegenstände sind, sofern sie Eigentum des Goethe-Instituts geworden sind, auf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übereigne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tt dessen einen Wertausgleich nach Nr. 7 der allgemeinen Bewirtschaftungsgrundsätze zu verlangen, bleibt unberührt.

(4) Dieser Vertrag gilt auch für Rechtsverhältnisse, die durch die Verschmelzung des Goethe-Instituts zur Pflege der deutschen Sprache im Ausland und zur Förderung der internationalen kulturellen Zusammenarbeit e.V. mit Inter Nationes e.V. begründet werden, sowie für Rechtsverhältnisse, die aufgrund der Verträg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ter Nationes e.V. vom 23. Juni 1986 sowi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Goethe-Institut zur Pflege der deutschen Sprache im Ausland und zur Förderung der internationalen kulturellen Zusammenarbeit e.V. vom 30. Juni 1976 vor der Verschmelzung begründet wurden.

Dieser Vertrag gilt ferner für Rechtsverhältnisse, die aufgrund des Vertrages vom 17. Januar 2001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Goethe-Institut Inter Nationes e.V. begründet wurden.

§ 12

Änderungen und Zusätze zu diesem Vertrag bedürfen der Schriftform; mündliche Nebenabreden bestehen nicht.

§ 13

Dieser Vertrag tritt unter Aufhebung des 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Goethe-Institut Inter Nationes e.V. vom 17. Januar 2001 in Kraft.

BERLIN, DEN 12. AUGUST 2004

MÜNCHEN, DEN 26. JULI 2004

Auswärtiges Amt
in Vertretung
gez.: Wilfried Grolig
Leiter der Kultur- und
Bildungsabteilung

Goethe-Institut e.V.
in Vertretung
gez.: Dr. habil. Andreas Schlüter
Generalsekretär